

kiri리포트

이슈 분석 모음집 2018



Contents_ 이슈 분석

1 거시금융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윤성훈 한성원	3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임준환	8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윤성훈 한성원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	윤성훈	18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윤성훈	24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	조영현 이해은	28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정원석	32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	윤성훈 한성원	3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조영현 김세중 이해은	41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전용식	45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전용식 이해은	50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전략	임준환	54
국내 PEF 산업의 성장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황인창	58

2 보험제도 및 정책

영국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강관리 사례: 행동경제학적 접근	변혜원	6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변화의 영향	정원석	70
파생장해 장해율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해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황현아	73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이기형	77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과 시사점	황현아	82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한성원	86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임 준	90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양승현	93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기형	96
블록체인의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	정원석	101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이기형	105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김규동	110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정성희 이기형	115

이슈 분석 _Contents

2

보험제도 및 정책

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황인창 채원영	119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양승현	125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전용식	130
IFRS 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김세중	135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변혜원	139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안철경 이규성	144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최창희	149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양승현	153
주요국의 재해지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정성희 문혜정	15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황현아	163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최창희	168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안철경 정인영	172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김석영 이소양	177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정성희 문혜정	181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정원석	186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효과	김규동	190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황인창	194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험	임 준	198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	임 준	201

3

고령화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김세중	207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와 시사점	김세중	210

4

보험경영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전용식	215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전용식	219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정인영	223
인슈어테크와 보험금청구 간소화	김규동	227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김세중	230
미니보험 상품의 개요 및 전망	김석영	233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김세중	235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다례이션 변화	조영현 이해은	239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전용식 권오경	243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김석영 이소양	247
보험회사 현금성 자산비중의 하락세와 시사점	임준환 한성원	250
투자수단으로서 비금융기업 영구채 현황 및 특징	황인창 홍민지	255
터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임준환 문혜정	259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이기형	265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윤성훈 한성원	269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김석영	274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이기형	278



CHAPTER

01

거시금융

- | | |
|-------------------------------------|-------------|
| 1.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 윤성훈 한성원 |
| 2.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 임준환 |
| 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 윤성훈 한성원 |
|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 | 윤성훈 |
| 5.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윤성훈 |
| 6.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 | 조영현 이해은 |
| 7.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 정원석 |
| 8.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 | 윤성훈 한성원 |
| 9.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 조영현 김세중 이해은 |
| 10.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 전용식 |
| 11.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 전용식 이해은 |
| 12.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전략 | 임준환 |
| 13. 국내 PEF 산업의 성장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 황인창 |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12년이 소요된 것인데, 이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의 평균 기간과 같음. 이들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소요된 이유는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외환위기 경험, 그리고 미약한 원화 국제화로 그 동안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등 내수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등 내수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2017)¹⁾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17년 29,332달러에서 2018년 31,058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3번째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됨
- 전 세계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는 27개국이며²⁾,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7번째임³⁾
 -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6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임

■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세계 평균 8년⁴⁾보다 4년이 긴 12년이 걸렸음

1)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3) SBS 뉴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2018. 1. 6), “한국, 올해 선진국 진입 ‘3050 클럽’ 가입 가능?”

4)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 한편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 기간도 12년으로 우리나라와 같음

- 미국(1987~1996, 9년), 일본(1987~1992, 5년), 독일(1990~1995~2003, 5년, 13년), 프랑스(1990~2003, 13년), 영국(1990~2003, 13년), 이탈리아(1990~2004, 14년)
- 독일은 1995년과 96년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 2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03년부터 3만 달러 이상을 지속함

■ 이들 국가들보다 높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는데, 본 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율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 1〉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실질경제성장률	3.5%	3.0%	4.0%	1.7%	1.6%	2.0%	1.5%
명목경제성장률	6.3%	6.6%	6.0%	5.3%	2.9%	3.9%	3.3%

주: 한국은 2006~2016, 미국은 1987~1996, 일본은 1987~1992, 영국은 1990~2003, 독일은 1990~2003, 프랑스는 1990~2003, 이탈리아는 1990~2004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의 단순평균임

자료: IMF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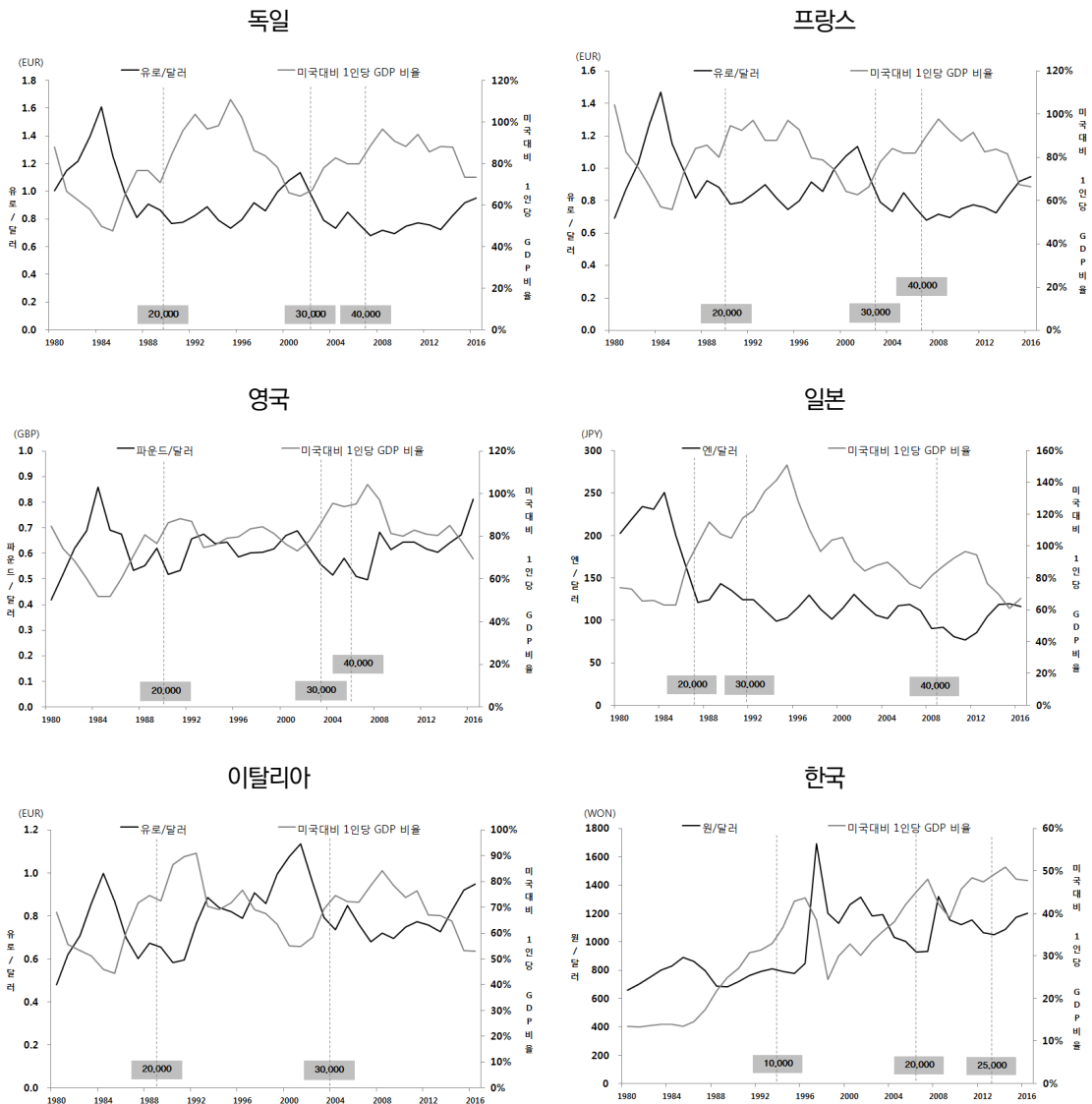
- 환율은 GDP, 금리, 물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미국과의 1인당 GDP 차이(미국 1인당 GDP 대비 각 국가 1인당 GDP 비율)와 달러 대비 통화가치의 변화를 비교함

■ 먼저 1980년부터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1인당 GDP 차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고, 두 시계열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도 0.50으로 양(+)의 값을 가짐

- 1980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711달러로 미국의 14%에 불과하였으나, 1만 달러를 넘어선 1994년에는 37%,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에는 45%, 2016년에는 48%로 상승함
- 한편, 원/달러 환율(연말기준)은 1980년 659원에서, 1994년 793원, 2006년 930원, 2016년 1,204원으로 상승하였음
-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비 우리나라 1인당 GDP 비율과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0.50이며, 이는 일반적인 환율결정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임
- A국과 B국 사이에서 A국 경제성장률이 B국보다 높으면 A국 통화가치도 B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경제학적 설명임

- 이에 반해 다른 5개국(미국 제외)의 경우 1980년 이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상관관계를 보면 일본: -0.46, 독일: -0.80, 프랑스: -0.82, 영국: -0.62, 이탈리아: -0.55로 모두 음(-)의 값을 가짐

〈그림 1〉 주요국 환율 및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 추이



자료: IMF, BIS database

■ 초점을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한 기간으로 좁혀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음(-)의 값을 보이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값으로 측정한 크기가 작음

● 우리나라(2006~2017): -0.33, 일본(1987~1991): -0.22, 독일(1990~2002): -0.85, 프랑스(1990~2002): -0.92, 영국(1990~2002): -0.74, 이탈리아(1990~2003): -0.91⁵⁾

● 동 기간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은 상승하였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하락하였고, 독일과 영국은 큰 변화가 없었음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요인으로 인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아짐

■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와 다른 환율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아마도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1997년 외환위기 경험, 그리고 일본과 유럽 등과는 달리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환율이 이론과 부합하게 경제력을 반영해가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 반영 정도는 다소 낮아 보임

■ 통화가치가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될 경우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체감경기 부진 및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장동구·최영준(2005)⁶⁾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경우 교역재(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 비교역재(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동구 외(2006)⁷⁾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되나 서비스업의 고용이 더 크게 확대되는데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함

5) 2만 달러를 달성한 년도부터 3만 달러 직전 년도의 상관관계임

6) 장동구·최영준(2005), 「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관한 분석」, 『경제분석』, 제11권, 제1호, 한국은행

7) 장동구·김기호·이현창(2006), 「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61호, 한국은행

- 김윤희·진익(2017)⁸⁾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내수⁹⁾ 비중은 2000년 전후 10년(1996~2005) 평균 70.1%에서 2010년 전후 10년(2006~2015) 평균 56.0%로 14.1%p 하락함
 - 10년(2007~2016) 연평균성장률 기준으로 소비 증가율(4.7%)과 투자 증가율(4.8%)이 수출 증가율(6.0%)보다 낮았음
 - 20년(1996~2015)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내수 비중은 61.9%로 OECD 35개국과 BRICS 6개국 등 41개 국가 중 27번째로 낮았음
 -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선순환 형성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1인당 GDP가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도 경제력을 반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환경이 내수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수출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환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임 **kiri**

8) 김윤희·진익(2017),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경제현안분석』, 93호, 국회예산정책처

9) 내수는 국민계정상의 민간 가계소비, 정부소비 및 내수 관련 투자를 합산한 값에서 내수 관련 수입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함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국내 가상화폐시장(Crypto Market)은 24시간 거래되는 온라인 디지털 시장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첫째,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거래규모는 국내 금융시장 또는 다른 국가의 가상화폐시장 거래규모에 비해 상당히 큼. 둘째,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가상화폐시장에서 비트코인(Bitcoin)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음.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경제규모 또는 금융발전 수준 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설명력이 약함. 반면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투자자의 투자동기 또는 성향(분산투자동기, 불법자금 회피수단, 투기심리)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활용, 화폐로서의 인정여부, 가격거품에 대한 논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¹⁾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활용 측면에서는 송금 및 결제 효율성 제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향후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현상을 비합리적인 버블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금융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작년 말까지 가상화폐(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금년 들어 가격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

■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과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²⁾

1)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중국은 거래소 거래금지 및 채굴금지 등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조치를, 일본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등 자유방임적 규제조치를,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입장에 있는 듯함
 2) 가상화폐시장(Crypto Market)은 24시간 거래되는 온라인 디지털 시장으로 가상화폐, 가상토론, 가상화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음

■ 첫째,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2017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약 67억 달러,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거래는 약 59억 달러,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거래는 약 36억 달러 (약 3조 9천 억 원)에 이름(〈부록 표 1〉 참조)
- 가상화폐 거래는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법정통화의 경우 달러와 원화가 지배적이고 가상화폐의 경우 비트코인이 압도적임
 - 달러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큰 이유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비트코인은 주요 50개의 가상화폐(이더리움, 리플 등)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화폐처럼 사용되는 유일한 교환수단이기 때문임
-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금액이 유로 및 엔화 등 주요국 화폐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큰 것은 다소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 중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음(〈부록 표 2〉 참조)³⁾

-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금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금액의 32.7%에 불과함(〈부록 표 2〉에서 “총계”란 참고)
- 한편 전 세계 시장에서 살펴볼 때, 국내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36.1억 달러로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금액 121.4억 달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규모는 11.8억 달러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금액 76.9억 달러의 15.3%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전체 가상화폐 거래금액의 54.7%를 차지함

■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규모 또는 금융발전 수준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설명력이 약함(〈부록 표 3〉 참조)

3) 전체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금액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금액의 합계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정통화로 거래되는 금액만 표시

- 주식시장 거래량, 무역개방도, 금융시장 개방도, 그리고 인터넷 마찰도가 낮을수록 가상화폐 거래량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화폐 거래비중이 주식시장 거래비중보다 큰 그룹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역 및 금융시장 개방도, 인터넷 마찰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비중이 자국 주식 거래비중에 비해 큼
 - 가상화폐 거래비중이 주식시장 거래비중보다 작은 유로국가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무역 및 금융개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인터넷 마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음

■ 이보다는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투자자의 투자성향(분산투자동기, 불법자금 회피 수단, 투기심리)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 가상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분절된 시장(segmented market)의 특성(제한된 공급)이 있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의 높은 참여도, 블록체인기술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원화의 불태환성 및 가상계좌 규제로 인해 차익거래 기회의 제한, 그리고 다른 국내 요인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분절된 것으로 보임
-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국편향(home-bias)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분산 투자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을 잘 알고, 세제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국편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해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우리나라로 투자자금을 이동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 지난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금지 및 채굴금지 등 강력한 규제로 일부 자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동한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임
- 부화뇌동(herding) 투기심리 등 국내투자자들의 투기적 행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부화뇌동 투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투자행태를 보고 모방하는 투자패턴을 지칭함

■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은 가상화폐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가상화폐 투자에 나타난 과열 및 패닉 현상은 금, 주식시장, 상품거래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금융현상이라 볼 수 있음
 - 시장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제한과 가격상승 기대심리의 상호작용으로 거래량 및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해킹피해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강화 등의 규제가 수반될 필요 **kiri**

〈부록 표 1〉 가상화폐거래규모와 종류⁴⁾

순위	화폐	화폐종류	백만 달러(USD)	교환대상 가상화폐의 종류
1	Bitcoin	가상	\$6,669	49
2	US dollar	법정	\$5,875	31
3	South Korean Won	법정	\$3,616	19
4	Japanese Yen	법정	\$1,645	10
5	US Dollar Tether	법정	\$1,549	35
6	Ethereum	가상	\$1,353	42
7	Litecoin	가상	\$702	28
8	Ripple	가상	\$657	9
9	Cardane	가상	\$588	3
10	Euro	법정	\$517	25
11	Ethereum Classic	가상	\$497	6
12	Bitcoin Cash	가상	\$451	9
13	Tron	가상	\$350	3
14	BitConnect	가상	\$284	6
15	Verge	가상	\$268	5
16	Qtum	가상	\$217	7
17	Eos	가상	\$213	6
18	OmiseGo	가상	\$201	5
19	Ink	가상	\$184	4
20	Dash	가상	\$154	11
-	이외	가상	\$2,926	-
	이외	법정	\$488	-

자료: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⁵⁾

4) 2017월 12월 17일 현재 기준

5)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18/preliminary/.../69789ad>

〈부록 표 2〉 법정통화로 거래된 일일 가상화폐 거래금액⁶⁾

통화		거래금액(미화 백만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점유율(%)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외 가상화폐
AUD	호주달러	42.68	81.50	52.37	0.55	0.67	0.87
BRL	브라질레알	25.86	30.79	84.00	0.34	0.25	0.11
CAD	캐나다달러	24.12	33.30	72.42	0.31	0.27	0.21
CHF	스위스프랑	-	0.36	-	-	0.00	0.01
CLP	칠레페소	-	0.20	-	-	0.00	0.00
CNH	역외 중국위안화	-	1.51	-	-	0.01	0.03
CNY	중국위안화	-	5.83	-	-	0.05	0.13
EUR	유로화	371.46	516.76	71.88	4.82	4.26	3.27
GBP	파운드화	54.05	62.07	87.08	0.70	0.51	0.18
HKD	홍콩달러	-	0.46	-	-	0.00	0.01
IDR	루피아(인도네시아)	16.78	43.68	38.43	0.22	0.36	0.61
ILS	이스라엘뉴사겔	-	0.31	-	-	0.00	0.01
INR	루피아(인도)	6.13	18.26	33.60	0.08	0.15	0.27
JPY	엔화	1,594.73	1,645.44	96.92	20.71	13.55	1.14
KRW	원화	1,183.43	3,616.19	32.73	15.37	29.78	54.76
MXN	멕시코페소	8.81	12.69	69.38	0.11	0.10	0.09
MYR	말레이시아링깃	3.80	3.80	100	0.05	0.03	0.00
NZD	뉴질랜드달러	-	0.02	-	-	0.00	0.00
PLN	폴란드 즐로티	38.56	46.59	82.82	0.50	0.38	0.18
RUB	러시아루블화	27.41	32.76	83.67	0.00	0.03	0.12
RUR	구 러시아루블화	-	3.25	-	-	0.03	0.07
SGD	싱가폴달러	3.68	6.38	57.68	0.05	0.05	0.06
THB	태국바트화	12.29	27.82	44.15	0.16	0.23	0.35
TRY	터키리라	41.25	52.64	78.37	0.54	0.43	0.26
USD	미달러화	4,221.88	5,875.25	71.86	54.83	48.39	37.22
ZAR	남아프리카랜드	22.69	24.11	94.09	0.29	0.20	0.03
총계		7,699.65	12,141.99	63.41	-		

자료: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 자국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임

〈부록 표 3〉 가상화폐거래량과 무역 및 금융개방도와의 관계

구분	가상화폐거래 / 미국주식거래(%)	주식거래 / 미국주식거래(%)	무역개방 정도 ⁹⁾	금융시장개방도 (0~110) ¹⁰⁾	인터넷 마찰도 ¹¹⁾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					
KRW(원화)	29.78	3.81	77.68	0.72	41
JPY(엔화)	13.55	12.43	31.24	1.00	39
PLN(폴란드兹로티)	0.38	0.11	100.47	0.70	45
IDR(인도네시아루피아)	0.36	0.21	37.39	0.41	74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					
TRY(터키리라)	0.43	0.67	46.82	0.45	58
RUB(러시아루블)	0.27	0.33	46.27	0.71	57
MXN(멕시코페소)	0.10	0.27	78.11	0.70	68
CLP(칠레페소)	0.00	0.06	56.09	0.70	57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의 절반					
EUR(유로화)	4.26	15.89	87.01	1.00	26
AUD(호주달러)	0.67	1.89	39.95	0.94	30
GBP(파운드)	0.51	6.05	58.03	1.00	28
CAD(캐나다달러)	0.27	2.74	64.39	1.00	25
BRL(브라질레알)	0.25	1.33	56.63	0.17	69
THB(태국바트)	0.23	0.77	123.07	0.17	64
ZAR(남아프리카랜드)	0.20	0.96	60.38	0.17	67
SGD(싱가폴달러)	0.05	0.45	318.42	1.00	31
RUR(러시아루블)	0.03	0.33	46.27	0.72	57
MYR(말레이시아링깃)	0.03	0.23	128.64	0.42	44
NZD(뉴질랜드달러)	0.00	0.03	52.52	1.00	33
ILS(이스라엘뉴세켈)	0.00	0.21	58.45	0.41	39
- 가상화폐거래비중 < 주식거래비중의 10%					
INR(인도루블화)	0.15	1.88	39.81	0.17	73
CNY(위안화)	0.05	43.49	37.06	0.17	69
CNH(홍콩위안)	0.01	43.49	37.06	0.17	69
CHF(스위스프랑)	0.00	1.99	120.40	1.00	21
HKD(홍콩달러)	0.00	3.21	372.62	1.00	21

자료: Pieters, Gina(2018), "Cryptocurrencies as a new global financial asset",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7) 가상화폐의 거래금액 / 미국주식시장의 거래금액

8) 자국주식시장의 거래금액 / 미국주식시장의 거래금액

9) 무역개방도 = (수입액 + 수출액) / GDP

10) 금융개방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개방도가 높음

11) 인터넷 마찰도는 값이 적을수록 인터넷 접근상의 애로점이 낮음을 의미함. 조사대상국 6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5위를 차지하고 있음. 동 지표는 인터넷관련 인프라 기반시설, 인터넷산업 발달, 인터넷 지불제도 및 데이터 보안, 인터넷 접근 정책 등을 감안하여 수치화하였음; Zwillenberg and Dean(2014) 참조(<https://www.icann.org>)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됨. 특히 경제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빠른 인구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데이터 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인구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마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 공동(空洞)화 및 지자체 간 양극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 통폐합과 관련한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에 도달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고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함
-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8년부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7년 이후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총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과 재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Elis(2008)¹⁾ 및 허문구 외(2014)²⁾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일자리 및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가 더 크게 감소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와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부모의 유출을 촉발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
- 즉, 국가 전체와는 달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저하는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지자체 공동화 또는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실제로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을 보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통폐합이 추진되어 왔음(Hara 2015)³⁾

-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200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25% 정도인데, 지자체 중 5%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초과함
- 일본의 2006년 인구센서스와 2010년 인구센서스를 비교해 보면 지자체 인구와 인구 변화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지자체 중 75%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47%는 인구가 20~40%나 줄어든었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됨
 - 대도시 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리며, 이에 따라 대도시의 인구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인구와 부양 비율(총인구 대비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 간의 관계도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부양비율이 더 높다는 것임

1) Elis, V.(2008), *The Impact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es*,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2) 허문구·이상립·정운선·김은정·이소영·박형진(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인구구조 고령화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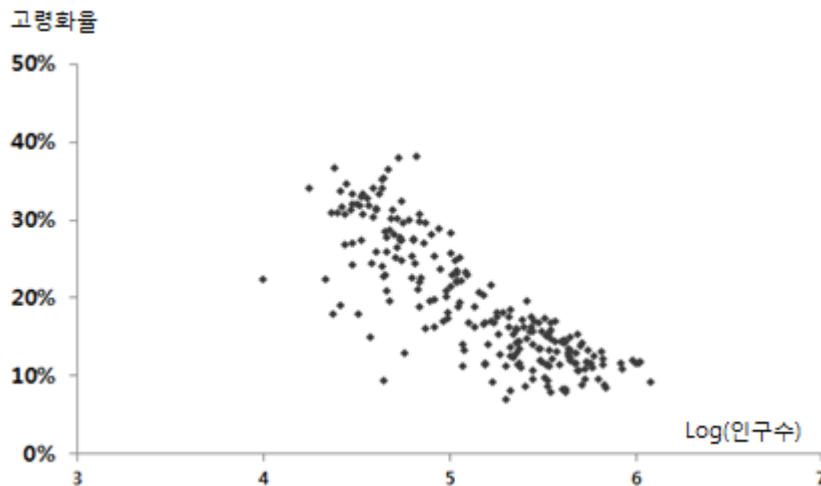
3) Hara, T.(2015), *A Shrinking Society: Post-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로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지고 중앙정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지자체를 합치는 정책(great merger of Heisei era)을 시작하였음
 - 동 정책의 목표는 지자체 수를 1,000개로 줄이는 것인데, 1999년 3,232개에 달하던 지자체 수는 2014년 1,742개로 감소함

■ 통계청이 발표하는 행정구역(읍면동)별 주민등록 현황의 2 레벨 자료를 이용하여 각 행정구역의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별 인구나 고령화율 간에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됨

- 〈그림 1〉은 2017년 기준 각 행정구역별 인구나(log 취함, 가로축)와 고령화율(세로축)의 산포도인데,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고령화율이 낮은 모습을 보임
- 즉,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음

〈그림 1〉 행정구역별 인구나와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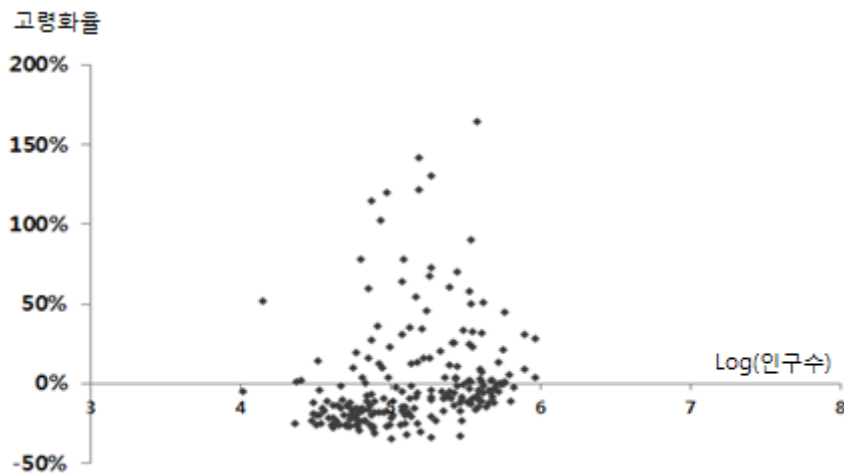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그림 2>는 각 행정구역 인구(log 취합, 가로축)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부터 고령사회에 도달한 2017년까지 인구 변화율(세로축)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약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인구 100,000명(2000년 기준, log를 취할 경우 5) 이하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 행정구역별 인구와 인구 변화율(2000~2017년)



자료: 통계청

■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직까지 경험해보진 못한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지자체의 경우 인구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의 충격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도 인구가 적은 지자체 경우 인구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공동화 및 지자체 간 양극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 통폐합과 관련된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임 [kir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등 행위규제 관련 금융감독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시너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해상충 문제도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의 기능별·영역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너지를 중시한 통합형 감독체계가 등장하였음. 그러나 통합형 감독체계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중시한 부분 통합형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감독유관기관 사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감독유관기관 사이의 협조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현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의 세 기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정과제¹⁾로 발표하였으나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음

-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방안임
- 한편, 또 다른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²⁾를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함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49

2) Calvo et al.(2018),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what has changed after the crisis?", *FSI Insights on policy implementation*, No. 8, 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BIS

■ 금융감독은 (미시)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포함), 금융안정 감시(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와 부실금융기관 정리(resolution) 기능이 추가됨

■ 이러한 금융감독기능의 경우 상호 간에 시너지³⁾(Morais 2016)와 이해상충 문제⁴⁾(Cecchetti 2007; The group of thirty 2008)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미시)건전성 규제 및 거시건전성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금융안정이 제고되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거시건전성 규제와 (미시)건전성 규제는 규제 시제(horizon)가 각각 장기 및 단기로 다르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가 (미시)건전성 규제에 종속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부실기관 정리 기능과 건전성 규제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위기에방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기관이 감독책임을 회피하고자 부실기관 정리를 지연시키는(supervisory forbearance) 이해상충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음
-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되면 (미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미시)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가 충돌될 수 있음

■ Calvo et al.(2018)은 82개국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금융감독체계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Calvo et al.(2018)는 금융감독체계를 크게 업권별 감독체계, 통합형 감독체계, 부분 통합형 감독체계 등 3개 형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개 유형⁶⁾으로 세분화하였음
 - ① 업권별 감독체계(Sectoral Model):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기관이 다르며, 업권별 감독기관이 각 업권에 대해 건전성규제 및 행위규제 등 모든 감독기능을 담당함

3) 시너지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금융감독기능이 결합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함; Morais, L.(2016), *White paper on the regulation and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ystem*, Banco de Portugal

4) Cecchetti, S.(2008), "The subprime series, part 3: why central banks should be financial supervisors", in A. Felton and C. Reinhardt(eds), *The first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21st century*, CEPR; The group of thirty(2008),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place*

5) 미국은 금융감독기능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에 부여되어 있음. EU는 중요한(significant) 은행에 대해서는 단일 건전성감독기관을 공유(ECB's single supervisory mechanism)하고 EU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자국의 나머지 금융기관을 감독함.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과 EU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6) 국제적으로 저명한 30인 그룹(The group of thirty 2008)은 감독체계를 기관별(institutional), 기능별(functional), 통합형(integrated) 및 쌍봉형(twin peak)으로 구분함; 윤석현 외(2013),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연구』, vol. 27, no. 3 재인용

- 통합형 감독체계(Integrated Model): 통합된 기관이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 및 행위 규제 등을 담당하는데, 감독주체가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냐에 따라 다시 ② 중앙은행 통합형 감독체계와 ③ 별도 기관(separate agency) 통합형 감독체계로 구분됨
- 부분 통합형 감독체계(Partial Integrated Model): 감독기능이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감독체계인데, 다시 쌍봉형 감독체계와 쌍기관 감독체계로 구분됨
- ④ 쌍봉형 감독체계(Twin Peak Model)7): 건전성규제와 행위규제를 각각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담당함
- ⑤ 쌍기관 감독체계(Two Agency Model): 은행과 보험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행위 규제를 감독하는 기관과 시장 및 증권에 대해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됨

〈표 1〉 국가별 감독체계 유형(79개국¹⁾, 2017년 기준)

구분	국가
업권별 감독체계(39)	Albania, Angol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elize,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Chile,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Georgia, Hong Kong SAR ²⁾ , India, Israel, Kuwait, Lebanon, Luxembourg, Macedonia, Mauritius, Mexico, Morocco, Pakistan, Panama, Philippines, Portugal, Slovenia, South Africa, Spain, Thailand, Tunisia, Turkey, Uganda, Ukraine, Vietnam, Zambia
통합형 감독체계(중앙은행)(9)	Bahrain, Czech Republic, Hungary, Ireland, Uruguay, Russi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통합형 감독체계(별도)(14)	Austria, Columbia, Denmark, Estonia, Finland, Germany, Iceland, Japan, <u>Korea</u> , Latvia, Norway, Poland, Sweden, Switzerland
쌍봉형 감독체계(8)	Australia, Belgium, Canada, Guatemala, Netherlands, El Salvador, New Zealand, United Kingdom
쌍기관 감독체계(9)	France, Greece, Italy, Malaysia, Paraguay, Peru, Trinidad and Tobago, Saudi Arabia, Serbia

주: 1) 8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개 국가는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음

2) 홍콩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나 중국과 별도의 감독당국이 존재함

자료: Calvo et al.(2018)

■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구조, 금융발전 정도, 금융위기경험 유무, 법률체계, 사회문화, 정치경제학적 요인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모습임

- 전통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업권별 감독체계를 따랐으며, 현재에도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49%, 〈표 1〉 참조)

7) 윤석현 외(2013)는 통합감독체계에서 영업행위 규제 중 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별도로 분리한 감독체계를 쌍봉형체계와 구분하여 소봉형체계라고 함

- 통합형 감독체계(중앙은행, 별도) 비중은 29%(11%, 18%)이며, 부분 통합형 감독체계(쌍봉형, 쌍기관) 비중은 22%(10%, 12%)임
 - 금융산업 발전으로 업권별 겸업이 확대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복합금융기관(Financial Conglomerates)이 등장함에 따라 업권별 감독체계의 기능별·영역별 통합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금융감독기능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중시하는 국가와 이해상충 문제를 중시하는 국가 간에 금융감독체계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됨
 - 시너지를 중시한 영국은 1997년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에서 모든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통합형 감독체계(별도)⁸⁾를 채택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고자 쌍봉형 감독체제로 전환함
 - 처음부터 이해상충 문제를 중시한 호주는 1997년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하여 건전성 규제와 행위 규제를 별도의 기관이 담당함
 - 그런데 통합형 감독체계를 취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쌍봉형 감독체계에서도 투자은행과 자산운용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행위 규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⁹⁾와 이탈리아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감독과 증권 및 시장에 대한 감독을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쌍기관 감독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유럽의 경우 은행과 보험회사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 감독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것임
 - 중국도 은행규제위원회와 보험규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쌍기관 감독체제로 이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하여 시너지 및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체계 유형에 관계없이, 정도는 다르지만 거시건전성 감독 이외에도 금융감독체계에 참여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이해상충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고, 둘째,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셋째, 감독기관 간 업무 조율을 위해 감독유관기관 협조체제가 만들어짐

8) 그러나 동 감독체계는 1984년 싱가포르가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노르웨이(1986년), 스웨덴(1991년) 등 북유럽국가들도 통합형 감독체제로 전환하였음

9) 윤석현 외(2013)에서는 쌍봉형 감독체제로 분류됨

- Calvo et al.(2018)의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개 국가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 업권별 감독체계 국가 중 1국은 통합형(중앙은행), 3국은 통합형(별도), 1국은 쌍봉형, 2국은 쌍기관 감독체제로 전환함
 - 통합형(별도) 감독체계 국가 중 2국은 통합형(중앙은행), 2국은 쌍봉형으로 개편함
- 39개 국가의 경우 법적, 규제적, 또는 행정적으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71개 국가가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규제 주체가 중앙은행인 경우 40개국, 감독기관과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인 경우 21개국, 통합형(별도) 감독체계인 경우 6개국, 정부인 경우 4개국임
- 14개국이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

■ 조사대상 국가 중 19개 국가가 금융위기를 겪었고 이 중 7개국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건전성 규제에 있어서 중앙은행 역할이 강화됨

- 업권별 감독체계 국가 중 1국은 통합형(중앙은행), 1국은 통합형(별도), 1국은 쌍기관 감독체제로 전환함
 - 쌍기관 감독체제로 전환한 국가의 경우 은행 및 보험감독은 중앙은행이 담당함
- 통합형(별도) 국가 중 2국은 통합형(중앙은행), 2국은 쌍봉형으로 개편함
 - 쌍봉형으로 전환한 국가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건전성규제를 담당함
- 한편, 통합형(중앙은행) 감독체계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는 없었음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

구분	전환 형태	국가수(개)	비고
조사대상 79개국 중 11개국이 금융감독체계 전환	업권별 → 통합형(중앙은행)	1	-
	업권별 → 통합형(별도)	3	
	업권별 → 쌍봉형	1	
	업권별 → 쌍기관	2	
	통합형(별도) → 통합형(중앙은행)	2	
	통합형(별도) → 쌍봉형	2	
	소비자 보호 강화	39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71	
	감독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4	

구분	전환 형태	국가수(개)	비고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 17개국 중 7개국이 금융감독체계 전환	업권별 → 통합형(중앙은행)	1	-
	업권별 → 통합형(별도)	1	
	업권별 → 쌍기관	1	중앙은행이 은행과 보험감독 담당
	통합형(별도) → 통합형(중앙은행)	2	-
	통합형(별도) → 쌍봉형	2	중앙은행이 건전성규제 담당

자료: Calvo et al.(2018)를 정리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건전성 규제와 행위 규제(소비자 보호) 간의 이해상충 문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었음

- 윤석현 외(2013)가 국내 연구를 정리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 결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금융감독 주체가 공적 민간기구 또는 최소한 민관혼합을 선호함
- 둘째, 건전성규제와 행위규제 분리의 경우 분리를 주장하는 연구가 다소 많으며, 분리의 경우에도 행위규제 전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분리하자는 주장(소봉형)이 다소 우세함
- 셋째, 다수의 연구들이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 및 감독유관기관 간의 조율을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제언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정과제 및 기존 국내 연구는 큰 틀에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과 부합하는 모습임

-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너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임
 - 감독기능이 기관별 분리·전문화됨에 따라 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도 구축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의 경우 건전성규제 권한이 중앙은행으로 이전되는 모습도 나타남¹⁰⁾
- 국정과제 및 기존 국내 연구의 방점도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시너지보다는 이해상충 문제, 그리고 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kiri](#)

10)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는 도입되었으나 (미시)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한 주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됨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부동산 규제 등 정부의 노력과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가계부채는 대출 수요 증가 또는 대출 공급 증가에 의해서(또는 모두) 늘어나는데, 수요 증가의 경우와 공급 증가의 경우 가계부채와 소비 및 금리 간의 관계가 같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는 양(+)으로 동일함. 이는 수요나 공급 등 어떠한 요인에 의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노력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¹⁾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8년 1/4분기 1,468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하였는데, 2017년 1/4분기(11.0%)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
- 그러나 2010~2014년 평균증가율 7.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향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음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이 2018년 1/4분기 160.1% 수준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가져올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금융안정보고서(2018. 6)

- 그러나 한국은행²⁾은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간 갭이 축소되고 있으며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금융자산과 가계부채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가계의 부실 가능성보다는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임
- 본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가계부채 연착륙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가계부채는 대출 수요 또는 대출 공급이 증가하여 늘어나게 되는데, 수요 측면을 강조한 이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한(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으로 정의)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짐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미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기 위한 것임 (Aguiar and Gopinath 2007)³⁾
 - 따라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충격에 의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도 증가하고 이후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게 됨
 - 유동성 공급에 변화가 없을 경우 대출 수요에 견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금리를 상승시킴
- 가계부채 증가를 공급 측면에서 설명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는 경우인데, 대출 공급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짐
- 대출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해외자본 유입, 금융규제 완화, 금융중개기능 제고 등이 거론됨(Justiniano et al. 2015)⁴⁾
 - Favilukis et al(2015)⁵⁾도 해외부문으로부터 자본 공급이 지속되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규제가 완화될 때 대출 공급이 증가한다고 설명함

2) 금융안정보고서(2018. 6)

3) Aguiar, M and Gopinath, G.(2007), "Emerging market business cycles: the cycle is the tre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 115

4) Justiniano, A., Primiceri, G., and Tambalotti, A.(2015), "Credit Supply and the housing boom", Working Paper 20874, NBER

5) Favilukis, J. and Ludvigsson, C., and Van Nieuwerburgh, S.(2015),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housing wealth, housing finance, and limited risk sharing in general equilibrium", Working Paper

- Landvoigt(2016)⁶⁾는 금융기관이 주택대출 부실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때 대출 공급이 증가하는데, Greenwood et al.(2016)은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취급 시 과거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실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Justiniano(2015)는 대출 공급 증가가 금리 하락, 경제성장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시함
- 가계부채가 수요 요인에 의해서 또는 공급 요인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고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 둘 다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데, 이론적 설명의 공통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을보다 낮아지게 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가계부채와 금리 및 소비 간의 관계는 이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이론에서 가계부채와 경제성장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GDP 성장을 이하로 둔화(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될 경우 경제성장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Mian et al.(2015)⁷⁾에 따르면 가계부채 주기(cycle)상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상 3~4년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시기에 경제성장률도 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IMF(2012)⁸⁾와 Glick and Lansing(2010)⁹⁾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가계부채 증가(금융위기 후 가계부채 감소)가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경제 회복을 제한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되는데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와 2014년을 제외하고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율과 GDP 증가율은 동행하는 모습임

6) Landvoigt, T.(2016), "Financial intermediation, credit risk, and credit supply during the housing boom", Working Paper, McComb School of Business

7) Mian, A., Suhi, A., and Verner, E.(2015), "Household debt and business cycles worldwide", NBER Working Paper 21581, NBER

8) IMF(2012), "Dealing with household det", *World Economic Outlook*

9) Glick, R. and Lansing, J.(2010), "Global household leverage, house prices, and consumption", FRBSF Economic Letter

〈그림 1〉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을 추이



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BI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 변동률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전년동기 대비 변동률의 4분기 이동평균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필요해보임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적절한 속도 조절로 판단됨
-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중립적인 수준인 경제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임 [kiri](#)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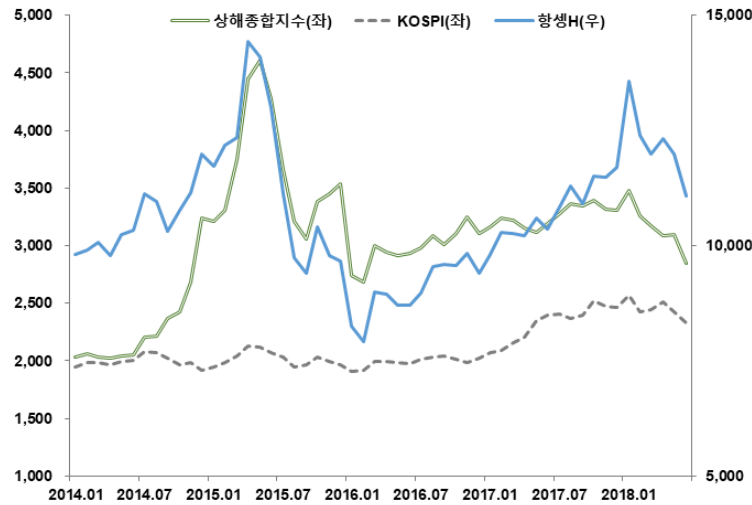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주가지수의 하락은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침.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나라 ELS 비중은 71%에 달해 H지수의 하락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는 동조화 현상이 강화됨. 이는 양국 간 무역연계성 강화 때문인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장기화 가능성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주가의 동조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임.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의 장기화는 중국 경제 및 주가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투자자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8년 들어 중국의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임

- 상해종합지수는 1월 말 3,480.83에서 6월 말 2,847.42로 18.2% 하락함
-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들로 구성된 주가지수인 항셱차이나기업지수¹⁾(이하 'H지수')는 동기간 13,561.65에서 11,073.00으로 18.4% 하락함
 - H지수와 상해종합지수는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내수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임

1)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그림 1〉 중국과 우리나라 주가지수 추이



주: 월말 수치임
자료: Bloomberg

■ 중국 주가지수의 하락은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LS는 대부분 원금비보장형으로 발행되는데, H지수는 EuroStoxx 50과 함께 ELS의 기초자산으로 가장 많이 쓰임²⁾
 - 2018년 상반기 발행된 ELS 48.1조 원 중 원금비보장형은 43.9조 원(91.3%)이며, EuroStoxx50과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비중은 각각 78.6, 71.1%임³⁾
- 2018년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행잔액은 35.4조 원으로 전체 ELS 발행잔액의 35%에 이룸⁴⁾
 - 2015년도에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이 과도하여 발행 감축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으나 2017년 말 종료되어, 2018년에 다시 발행이 급증함

■ H지수의 가격변동은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H지수의 가격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ELS 투자자가 만기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 (Knock-In Barrier)에 진입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18), “최근 ELS 발행·판매 동향 및 대응방안”

3) 2개 이상의 기초자산을 편입한 ELS의 경우 각각의 기초자산을 중복하여 산출한 수치임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18), 전제서

- ELS의 구조는 다양하지만, 많은 지수형 ELS는 3년 만기이며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발행 시) 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임
- H지수가 높은 수준이었던 2015년 상반기에 발행된 EuroStoxx 50 및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중 2108년 상반기에 만기상환 된 종목은 473개인데, 이중 69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함⁵⁾
- 손실 종목의 상환수량은 57,011로 전체 상환수량 857,126 중 6.7%를 차지함
- ELS는 은행신탁과 일반 공모 등의 경로를 통해 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데, 2018년 1/4분기 은행신탁과 일반 공모에 의한 ELS 판매 비중은 각각 58.5%, 19.8%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가지수와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동조화 현상이 강화됨

- 한국과 중국 간 주가수익률의 동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짐⁶⁾
 - 반면, 한국과 미국 간, 한국과 일본 간 주가수익률의 동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작아짐
 - 유복근·이진수(2018)는 한국과 중국 간 무역연계성이 주가수익률의 동조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보임
 -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아져서 2018년에는 수출, 수입 각각 24.8%, 20.5%를 차지함

〈표 1〉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입 비중

(단위: %)

2000년			2017년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미국	21.8	18.2	중국	24.8	20.5
일본	11.9	19.8	미국	12.0	10.6
중국	10.7	8.0	베트남	8.3	3.4
기타	55.6	54.0	기타	54.9	65.6

주: 수출 비중 기준으로 상위 3개국을 선정함
 자료: K-stat(<http://stat.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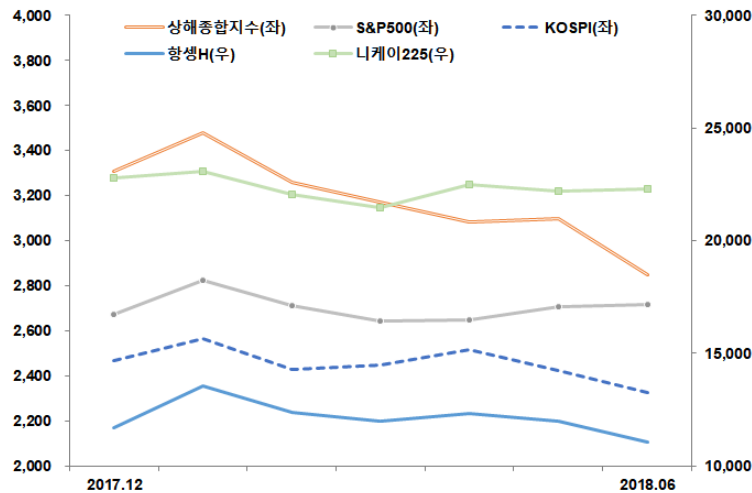
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6) 유복근·이진수(2018), "What Drives the Stock Market Comov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Japan and the US?", BOK경제연구

■ 특히, 최근 우리나라 주가지수와 중국 주가지수는 더욱 높은 동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의 수출 둔화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주가수익률 간 높은 동조화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 최근 주요 주가지수 추이



주: 월말 수치임
자료: Bloomberg

■ 투자자들은 통상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중국 주가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올해 1/4분기 중국의 경상수지가 16년여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⁷⁾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혹은 적자 전환은 위안화 약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
- 중국 당국에 의한 기업부채 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도 및 유동성 위기를 감안하면, 위안화의 지속적 약세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위안화의 지속적 약세를 방지할 경우 자본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의 부도 및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내수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 [kiri](#)

7) 이치훈·이상원(2018. 7. 9),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 원인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의한 이후 실질적인 유럽연합 탈퇴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 영국 보험산업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27억 파운드의 35%인 74억 파운드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영국은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체제에서 설계된 규제체계를 영국의 규제체제로 흡수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및 EU 금융회사들이 브렉시트 이전과 같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대응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이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 판단됨.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영국정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지역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임

■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를 결의하여 2019년 3월 탈퇴 예정임

-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EU에 탈퇴의사를 전달하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하게 됨
 - 현재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탈퇴 이후 관계 정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9년 3월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됨¹⁾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2017년 6월 시작되었으며, 2018년 10월 협상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1)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음. 일단 회원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유럽 이사회에 통보하면, 탈퇴 신청국과 유럽연합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향후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 등을 설정하게 됨

■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및 보험시장 변화에 대해 영국 금융당국(FCA)이 우려하는 부분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 금융당국(FCA)은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감독당국인 FCA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그리고 영국정부가 함께 안정적인 금융시장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FCA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이슈와 대응 방향을 발표하였음²⁾

■ 브렉시트로 인해 법률 및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및 지급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규제절벽위험(Cliff Edge Risk)에 직면할 수 있음³⁾

- 런던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227억 파운드 가운데 EU지역에서 발생한 수입보험료는 50억 파운드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22.4%임
 - 특히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사의 경우 EU지역 수입보험료가 23억 파운드(34.6%)로 EU지역에서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두드러졌음
- IUA(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는 브렉시트로 인해 73.8억 파운드 규모의 수입보험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음
-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는 영국에서 약 1,000만 명, 유럽연합지역 3,800만 명의 보험계약자가 브렉시트로 인한 규제절벽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파생상품은 26조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FCA(2018. 7. 19), "The FCA's approach to Brexit: our preparations and our vision for the future"

3) AFME(2018), *Brexit: Key Cliff edge risks in wholesale financial services*

〈표 1〉 영국에 본사와 지사를 둔 보험회사의 지역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파운드, %)

구분	본사		지사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국	87.00	54.3	20.13	30.2	107.13	47.2
북미	22.84	14.2	6.79	10.2	29.63	13.0
남미	6.13	3.8	4.9	7.3	11.03	4.9
EU	27.75	17.3	23.06	34.6	50.81	22.4
아시아	11.67	7.3	5.66	8.5	17.33	7.6
아프리카	2.91	1.8	0.5	0.7	3.41	1.5
호주	2.04	1.3	5.69	8.5	7.73	3.4
계	160.34	100	66.73	100	227.07	100

자료: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London Company Market Statistics Report 2016 자료를 재구성

■ 특히 보험산업은 영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브렉시트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⁴⁾

- 영국 보험 및 연금산업이 한 해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는 400억 파운드로 이는 영국 국내 총생산 18,371억 파운드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산업 종사자 1인당 연간 생산성은 135,000~150,000파운드로 건설업 75,000파운드, 제조업 65,000파운드의 2배 수준임
 -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 309,000명 중 86%가 정규직(Full-time)일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영국 산업의 정규직(Full-time) 비율 67%에 비해 19%p 높은 수준임
- 브렉시트로 영국의 보험산업이 위축될 경우 영국 경제와 일자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제도 및 금융관련 법률 등의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금융관련 제도 및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EU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법안들로 전환되도록 추진 중임

4) ABI(2017. 6. 26), "Thriving insurance sector benefits the whole UK economy"

- 규제와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이전 제도 하에서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임
 - 보험 및 금융 계약유지 등과 관련한 문제는 영국과 EU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므로 27개의 EU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음
-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EU 국적 금융회사와 펀드들이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절차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제도(Temporary Permissions Regime)임
- 금년 4월 기준으로 8,500개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영국에서 그리고 6,000여 개의 영국 금융회사가 EU지역에서 EU기반 패스포트(Passport)로 영업 중임
 - 브렉시트 이후 이들 회사들의 영구적인 영업이 가능한 지위를 얻을 때까지 고객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할 방침임
 - 이러한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임
- 이러한 방향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국경 간 거래 활성화, 일관된 글로벌 스탠더드 유지,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 능력 있는 인적자원 유치 등을 강조함
 - 이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금융·보험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영국이 준비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EU국가와의 협력강화, 금융회사 임시허가제도 등은 안정적인 브렉시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보험·금융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런던 금융시장의 변화는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영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은 여타 유럽 국가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측의 브렉시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kiri](#)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특히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의 소비자물가 변동은 체감소득과 서민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25.2%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6.9%)와 의류 및 신발(34.0%)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높은 상승세를 시현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의·식·주에 대한 물가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유일한 국가였음. 의·식·주 관련 물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특히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의 소비자물가 변동은 체감소득과 서민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금년 여름의 폭염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무와 배추 등의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 본고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의·식·주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함
-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전국)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5.2%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동 기간 중 주류 및 담배가 62.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6.9%), 기타 상품 및 서비스(36.1%), 의류 및 신발(34.0%), 음식 및 숙박(30.1%) 순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주택¹⁾·수도·전기·연료(26.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5.9%), 교육(22.4%)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유사한 상승세를 시현함
 - 전세는 36.7%로 상승률이 높았으나 월세와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가 각각 13.8%, 7.8% 상승에 그침에 따라 주택·수도·전기·연료 물가의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보건(13.5%), 교통(11.1%), 오락 및 문화(9.7%)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통신의 경우 지수가 6.5% 하락함
 - 통신은 IT 기술 발달에 따라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 금융수수료, 행정수수료의 경우 각각 -1.3%, -31.8%, 27.6% 상승함

〈표 1〉 지출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추이 및 상승률

(단위: %)

구분	2007년	2017년	2007~2017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72.0	105.8	46.9
주류 및 담배	62.8	102.2	62.7
의류 및 신발	76.8	102.9	34.0
주택 수도 전기 연료	80.0	100.9	26.1
(전세)	(77.7)	(106.2)	(36.7)
(월세)	(88.3)	(100.5)	(13.8)
(전기·가스·연료)	(81.6)	(88.0)	(7.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81.6	102.7	25.9
보건	89.8	101.9	13.5
교통	91.2	101.3	11.1
통신	107.4	100.4	-6.5
오락 및 문화	92.9	101.9	9.7
교육	84.0	102.8	22.4
음식 및 숙박	80.7	105.0	30.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78.1	106.3	36.1
(자동차보험료)	(103.8)	(102.5)	(-1.3)
(금융수수료)	(146.4)	(99.9)	(-31.8)
(행정수수료)	(78.4)	(100.0)	(27.6)
전체	82.2	102.9	25.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의 경우 전세와 월세 그리고 주거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포함되며, 주택매매가격은 포함되지 않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대만 등 8개 국가를 비교해보면,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표 2〉 참조)

- 본고에서 의·식·주는 〈표 1〉에서 각각 의류 및 신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를 의미함
- 지난 10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영국이 26.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25.2%, 미국 17.4%, 캐나다 16.8%, 독일 13.7%, 프랑스 10.7%, 대만 10.3%, 일본 1.5%였음
- 모든 국가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이상으로 상승하였는데, 우리나라 상승률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후 영국 30.2%, 캐나다 28.4%, 대만 28.3%, 독일 23.3%, 미국 21.3%, 프랑스 12.1%, 일본 9.7%였음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일본은 6.5배²⁾, 대만은 2.7배, 우리나라는 1.9배, 캐나다와 독일 1.7배, 미국 1.2배, 영국과 프랑스 1.1배 높았음

〈표 2〉 주요국 지출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07~2017년)

(단위: %, 배)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대만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46.9 (1.9)	21.3 (1.2)	9.7 (6.5)	30.2 (1.1)	12.1 (1.1)	28.4 (1.7)	23.3 (1.7)	28.3 (2.7)
의류 및 신발	34.0 (1.3)	2.0 (0.1)	-2.0 (-1.3)	-8.7 (-0.3)	6.9 (0.6)	-1.4 (-0.1)	11.5 (0.8)	4.5 (0.4)
주택 수도 전기 연료	26.1 (1.0)	20.3 (1.2)	-0.7 (-0.5)	45.2 (1.7)	21.7 (2.0)	16.8 (1.0)	14.9 (1.1)	4.1 (0.4)
참고 〈보건〉	〈13.5〉	-		〈25.5〉	〈-6.4〉	〈15.5〉	〈10.8〉	〈10.4〉
〈교육〉	〈22.4〉	-	〈1.2〉	〈93.9〉	〈22.4〉	-	〈-0.2〉	〈0.8〉
전체	25.2	17.4	1.5	26.4	10.7	16.8	13.7	10.3

주: 1) ()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개별 항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단위: 배)

2)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항목이 12개, 미국은 9개, 일본은 10개, 캐나다 8개, 대만은 7개로 직접적인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블룸버그; 일본 통계청

2) 일본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빠르게 상승함

-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며, 일본, 영국, 캐나다에서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의류 및 신발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4.0%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에 달함
 - 주택·수도·전기·연료는 대체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상승하였으나, 영국, 프랑스에서 상승률이 이 보다 높았고, 일본은 마이너스 상승률³⁾을 보임
 - 참고로 비교 가능한 항목인 보건과 교육을 보면, 보건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수준으로 지수가 높아졌으나, 우리나라,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았고, 교육의 경우 영국에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3배 이상, 프랑스에서도 2배 이상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음
- 본고에서 살펴본 8개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및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 지출 항목의 가중치가 국가별로 다르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중치(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37.7, 의류 및 신발 61.4, 주택·수도·전기·연료 170.2)를 모든 국가에 적용함
 - 가중치를 감안하여 의·식·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35.2% 상승하였고, 이후 영국 30.6%, 캐나다 18.1%, 미국 17.5%, 독일 17.4%, 프랑스 15.6%, 대만 13.2%, 일본 3.0% 순이었음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의·식·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일본 2.0배, 프랑스 1.5배, 우리나라 1.4배, 독일 1.3배, 대만 1.3배, 영국 1.2배, 캐나다 1.1배, 미국 1.0배로 일본, 프랑스 및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부담이 가장 많이 높아진 것 나타남
 -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의 의·식·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3.0%, 15.6%로 우리나라 35.2%에 비해 크게 낮음

3) 일본의 경우 주택과 전기·수도·연료가 별도로 발표되고 있는데, 동 기간 중 각각 -4.0%, 8.5% 상승하였음. 본고에서는 주택 지수 및 전기·수도·연료 지수와 일본 가중치(각각 2,087, 745)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 상승률을 계산하였음

〈표 3〉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및 의·식·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배, %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대만
의·식·주(A)	35.2	17.5	3.0	30.6	15.6	18.1	17.4	13.2
전체(B)	25.2	17.4	1.5	26.4	10.7	16.8	13.7	10.3
A/B	1.4	1.0	2.0	1.2	1.5	1.1	1.3	1.3
A-B	10.0	0.1	1.5	4.2	4.9	1.3	3.7	2.9

- 한편, 의·식·주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간의 상승률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10.0%p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4.9%p, 영국 4.2%p, 독일 3.7%p, 대만 2.9%p, 일본 1.5%p, 캐나다 1.3%p, 미국 0.1%p이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주요국에 비해 의·식·주에 대한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는 한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에 대한 물가 관리가 필요해 보임 [kir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조영현 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가계의 부채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해지 환급금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부담이 해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해지율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임.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해지환급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7년 4/4분기와 2018년 1/4분기 개인보험 해지환급금(효력상실 포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1%, 11.5% 증가하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개인의 부채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DSR 또한 2014년 11.3%를 기록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2010년 수준인 12.1%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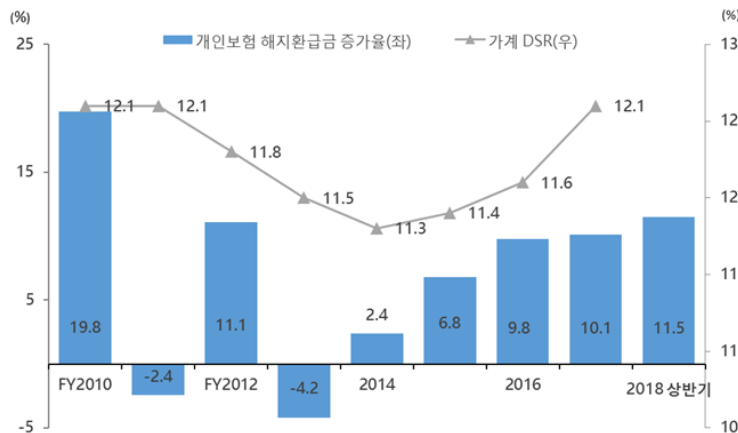
■ 이에 따라 DSR이 개인보험 종목별 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해지율(이하 '신해지율') 지표를 고안함

- 해지환급금은 보험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해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계약금액을 계산한 해지율¹⁾ 지표가 주로 활용됨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그러나 전통적인 해지율은 분모인 보유계약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해지환급금을 당해 연도를 포함한 과거 6년간 수입보험료로 나눈 새로운 해지율 지표를 고안하여 DSR과 종목별 신해지율 간의 관계를 살펴봄
 - 이 경우 분모를 누적 보험료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종목별 구분이 어렵고 자료의 가용성이 낮아 수입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선택함
 - 개인보험의 경우 5년 내에 신규계약의 50% 이상 해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년간의 수입보험료를 합산함(2016년 생명보험 전체 61회차 유지율: 49.2%)
- 또한 6년간 수입보험료 1원당 해지환급금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나 일시적 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 지속적인 가격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해지로 볼 수 있음

〈그림 1〉 개인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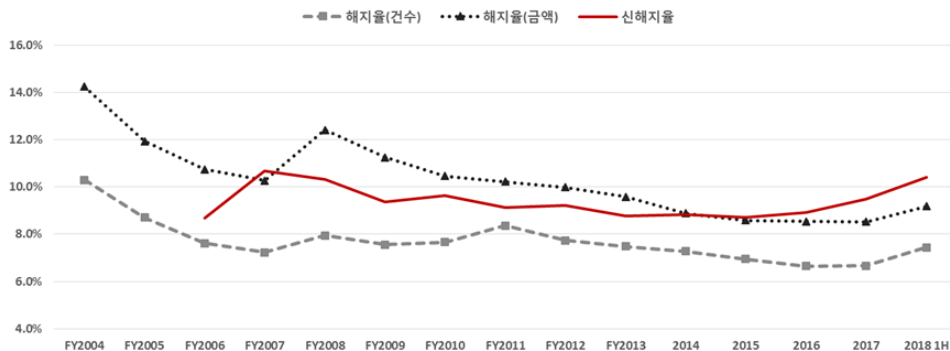


주: 해지환급금은 효력상실 환급금을 포함함
자료: BIS, 업무보고서

- 전통적인 해지율과 계약금액 대신 계약 건수로 계산한 해지율, 신해지율 등 세 가지 해지율 지표와 DSR의 관계를 개인보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해지율이 DSR과 보다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그림 2〉의 붉은색 선인 신해지율과 다른 해지율 지표를 비교해보면 신해지율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2016년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신해지율이 수입보험료 1원에 대한 해지환급금으로 정규화되었기 때문이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7년에는 감소하기 때문임
- FY2006에서 2017년까지의 계약금액 기준 해지율, 계약 건수 기준 해지율, 신해지율과 DSR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각각 0.225, 0.089, 0.368로 나타나 신해지율이 DSR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FY2009~2017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47, 0.369, 0.832로 금융위기 이후 신해지율과 DSR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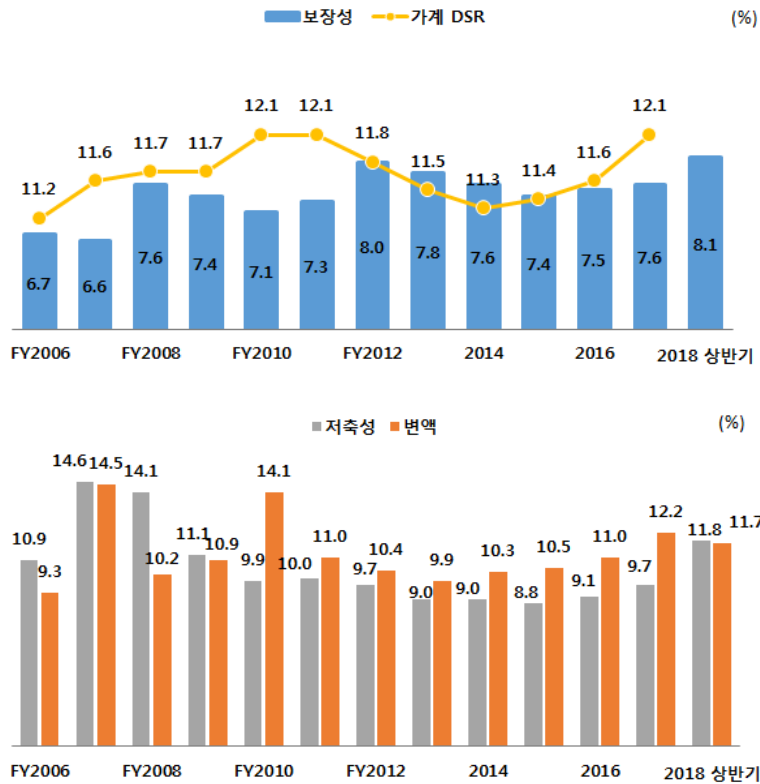
〈그림 2〉 개인보험 기준별 해지율 추이



주: FY2013 및 2018년 상반기 해지율은 연율화합
자료: BIS, 업무보고서 및 저자의 계산

- 최근 4년간 보험종목별 신해지율을 보면, 변액보험의 신해지율이 가장 먼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축성 보험이, 그 다음으로 보장성보험 신해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보장성보험의 신해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8년 상반기에 더욱 증가하여 전고점(8.0%, FY2012)을 넘는 8.1%를 기록함
- FY2009부터 2017년까지 DSR과 보장성, 저축성, 변액보험 신해지율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40, 0.535, 0.701로 저축성 및 변액보험 해지율과 DSR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생명보험 종목별 손해지율과 DSR



주: 1) FY2013 및 2018년 상반기 해지율은 연율화함
 2) DSR은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수치임
 자료: BIS, 업무보고서 및 저자의 계산

-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iri](#)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평화정착임.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가 정착될 경우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위협이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경영성과에 비해 할인된 원인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로 주가 상승과 원화강세, 그리고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이하 ‘CDS’) 프리미엄 하락이 예상됨. 원화강세와 CDS 프리미엄 하락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 확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경제협력,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북한 투자위험 보장 방안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평화정착임

- 비핵화,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북한 정상이 선언함
- 민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할 것임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북핵 위험이 완화되어 평화가 정착될 경우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임

-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 완화는 금융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와 남북 경제협력, 북한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의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의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교류가 확대될 것임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등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협력사업 재개가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평화가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투자확대 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측면에서 북한의 위협 완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소시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이 다른 나라 상장기업의 주가 수익비율보다 낮다는 특징에서 비롯된 개념임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 여부는 학문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해왔음
-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국내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율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지만 북한의 위협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CDS는 채권발행자가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을 거래하는 파생 상품인데, 최근까지 북한의 핵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16년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 발표 이후 80.25bp까지 상승하였고, 2016년 9월 5일 ICBM 실험 이후 66.95bp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전후인 2017년 9월 28일 75.31bp까지 상승함
 - 2017년 9월 28일부터 2018년 4월 30일 CDS 프리미엄은 44.35bp로 하락함

〈그림 1〉 CDS 프리미엄 추이

(단위: bp)



자료: 블룸버그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원화가치에 충분히 반영시켜 원화강세를 유도할 것이며, 원화강세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은 원화가치에도 반영되어 왔는데, 이번 남북 합의는 원화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윤성훈(2018)은 통화가치가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을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지적함¹⁾
 -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전 세계 주가지수(예를 들면, 모건스탠리 주가지수)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험이었음
- 원화강세는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인허가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프리미엄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FRS 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이 자본 확충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윤성훈·한성원(2018. 1. 29), 「1인당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5년물 신용등급 Aa2/AA/AA- 기준 가산금리는 2017년 1월 92.5bp에서 19월에는 100bp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4월과 9월의 북한 핵실험이 주요 원인으로 전년 대비 12bp 확대된 것임

〈표 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채권 발행 금리

구분	발행시기	발행회사	발행금액	표면이율	만기	비고
신종자본증권	2017.3	H	350억 원	4.933%	30년	사모/콜
	2017.4	H	5,000억 원	4.582%	30년	콜
	2017.7	K	5억 달러	3.950%	30년	콜
	2017.11	H	5억 달러	4.475%	30년	-
	2017.3	H	300억 원	5.600%	30년	사모/콜
후순위채	2017.4	N	1,700억 원	3.160%	7년	-
			2,800억 원	3.555%	10년	-
			500억 원	3.385%	10년	콜
	2017.5	D	2,020억 원	3.512%	7년	콜
	2017.5	H	2,330억 원	3.844%	10년	콜

자료: 국제금융센터(2017. 12. 29), “2018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전망”

-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제재를 완화 혹은 해소하고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미 대화가 성공적일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 투자위험 보장 방안 확대가 필요함

-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짐
 - 외신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1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북한에 대한 송금도 줄어들어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우려가 커짐²⁾
 - 2017년 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3%, 2014년 1.0%, 2016년 3.8%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임³⁾

2) Financial Times(2018. 4. 5), “Sanctions-hit North Korea faces crisis over hard currency”

3) 조성렬(2017. 12),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핵개발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과 대화를 통해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다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도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북한 투자와 관련된 투자위험(정치적 위험) 보장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 기금을 기반으로 경험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을, 미국의 AIG, 영국의 Catlin은 정치적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kiri**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2017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이, 12월 13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8년 1월 3일 2.13%로 2017년 10월 평균 2.03%에서 10bp 상승함. 금리상승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상승,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건전성 저하, 그리고 해약을 상승 등으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해약금액 증가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상승이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보유계약 관리가 중요해짐을 시사함

■ 2017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그리고 12월 13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함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3.0%였던 금리를 3.25%로 올린 이후 6년 5개월만임
-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1.50%로 인상되었고 2018년에도 세 차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상승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신용위험 상승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¹⁾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개선과 역마진 부담 감소 등 보험회사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다만, 현재의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채권평가이익이 감소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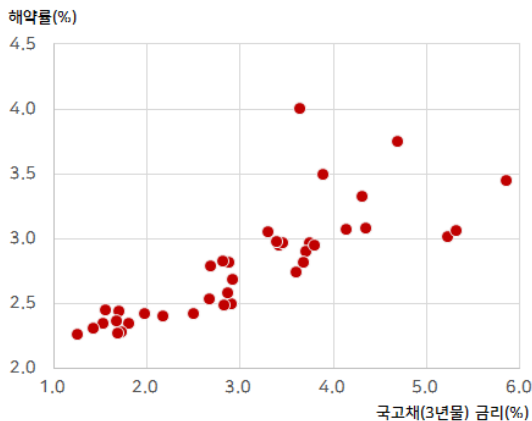
1)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참조

- 보험회사의 운용자산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2017년 2/4분기 손해보험 27%, 생명보험 19%임

■ 2008년 1/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 해약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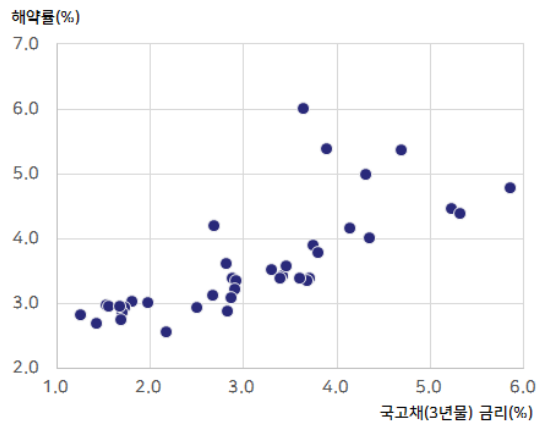
- 금리상승은 보유계약의 현재가치를 하락시키고 금리상승이 보험상품의 예정 및 공시이율에 신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타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보험계약 해약으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투자의 기대수익이 금리상승으로 높아질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이 확대될 수 있음

〈그림 1〉 국고채 금리와 생명보험 해약률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국고채 금리와 손해보험 해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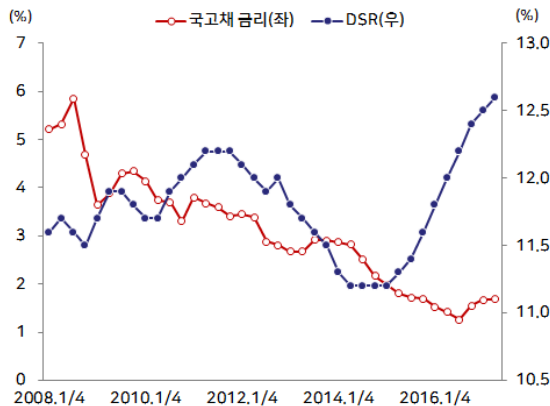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은 보험계약 해약을 확대시킬 수 있음

-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14년 11.2%였으나 가계소득 정체와 금리상승으로 2016년 2/4분기 12.0%, 2017년 2/4분기 12.6%로 상승함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7년 10월 평균 2.03%에서 2018년 1월 3일 2.13%로 상승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153.4%에서 2017년 3/4분기 155.5%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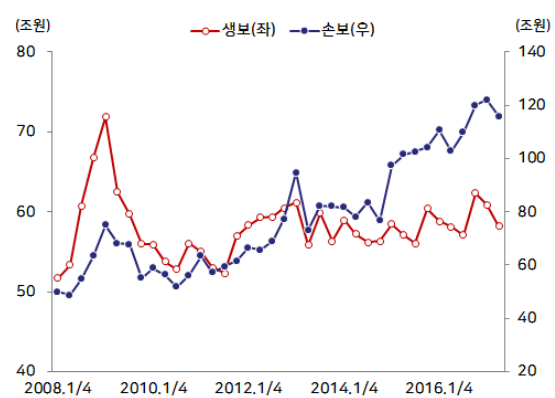
- 가계의 부채부담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 이후 DSR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14년 상반기 평균 손해보험의 해약금액은 80조 원에서 2017년 상반기 평균 119조 원으로 증가함²⁾
 -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상반기 평균 58조 원에서 2017년 상반기 59조 원으로 1조 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계약 해지 건수 기준으로는 2016년 659만 3,148건으로 2014년 575만 5,645건에 비해 14.6% 증가함³⁾
 - 손해보험의 해약은 장기손해 상해·질병,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함

〈그림 3〉 국고채 금리와 DSR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IS

〈그림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해약금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해약금액 증가율과 보험회사 자기자본이익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해약 증가는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국고채 금리와 해약금액 증가율은 같은 방향으로, 해약금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1/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한 상관계수 추정결과, 해약금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0.5153, 해약금액 증가율과 국고채 금리 간의 상관계수는 0.2494로 나타남

2) 우리나라에서 해약률은 해지와 효력 상실 금액을 보유계약 금액과 신계약 금액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해지와 효력 상실금액, 보유계약액과 신계약액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집계됨

3)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2017. 12. 27), “보험료 부담 줄이는 22가지 알뜰 Tip”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해약금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대방향(상관계수 추정치 - 0.1787)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신계약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해약금액 증가는 해지환급금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험영업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약금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임

〈표 1〉 해약금액 증가율과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 추정결과

구분	생명보험 해약금액 증가율		손해보험 해약금액 증가율	
	상관계수 추정치	유의수준(p값)	상관계수 추정치	유의수준(p값)
자기자본이익률	-0.5153	0.0002	-0.1787	0.3119
국고채 3년 금리	0.2494	0.0946	-0.1547	0.3824
DSR	0.2349	0.1161	0.0726	0.6831

- 금리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의 해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유계약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도입될 예정인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의 수익흐름을 전망할 때 해약률 가정이 반영되는데 실제 해약률이 가정된 해약률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해약금액 증가는 가계의 건강 및 소득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음⁴⁾ [kiri](#)

4)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참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전략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이를 확대시켜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채권투자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헤지 비용을 증가시켜 해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그러나 국내 투자 편입비중이 높은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함. 이에 국내 보험회사가 환헤지 비용을 관리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헤지 비용이 아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유로화 국제채,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 우량회사의 아리랑 본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신흥국 정부발행 달러표시 채권 등에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25일 정책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중 4회 이상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 정책금리는 1.25~1.50%에서 1.50~1.75%로 0.25%p 인상됨
 - 금융시장에서 예측하는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 4회 인상 확률은 2018년 1월 말 20.6%에서 3월 21일 현재 26.9%로 높아짐
-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1.5%를 상회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
 - 2018년 중 미국의 정책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될 경우 한·미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 보다 높은 상황에서 환위험을 제외하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음

-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 채권 투자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노출되는 환위험 관리에 외환스왑을 선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헤지 비용이 발생됨

-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장기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환위험 또는 금리 위험에 노출되고 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 외환스왑(Foreign Currency Swap) 또는 이종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 CRS) 등으로 환위험 또는 금리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외환스왑을 선호함¹⁾
- 환헤지 비용을 나타내는 외환스왑 포인트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외환스왑 포인트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책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4.5원으로 하락함
 - 마이너스 4.5원의 의미는 달러당 원화로 표시한 선도환가격이 현물환가격에 비해 4.5원 저렴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달러채권 매입에 따른 환위험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²⁾

<그림 1> 외환스왑 포인트 추이

(단위: 원)



출처: Bloomberg(2018. 3. 22)

- 1) 임준환·최장훈·마지혜(2017. 6. 26), 「보험회사의 환헤지 현황과 문제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 2) 외환스왑 포인트로부터 환헤지 비용을 구하는 절차는 먼저 연간 수익률로 전환하고 다음으로 연간 수익률에서 양국 간 금리차이를 차감함. 연 수익률은 현물환율 대비 스왑 포인트를 현물환율로 나눈 값에 기간 조정률(4=분기율의 연율화)을 곱한 값으로 표시됨. 예컨대, 현물환율이 1,000원이면 외환스왑 환산율은 $(4.5/1100) \times 4 = 200\text{bp}(2\%)$ 임. 다음으로 환헤지 비용은 연간 수익률에서 양국 간 3개월 금리차이를 차감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남(환헤지 비용=2%-(원화 3개월CD 금리-달러 3개월LIBOR))

■ 환헤지 비용이 금리차보다 더 클 경우 국내 투자수익률이 원화 환산 미국채권 투자수익률보다 높아질 수 있어 한·미 금리차 확대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에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예컨대 10년 만기 국내 채권금리가 2.7%이고 동일 만기 미국 채권금리가 3%, 환헤지 비용이 0.5%(=50 베이스 포인트(bp))인 경우 국내 투자수익률이 환헤지 후 원화로 환산된 미국채권 투자수익률보다 높음

- 국내 채권수익률=원화 환산 미국 채권수익률(=달러표시 미국 채권 수익률-환헤지(비용))

● 특히 보험회사의 환헤지 비용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해외 투자 시 장기투자인 경우가 많고 투자 기간에 비례하여 환헤지를 해야 하기 때문임

■ 향후 보험회사의 환헤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채권투자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미 금리 역전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달러유동성이 낮아 환헤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한은의 긴축 대응 기조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 속도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하면서 국고채뿐만 아니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장기 회사채 등에 관심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외화표시 회사채, 신흥국정부 발행 달러표시 채권, 이종통화 채권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선진 보험회사에 비해 국내투자편중현상(home-bias)이 심해 분산투자(상관관계)에 따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투자 비중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신용등급이 낮은 외화표시 회사채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지만 채무불이행위험이 수반되어 이를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흥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외환보유고가 높고 거시경제 기초여건(경상흑자기조, 안정적인 통화정책 등)이 양호한 중국,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권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환헤지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유로화표시 이중통화표시 채권 투자도 고려할 만한 대상임
 - 예컨대, 유로화 표시 채권 매입은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고 다시 달러를 유로화로 환전한 다음 유로화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음
 - 원화는 유로화 대비 환헤지 프리미엄이 존재하여 유로화금리가 낮더라도 국내채권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
- 국내에서 외국 우량회사가 발행한 아리랑 본드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리랑 본드는 외국 우량회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 또는 외화표시 채권임 [kiri](#)



국내 PEF 산업의 성장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이래 우리나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산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함. 보험회사는 운용자금을 출자함으로써 PEF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기금과 달리 국내 PEF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의 국내 PEF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국내 PEF 산업의 질적인 미성숙과 더불어 자본규제,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수적 자산운용 전략과 PEF에 대한 성과분석 역량 부족 등이 있음. 하지만 향후 국내 PEF 산업의 질적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국내 PEF 산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7년 말 기준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¹⁾ 산업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²⁾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고 투자자 규모가 49인 이하이며,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바이아웃(buy-out) 성격의 펀드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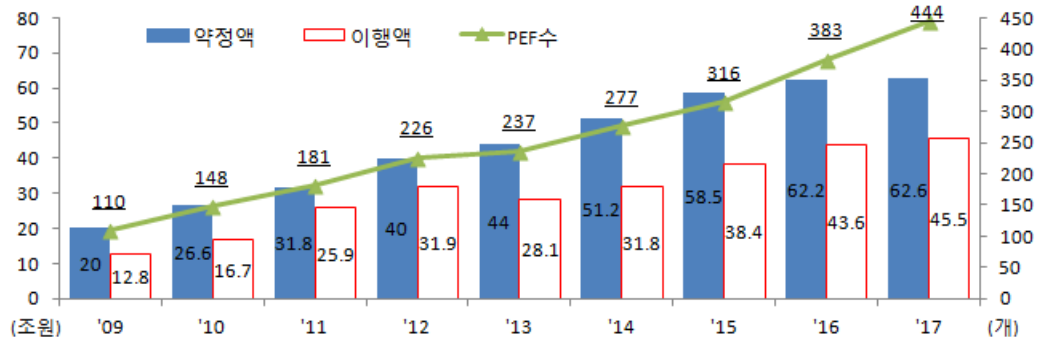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201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 안내” 참조

- PEF 투자단계는 ① 자금모집(fund raising), ②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 ③ 기업가치 제고(value-addition), ④ 매각(exit)으로 구분됨
- 2017년 말 기준 약정액과 이행액³⁾은 각각 62.6조 원, 45.5조 원으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대비 각각 3.1배(2009년 20.0조 원), 3.6배(2009년 12.8조 원) 증가함
- 주요 특징으로 2015년 이후 실행된 일련의 PEF 제도 개편⁴⁾의 결과로 신규 시장참여자 진입 및 PEF 설립이 증가하고, 신설 PEF 중 프로젝트 PEF 비중이 증가함
- 신규 PEF 수는 사상 최대인 135개로 전년(109개) 대비 26개 증가하였으며, 투자자 모집에 부담이 없는 소규모 PEF 위주로 신설됨
- 프로젝트 PEF는 블라인드 PEF와 달리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설립하는 PEF로, 2017년에 신설된 PEF 중 프로젝트 PEF 비중은 75.6%로 전년(70.6%) 대비 5%p 상승함

〈그림 1〉 국내 PEF 산업 주요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2018), “2017년 중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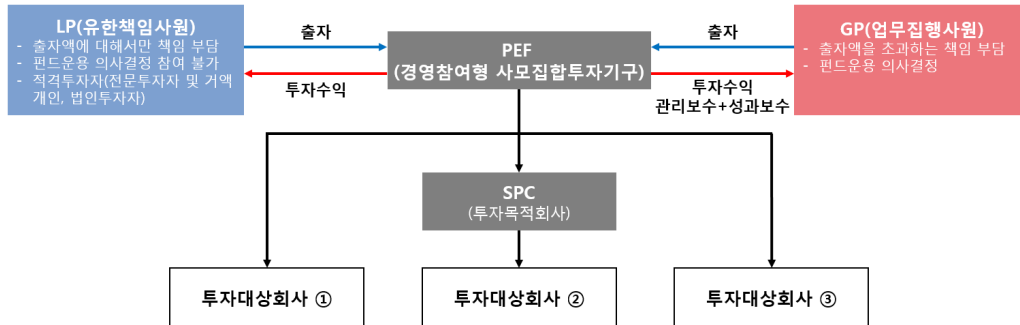
-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자산부채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ALM)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PEF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연기금과 보험회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음
- 투자자는 업무집행사원(펀드운용 의사결정 참여, 이하 ‘GP’) 또는 유한책임회사(펀드운용 의사결정 참여불가, 이하 ‘LP’) 자격으로 운용자금을 출자함으로써 PEF에 참여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3) 약정액은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고, 이행액은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의미함

4)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PEF의 설립·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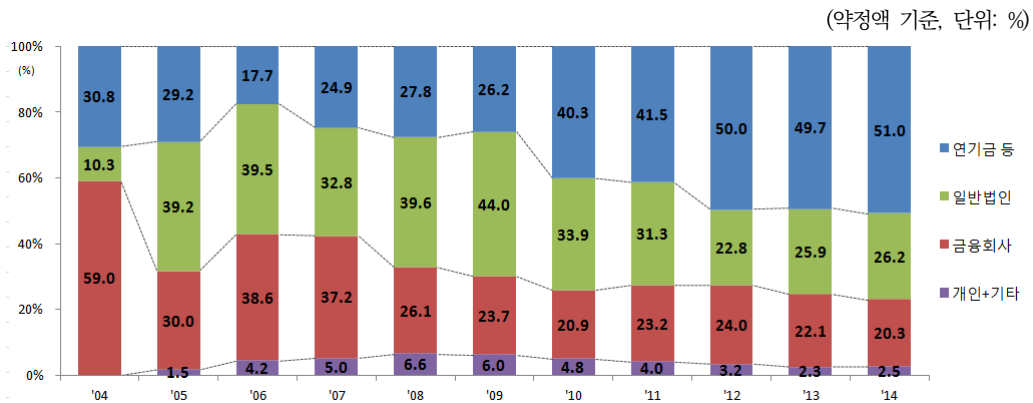
- 2014년 말 기준 LP별 출자 비중을 살펴보면 연기금 등은 51.0%를 차지하지만, 금융회사는 20.3%를 차지함(〈그림 3〉 참조)

〈그림 2〉 PEF의 기본 운용구조



자료: 금융감독원(201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 안내”

〈그림 3〉 PEF 투자자 동향



자료: 금융감독원(2015),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 10년간의 변화 및 평가”

- 국내 PEF 투자 중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산규모·운용목표 및 원칙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유인이 높기 때문임

- 연기금은 보험회사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PEF와 같은 대체투자를 활용한 투자 다변화에 보다 유리함
- 운용목표 설정에 있어 투자수익 자체보다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험회사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실행함

- 운용원칙으로 수익성·안정성 이외에 공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 PEF 시장 조성 초기 GP-LP 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출자가 이루어짐
- 보험회사가 국내 PEF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국내 PEF 산업의 미성숙과 더불어 자본규제, 보수적 자산운용, PEF에 대한 성과 분석 역량 부족 등이 있음
 - 과거 10년 동안 국내 PEF 산업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한 바이아웃 이외에 단순 재무적 투자가 주요 투자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어 투자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자본규제상 주식형 자산보다 채권형 자산이 유리하고, 높은 위험회피성향으로 과거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낮으며, GP 선별 능력이 부족함
- 향후 국내 PEF 산업의 질적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국내 PEF 산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편입 자산 다양화를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효과 추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국내 PEF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높은 GP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PEF 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PEF의 투자 대상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PEF(기업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창업·벤처전문 PEF)를 신설함
 - 현재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의 PEF GP 등록 간소화를 통한 경쟁촉진, PEF의 투자가능자산 범위 확대(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추진 중임 [kiri](#)



CHAPTER

0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영국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강관리 사례: 행동경제학적 접근 | 변혜원 |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변화의 영향 | 정원석 |
| 3. 파생장해 장해를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해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 황현아 |
| 4.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 이기형 |
| 5.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과 시사점 | 황현아 |
| 6.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 최창희 한성원 |
| 7.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 임 준 |
| 8.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 양승현 |
| 9.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이기형 |
| 10. 블록체인의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 | 정원석 |
| 11.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 이기형 |
| 12.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 김규동 |
| 13.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 정성희 이기형 |
| 14. 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 황인창 채원영 |
| 15.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 양승현 |
| 16.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 전용식 |
| 17. IFRS 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 김세중 |
| 18.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변혜원 |
| 19.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 안철경 이규성 |
| 20.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 최창희 |
| 21.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 양승현 |
| 22. 주요국의 재해지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정성희 문혜정 |
|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 황현아 |
| 24.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 최창희 |
| 25.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 안철경 정인영 |
| 26.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 김석영 이소양 |
| 27.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 정성희 문혜정 |
| 28.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 정원석 |
| 29.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효과 | 김규동 |
| 30.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 황인창 |
| 31.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험 | 임 준 |
| 32.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 | 임 준 |



영국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강관리 사례: 행동경제학적 접근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최근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와 건강관리 분야 정책에서의 활용 사례가 두드러짐. 단순화와 개인화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 사례나 단순화 이외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 설계로 소비자의 상품이해력, 상품비교가능성을 높인 사례, 회원혜택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연결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행동 변화를 독려한 사례 등이 있음. 이들이 사용한 무작위실험과 정책수단 도입 전 사전 실험에 기초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국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¹⁾

●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거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퇴직연금 상품 안내 및 설명 관행을 개선하여 연금가입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힘

■ 본고는 정책수립에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한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및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²⁾

● 공공정책의 유효성은 사람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사람들의 실제 행태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으므로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정책수립에 유용할 수 있음³⁾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9),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2) 최근에는 경제학, 심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행동경제학 대신 행동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3) EC(2016), “Behavioural Insights Applied to Policy”, *European Report 2016*

- 주요국에서는 정부에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정책수립을 돕는 전담조직을 두거나, 외부 관련 단체와 협력하기도 함
 - 행동경제학 전담조직의 대표적인 예인 BIT(Behavioural Insights Team)는 2010년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되었으나, 2014년 상호합작투자 형태로 정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호주 정부, 싱가포르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음

■ 정보접근성 확대 사례로 영국 BIT는 단순화와 개인화를 통해 예비 퇴직자가 연금정보에 접근하도록 독려하거나 연체에 직면한 담보대출 채무자가 은행과 문제를 상의하도록 유도함⁴⁾

- 소비자를 위한 정보나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제공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임
- 리버풀 지역에서 실시한 실험은 은퇴상품 선택에 필요한 개인화된 정보와 무료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방문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담은 단순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연금 정보 접근을 유도함
 - BIT가 실험에서 제공한 Pension Passport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50~100쪽짜리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A4용지 한쪽으로 만든 정보자료임
 - 실험 결과, Pension Passport를 받는 집단이 기존 팩을 받은 집단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정보 사이트인 Pension Wise를 10배 이상 더 많이 방문했음
- 한편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담보대출 연체나 압류 등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채권자들과 관련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우편물과 알림문자를 사용하여 은행에 연락하는 비율을 높임⁵⁾
 - 단순화된 편지와 함께 손 글씨로 쓴 포스트잇 노트를 붙여 색깔 있는 봉투에 담아 보냈으며, 편지를 열어 읽을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세지도 함께 보냄

■ 상품이해력 제고 측면에서 영국 BIT와 MAS⁶⁾가 함께 설립한 금융역량실험실(Financial Capability Lab)⁷⁾은 실험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⁸⁾

4)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17), *Update Report 2016-2017*

5) BIT는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ies)와 북아일랜드의 담보대출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연체자들이 그들의 은행과 사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함

6) MAS(Money Advice Service)는 영국정부가 구축한 웹사이트로서 소비자의 재무개선을 돕기 위한 조언, 재무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도구와 계산기를 제공하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비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

7) MAS는 What Works Fund를 마련했으며, 재무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financially squeezed)을 돕기 위한 행동과학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고안, 검증하기 위해 금융역량실험실을 설립함

8) The Money Advice Service,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and Ipsos MORI(2018), "A Behavioural

- 소비자가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소비자 실험을 실시함
 - 실험 결과, 행동경제학에 기초하여 수정한 웹사이트를 사용한 집단이 기존 웹사이트를 사용한 집단에 비해 해당 신용카드와 관련된 수수료, 요금, 이자 등에 대한 질문에 옳게 답한 비율이 높았음
 -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웹사이트는 단순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간단하고 눈에 띄도록 제공하였으며,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관련 비용 정보가 반응하도록 설계됨
 - 이들은 신용카드 신청 이외의 단계에서의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수단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와의 협력도 시도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역량실험실은 상품이해력과 상품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비교사이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비교사이트를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함⁹⁾
- 신용카드의 무이자 기간은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매력적인 요소인데 반해서, 다른 특성은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받는다는 사실과 소비자들이 자신의 미래 재무행동에 대해 예측할 때 과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함
 - 이들은 동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수료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분율(%)보다는 대출의 총비용을 사용하고, 부채상환 기간을 개월 수만이 아니라 년과 개월 수로 표현하는 등 가격비교사이트를 행동경제학에 기초하여 개선함¹⁰⁾
 - 실험 결과, 행동경제학에 기초해 수정된 가격비교사이트를 사용한 집단이 기존 사이트를 사용한 집단에 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소비자가 최소결제를 하는 시나리오와 상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하에서 4개의 신용카드 중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함
- 한편 건강관리 분야의 사례로, 캐나다 공중보건기관(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캐나다인들이 회원혜택 프로그램(Loyalty Program)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건강에 대해 배우거나 건강한 행동에 하는 것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함¹¹⁾

Approach to Managing Money: Ideas and Results from the Financial Capability Lab"

9) The Money Advice Service,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and Ipsos MORI(2018)

10) 예를 들어, 51개월이 아니라 4년 3개월로 표현함

- Carrot Rewards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거나 친구나 가족 등에게 추천할 때, 심장건강 퀴즈를 풀거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울 때, 지역 YMCA 등을 방문하거나 신체활동을 할 때 포인트가 적립해 줌
- 정부가 캐나다 YMCA, 캐나다 심장·뇌졸중 재단, 캐나다 당뇨병협회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 동 프로그램은 2016년 3월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에서 시작되어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다른 주로도 확대할 예정임
- 캐나다 공중보건기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YMCA 이용에 대해 비행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을 유도한 바 있음
 -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YMCA 회원이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 비해 17% 더 자주 YMCA 체육관을 이용했다는 결과를 보임

■ 위에서 살펴 본 사례들은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국내 보험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향후 금융감독혁신 방안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는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어 정책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의로 집단을 나누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을 적용한 집단과 아무런 처지도 하지 않은 집단 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무작위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은 정책수단효과 분석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임
- 아울러 정책수단 설계 시 고려하지 못했던 현상이나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가늠하기 위해서 정책수단 도입 이전에 사용자들의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사전 실험은 정책도입 여부를 결정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복수의 정책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음
- 정보접근성 제고나 상품이해력 개선 관련 사례는 정보의 단순화, 개인화,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험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를 이용하여 주요 시나리오하에서 선택에 따라 반응하는 보험료, 보험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OECD(2017), "Behaviou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이 도입되는 등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kir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변화의 영향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만기 이전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서민형 ISA의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됨. 중도인출 허용은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ISA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서민형 ISA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확대는 중산층·서민 계층에 추가적인 ISA 가입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단기·중기 비과세 금융상품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보험계약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보다는 ISA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납입금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음

- 연소득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 이외 종합소득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농어민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단, 소득조건이 없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 ISA의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음
 - 기존에는 5년(서민형의 경우 3년) 이내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납입원금 이하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이러한 제도 변화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ISA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산층·서민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중도인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¹⁾

1)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쟁점"

-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ISA 납입유인이 확대됨
 -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80%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추가적인 ISA 납입유인을 얻게 됨²⁾
- 또한 중도인출 허용으로 일정기간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ISA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를 유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ISA 제도변화 개요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이후	비고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자	동일
연간 납입액 한도		2,000만 원	2,000만 원	동일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200만 원	동일
	서민형	25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 증가
	농어민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증가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	일반형	5년	5년	동일
	서민형	3년	3년	동일
	농어민	5년	3년	2년 단축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원금인출 가능

■ 이러한 ISA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저축성보험에 비해 ISA의 장기 저축수단으로서의 매력도를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저축성보험의 연간 납입액 한도가 1,800만 원(월 150만 원)인 데 비해 ISA의 한도는 2,000만 원임
 -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 계좌유지 기간이 3~5년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함³⁾
 -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음

2) 국세통계연보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

3) 유니버셜보험 등 일부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함

〈표 2〉 ISA와 저축성 보험 비교

구분		ISA	저축성 보험	비고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자	제한 없음	ISA는 소득조건이 있음
연간 납입액 한도		2,000만 원	1,800만 원 (월 150만 원)	ISA가 연 200만 원 높음 (단, ISA는 5년만 납입)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없음	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음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9.9% 분리과세
	서민형	400만 원		
	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 기간	일반형	5년	10년 이상	ISA가 5~7년 짧음
	서민형	3년		
	농어민	3년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원금인출 가능

■ ISA의 세제혜택 확대는 중산층·서민의 금융상품 투자에 어느 정도는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금융상품으로서 근본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ISA의 수익률이 제고되었음
- 일임형 ISA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8.1%임⁴⁾
- 따라서 ISA의 수익률 제고와 비과세 한도 확대 그리고 중도인출 허용 등의 제도 변화는 금융상품으로서 ISA의 매력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최대 납입금액이 1년에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장기저축 및 자산가의 자산운용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ISA와 유사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요 장점으로 삼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위축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SA의 세제혜택은 확대된 반면 저축성보험은 2017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일부 중도인출도 불가능함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장점(금융소득 비과세 한도가 없고 납입기간 제한이 없음)을 부각시켜 장기저축 및 연금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kiri](#)

4) ISA 다모아에 2017.11.30 공시된 일임형 ISA 상품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값임



파생장해 장애율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애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장애분류표상 파생장해의 장애율 산정 방법은 관련 규정 문언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동안 끊임없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최근 금감원에서 마련한 개정 장애분류표는 파생장해의 장애율 산정 방법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다만 여전히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일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표준약관상 장애분류표¹⁾는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되,²⁾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통상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및 동일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음³⁾**

-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복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지급률 합산 대상인지, 가장 높은 지급률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음

- 1) 현재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 사용) 표준약관은 동일한 장애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음(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중 부표3 및 부표 9 참조)
- 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표준약관] 제4조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부표 3 및 부표 9 장애분류표] 총칙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따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은 신경계 장애의 파생장애로 운동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 장애의 지급률과 파생장애의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복수의 파생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급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2011년 대법원 판결⁴⁾은 파생장애 지급률 산정과 관련하여, 신경계 장애에 다른 신체부위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체부위 장애와 신경계 장애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각각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애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례 사안에서는 좌하지 족관절 운동장애(a),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애(b)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장애(A)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a와 b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적용하였으나, 대법원은 a, b 및 A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모두 산정, 비교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본래 위 판결의 취지는 신경장애에 의한 후유장애 지급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었음에도, 복수의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은 점이 부각되어 이후 복수의 파생장애 발생 시 지급률 합산 여부에 관한 분쟁을 촉발하는 단초가 되었음
- 2015년 대법원 판결⁵⁾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운동기능 저하(A) 및 이로 인한 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및 손가락에 운동장애가 발생하고(a1, a2, a3, a4), 동시에 청력 장애(b)가 발생한 사안에서,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에 해당하는 운동장애들(a1~a4), 즉 복수의 파생장애들의 경우 그 지급률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 판례 사안에서 대법원은 척수 손상(신경계 장애)으로 인한 후유장애(A)의 지급률(35%)과 척수 손상으로부터 파생된 운동 장애 지급률의 합산(a1=10%, a2=5%, a3=10%, a4=10%, 총 35%) 중 높은 지급률인 35%에 청력장애의 후유장애 지급률(b=25%)을 더하여 6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2016년 대법원 판결⁶⁾ 또한 계단에서 미끄러져 신경계 장애인 경추척수증(A), 그 파생장애인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애(a1, a2, a3), 추간판탈출증을 입은 사례에서,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애의 합산 지급률(a1+a2+a3)과 경추척수증의 지급률(A) 중 더 높은 지급률을 구한 다음, 그 지급률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6301 판결

5)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 이번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위와 같은 해석상 분쟁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파생장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개정안의 핵심은 하나의 장해(A)에서 복수의 파생장해(a1~aN)가 발생한 경우 그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a1+a2+...+aN)과 최초 장해 지급률(A)을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표 1〉 파생장해 장해를 산정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3. 기타	3.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위 개정안은 당초 불분명하였던 복수의 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신경계 장애로 인한 파생장해 발생 시 그 지급률 산정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위 개정안은 그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해석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항 및 개정안은 (i) 하나의 장해가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 (ii)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⁷⁾

7) 집작컨대, 위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절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이하 “장애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 즉 (i)의 경우 및 (ii)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는 하나이므로 둘 중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임
- 그러나 현행 규정 및 개정안 규정의 문언은 본래의 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kiri](#)

〈표 2〉 파생장애 장애율 산정 관련 수정제안

개정안	수정 제안
3. 장애의 판정	3. 장애의 판정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애가 장애분류표상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에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2020년 전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교통국제협약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였음, 이에 독일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개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현재와 같이 보유자가 책임을 지고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이를 위해 독일은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정부기관 요청 시 블랙박스 기록을 제공하고 제3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음. 독일과 법제가 유사한 우리나라도 독일 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독일, 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차’) 관련 도로교통 국제협약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국의 도로교통법규를 개정하여 자율차의 사용과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¹⁾은 자율차와 관련한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2016년 3월부터 발효되었음

- 자율차와 관련하여 “차량의 운전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시스템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때는 제8조 5항²⁾ 및 제13조 제1항³⁾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또한 차량의 운전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시스템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통제가 가능한때(override, switch off)에도 제8조 5항 및 제13조 제1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임

1) 이기형(2017),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10, pp. 42~45 참조

2) 모든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종해야 한다(마차인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3) 모든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적절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에 필요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차량을 제어하여야 한다

■ 독일은 자율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2017년 5월 의회 가결)을 2017년 6월에 공표하고 시행함⁴⁾

- 이번에 마련된 법은 SAE(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⁵⁾ 레벨 3, 4단계의 자율차가 공용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상세 법 조항은 〈부록 표 1〉 참조)
 - 이번에 마련된 법 조항과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차(SAE 레벨 5)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재평가하여 보완할 예정임
- 개정된 비엔나 협약과 같이 인정된 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함
 -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조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전해야 함
- 자율차의 사고 피해자는 자율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함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한도액은 기존 보상한도액을 2배로 인상하여 적용함
-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든 자율차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고 시 책임주체를 규명하는 데 증거물로 활용함
 - 블랙박스의 데이터의 보존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며, 보험회사 등 제3자가 요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표 1〉 독일의 일반자동차와 자율차의 의무보험 계약담보 내용 비교

구분		일반자동차 의무보험	자율차 의무보험
적용 범위		Road Traffic Act Part 제12조	도로교통법 신설
적용대상 차종		모든 자동차	고도자율주행자동차, 완전자율주행기능차
인적 손해	제3자	1사고 당 500만 유로	1사고 당 1,000만 유로
	운전자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물적 손해	제3자	1사고 당 100만 유로	1사고 당 200만 유로
	보유자 자동차	보상받지 못함	보상받지 못함
과실상계		적용	적용
블랙박스 장착		-	의무화(6개월 보존)

4) 金岡京子(2017), 自動運転と民事責任:ドイツの状況(<http://www.mlit.go.jp/common/001174139.pdf>, 2018. 2. 26)

5) 분류기준은 이기형(2017. 11. 20),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KIRI 리포트』, 제432호, 보험연구원 참조

- 주: 1) 고도자율주행자동차(highly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운전자는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감시할 필요는 없으나 시스템의 요구 시에 운전이 개입하는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자율주행기능차(fully-automated driving function): 시스템 사용 시에는 운전자는 감시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이 완전하게 운전하는 자율차

자료: 金岡京子(2017), 自動運転と民事責任:ドイツの状況

■ 영국은 자율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⁶⁾에 제안되었으나 폐기되었고 두 번째 법안⁸⁾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임

- 영국 운송부는 2017년 2월에 단일보험자모델을 채택한 「자동차 기술 및 항공에 관한 법률(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 이하 ‘VTAB’)」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총선결과에 따라 폐기되었음
 - 2017년 10월에 「자동운전과 전기자동차에 관한 법률(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이하 ‘AEVB’)」을 하원에 제출하여 7번의 위원회 논의와 2번의 리딩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AEVB의 주요 내용은 VTAB와 비교 시 적용대상 차량형식을 정부가 인정한 것(법안 제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부터 해석(제7조)까지 동일한 구성임⁹⁾
 - 현재의 의무보험과 달리 자율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한 피해와 운전자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보상하고 사고원인이 된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자율차 자체의 손해와 운송 중인 화물이나 귀중품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위법으로 개조하거나 안전성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험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 면책임

6) <https://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6-2017/0143/17143.pdf>(2017. 3. 2)

7) 이기형(2017. 3. 20),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15호, 보험연구원

8)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lbill/2017-2019/0082/18082.pdf>(2018. 2. 26)

9) 자율차 관련 법조문은 Part 1(자율주행자동차: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등)에 7개 조문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2〉 영국의 일반자동차와 자율차의 의무보험 계약담보 내용 비교

구분		일반자동차 의무보험	자율차 의무보험
적용 법규		Road Traffic Act Part VI Third Party Liability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적용대상 차종		모든 자동차	운송부가 공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형식에 한정(SAE L3 단계 이하)
인적 손해	제3자	무한배상	무한배상(무보험일 경우 소유자 책임)
	운전자	보상하지 않음	
물적 손해	제3자	1사고 당 100만 유로 한도 배상	1사고 당 100만 유로한도 배상
	보유자 자동차, 운송화물	보상받지 못함	보상받지 못함
과실상계		적용	적용
블랙박스 장착		-	-

자료: <https://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6-2017/0143/17143.pdf>

● 보험업계는 AEVB에 대해 찬성을 하지만 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10개의 표준(minimum standard)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① 자율화 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② 자율차는 교통법과 고속도로법규를 준수 ③ 자율차의 기능을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한정 ④ 운전통제와 절차(제시-확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 필요, ⑤ 자율차는 예측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함 ⑥ 자율차가 적절하게 운행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고 정확한 통지가 되어야 함 ⑦ 통제가 적절히 되지 않는 경우 안전한 정지가 가능해야 함 ⑧ 비상시 사고를 예방 또는 회피할 수 있어야 함 ⑨ 시스템 오작동시 백업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 ⑩ 사고 발생 시의 운행정보에 대한 기록과 보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이 가운데 보험업계는 법률에서 보험회사의 면책과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위의 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독일과 영국의 자율차 사고와 관련한 책임법제를 비교하여 볼 때 운전자가 불필요한 완전자율차(SAE 레벨 5)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손해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되 시스템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은 현행의 손해배상책임법제를 유지하여 보유자의 보험에서 피해자를 보상하지만, 영국은 피해자인 제3자를 포함하여 운전자도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단일보험자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장착과 데이터의 장기간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고 시에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3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영국은 이런 법제가 없으므로 보험업계가 10개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법규를 적용하는 자율차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고 보유자가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차의 사고책임법제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블랙박스 장착과 데이터 보존, 제3자의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하여 사고책임의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kiri**

〈부록 표 1〉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StVG) 도입사항

현행 조문	자율주행자동차 추가 조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추가내용
제1조 운행허가	1a(고도자율주행기능 또는 완전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차량)	- 각 자동차의 기능이 규정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허가함 - 자율주행기능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장치(차량조종, 교통법규준수, 운전자의 수동운전가능 및 종료, 운전자의 수동운전 필요성은 적시에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표시 필요) - 운전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운전조작을 하는 것으로 인정 - 운행허가가 필요, 국제법과 동 법의 차량분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용
	1b(고도자율주행기능 또는 완전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 의무)	운전자에게 시스템 요구 시 즉시 자동개입의무 부과
	1c(평가)	- 2019년 종료 후 1a, 1b 적용을 평가하고 결과를 의회 제출
제12조 배상책임한도액	보상한도액 추가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한도액을 2배로 제한
제32조 차량의 등록목적	8호 추가	- 본 법 또는 본법에 근거로 하는 법규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능을 갖춘 차량의 경우는 데이터처리를 하기 위한 장치
신설	VIa(차량의 데이터 처리) 추가	
	제63 a조(자율차 기능을 갖춘 차량의 데이터 처리)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에 대한 기록을 국제기준에 따른 기술기준에 의하여 기록해야 함 - 기록데이터는 도로교통정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함 정부기관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을 인정 - 제3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청구의 주장, 면책, 방어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 - 기록된 데이터는 늦어도 3년 후에 소각함

자료: 金岡京子(2017), 自動運転と民事責任 ドイツの状況, pp. 5~6(<http://www.mlit.go.jp/common/001174139.pdf>, 2018. 2. 26)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과 시사점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18년 3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규정(testing regulation) 개정안 및 보급 규정(deployment regulation) 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하였음. 최종안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제로서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등 그간 논의되어 온 중요 사항을 반영하였음.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바,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Title 13, Article 3.7 & Article 3.8)이 최종 승인 및 공포되었음

-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이하 ‘DMV’)은 시험운행 이후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차’) 보급(deployment)¹⁾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보급규정(deployment regulation)²⁾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함³⁾
- 이후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 및 초안 수정 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최종 규정안이 마련되었고, 확정된 규정은 2018년 3월 2일 관보에 공고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1) ‘deployment’는 (i) 자율차 제작사의 임직원이나 기타 계약관계나 위탁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일반인(members of public)이 일반 도로(public roads)에서 자율차를 운행하는 경우 및 (ii) 판매, 임대, 유료운송수단 제공 등 시험운행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자율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의미함(Article 3.8 §228.02(c))

2) deployment regulation은 보급규정 또는 공중운행규정이라고도 번역됨

3) 종전에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규정(California Vehicle Code §38750) 및 자율차 시험운행 규정(Autonomous Vehicle Testing Regulation,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Title 13, Article 3.7)을 마련하여 자율차 시험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 확정된 규정⁴⁾에는 자율차 시험운행 관련 종전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과 자율차 보급에 관한 신설 규정이 포함됨

〈표 1〉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 개정작업 진행경과

일자	진행사항
2015. 12. 16.	자율차 보급 규정 초안 공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public workshop)
2016. 09. 30.	수정 초안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7. 03. 10.	자율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입법예고 및 공청회(public hearing)
2017. 10. 11.	자율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2017. 11. 30.	자율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2차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2018. 01. 11.	최종 규정안 법제처(OAL: 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
2018. 03. 02.	법제처 승인을 얻은 최종 규정안 공고

출처: 캘리포니아주 DMV 홈페이지⁵⁾

■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 중 이번에 개정된 시험운행 관련 규정(Article 3.7-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은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자율차 시험운행을 허용하였음

- 자율차 제작사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자율차 시험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별도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⁶⁾
 - 무인시험운행 차량의 운행 개시일, 운행기간, 운행지역(실제 주행하는 일반 도로 내역), 차량 대수 등을 시험운행지역의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유사시 원격조정 및 통제가 가능한 쌍방향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는 점, 무인운행기술 및 SAE의 레벨 4 또는 레벨 5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설계도메인(Operational Design Domain, 이하 ‘ODD’)⁷⁾을 DMV에 제공하여야 함
 - 유사시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등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협조방안(law enforcement interaction plan)을 제출하여야 함

4) 이하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이라 함

5)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autonomous/auto>

6)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 §227.36

7) ODD(Operational Design Domain)는 자율주행기능 및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특정 운행 조건(지역적 조건, 도로형태, 속도범위, 날씨·주간/야간 등 기타 환경 조건)을 의미함(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 §227.02(j))

■ 한편, 이번에 신설된 보급 규정(Article 3.8-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차를 보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자율차 보급을 위해서는 시험운행과 별도의 보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 제출 시 소비자교육, 안전기준 충족 여부, 경찰협조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비자 및 실제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계획(교육 계획은 ODD 및 자율주행기능의 한계, 작동법·자율주행모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제작사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마련하여야 함
 - 자율차가 SAE의 레벨 4 및 레벨 5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레벨 3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관여가 없는 상태의 경우) 유사시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경찰협조 방안,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하고, ODD 조건하에서의 시험주행 결과 요약을 제출하여야 함
- 한편, 보급 규정은 자율차 보급 시 자율주행기술정보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이하 'ATDR'⁹⁾)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당초 마련되었던 규정 초안에서는 ATDR로 사고 전 30초부터 사고 후 5초(또는 완전 정차 시)까지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음¹⁰⁾
 -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사고 전 30초부터 사고시점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기록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에 대한 기록제출의무는 삭제하였음

■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은 2015년 12월 최초 초안이 마련된 이후 2년여에 걸친 공개적 토론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우리나라도 자율차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자율차의 도입에 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잠재적)구매자, (잠재적)피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임

8)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9) ATDR은 현행법상 요구되는 것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로서,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센서들의 상태 및 작동에 관한 기술적 정보(technical information)를 기록하기 위해 자율차에 설치된 장치를 의미함

10) 황현아(2017. 1. 2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KIRI 리포트』, pp. 23~24

- 자율차는 기존의 법규범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을 야기할 것임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자율차 관련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자율차 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사고조사, 사고책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가 철회·수정되기도 하였음
- 앞서 살펴본 ATDR의 정보수집 범위 및 정보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자율차 제작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 도입이 추진되었다가 철회되는 등¹¹⁾ 자율차를 둘러싼 각종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율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규정 도입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자율차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kiri**

11) <https://www.apnews.com/ce707c88718446c5b9b93b3180c70e6e/California-regulators-nix-rules-limiting-car-maker-liability>, <https://www.engadget.com/2017/12/02/california-axes-self-driving-car-rule-limiting-liability>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미국의 경우 유통계약 시 물품 공급자가 충분한 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됨. 이러한 관행은 유통업자들이 유통계약 시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정부당국은 제조물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유통계약¹⁾ 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물품 공급자가 충분한 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²⁾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공시하는 유통계약서³⁾에는 물품 공급자의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⁴⁾

- 예를 들어 JBS와 Beef Products 간의 물품공급계약서는 물품 구매자가 사고 당 500만 달러, 최대 1,0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⁵⁾
- ADT, Tyco, Sensormatic Electronics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공급자는 500만 달러 이상의 보상한도를 가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⁶⁾

1) 「제조물책임법」상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편의상 유통업자라 함. 유통업자에 도매유통업자, 판매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함

2) Oliver Wyman(2018), 「국내 일반보험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보험시장 조사」의 해외 물품공급계약서 예시 중 일부 활용

3) 여기서 말하는 유통계약이라 함은 통상 물품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 supply contract)임

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ec.gov/>) 참조

5) RAW MATERIAL SUPPLY AGREEMENT between JBS USA, Inc. and Beef Products 계약서 참조

6) MASTER SUPPLY & PURCHASING AGREEMENT between ADT LLC, Tyco Safety products Canada Ltd. and Sensormatic Electronics, 12. INDEMNITY AND INSURANCE 참조

- 위 두 사례를 포함한 대부분 공시 유통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어 계약 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으로 보임

- 유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제조물의 생산·유통에 관여한 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⁷⁾
- 유통업자는 자신이 제조물의 결함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제조물 손해배상 소송으로 손해를 본 유통업자는 제조물 결함에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구상(求償)할 수 있음⁸⁾
-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구상을 하지 못해 유통업자가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다음의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동기유인이 미국에 비해 적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유통업자가 제조물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제조물사고 발생 시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⁹⁾
 - 유통업자가 제조물 결함 발생에 기여한 경우
 - * 예를 들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일부 유통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음¹⁰⁾
-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통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 제조물 결함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유통업자는 제조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7) Hughes Hubbard & Reed LLP(2018), "Products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Issues for Dutch Companies", p. 5; ICLG(2017), "Product Liability 2017" 참조

8) Hughes Hubbard & Reed LLP(2018); Gregory Boop(2017),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ticle, The Balance 참조

9)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참조

10) 매일경제(2017. 8. 9),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 피해 보상 어떻게 하고 있나"

- 유통업자가 제조물 결함 발생에 기여한 경우 제조업자가 아닌 자신이 PL보험으로 피해자를 보상하게 됨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¹¹⁾

■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 동기유인이 적어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고(계약 시 확인)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적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계약 시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¹²⁾

- 따라서 낮은 PL보험 가입 동기를 가진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시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2016년 법원이 가슴가살균제 제조업자인 세퓨에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음¹³⁾

■ 정부당국은 제조물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¹⁴⁾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물품공급계약 관련 18개 유통 부분 표준계약서에는 제조업자의 제조물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조항만 있고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없음¹⁵⁾

- 표준계약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제정·개정되는 것으로서 관련 부분의 표준계약서로 참조·활용됨¹⁶⁾

11)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참조.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2)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참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2014가합563148 참조

14) 이기형·이규성(20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p. 105도 유통 표준계약서상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했음

1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페이지 참조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참조

-
-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해 계약에 사용할 수 있음
 - 유통 부분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표준계약서상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 신설 시 PL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PL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표준계약서는 계약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PL보험 가입 의무화에 비해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적음 [kiri](#)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임준 연구위원

요약

자연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 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 Meyer and Kunreuther(2017)는 자연재해 대비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이 근시안적 사고나 낙관주의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에 있다고 보았음.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체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17년 11월의 포항지진, 2016년 9월의 경주지진과 10월의 태풍 차바 등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9건 발생했고, 평균 피해액은 약 6,308억 원에 이르렀음¹⁾(〈표 1〉 참조)

■ 지진, 태풍 등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개인과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 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마련에 부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²⁾

●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혹자는 타조증후군³⁾ 빗대어 묘사하기도 함

1) e-나라지표

2) 아시아경제(2017. 11. 22), “법석 떨다 유아무야...‘도돌이표’ 재난대응”

3) 타조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머리를 땅에 파묻고 위협을 외면한 채 ‘나는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빗댄 용어인데, 위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행동을 일컬을 때 사용함

- 본고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보이는 행태를 행동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표 1〉 자연재해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단위: 건, 명, 억 원)

구분	발생 건수	피해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7	14	17	2,806
2008	12	11	654
2009	18	13	3,074
2010	22	14	4,230
2011	13	78	7,376
2012	22	16	10,047
2013	28	4	1,614
2014	23	2	1,696
2015	18	0	313
2016	18	7	2,884
평균	19	16	6,308

주: 재산피해는 2016년도 환산가격 기준
자료: e-나라지표

- Meyer and Kunreuther(2017)는⁴⁾ 자연재해 대비 소홀의 근본적 원인을 근시안적 사고, 망각, 낙관주의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es)에서 찾았음
- 장래의 혜택보다는 초기투입비용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사고와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는 낙관주의 편향은 자연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과소투자를 가져옴
 - 또한 과거 자연재해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 편향은 보험의 유용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함
-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방지시설 투자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4) Meyer, R. and H. Kunreuther(2017), *The Ostrich Paradox: Why We Underprepare for Disasters*, Wharton Digital Press

-
- 코네티컷 주의 Shore Up CT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홍수대비를 위해 시설물을 보강하는 경우 2.75%의 이자율로 1만~30만 달러의 금액을 15년 장기로 대출 해주었음
 - 한편, 망각 편향으로 인해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기계약이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음
 - Meyer and Kunreuther(2017)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체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kiri](#)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지난 4월 17일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간에 완성되어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금융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용이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개정일 이후 신청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분쟁조정이 취하 또는 각하 이외의 사유로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나아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규정이 적용됨.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동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금융분쟁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됨

- 2016년 9월에 있었던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판결을 배경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법률안이 발의¹⁾됨
 - 2016년 5월 대법원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²⁾한 후, 같은 해 9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³⁾

1) 보험금 지급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833호)하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888호 외 다수), 설명의무 미 이행 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5111호)하는 법률안 등임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3)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보험소비자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7년 12월 12일 박용진 의원 등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010788호) 및 동 개정안을 함께 발의함⁴⁾
- 관련 법률안 중 현재까지 동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설 규정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5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부칙 <법률 제15613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험 등 금융 관련 분쟁에 관해서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⁵⁾되고, 중단된 시효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됨

- 단,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1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시효입박 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금융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동 개정안의 내용은 원래 2016년 7월 21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017호)의 일부로 발의되었으나, 당시 분쟁조정 관련 사항은 법체계상 일반법인 상법보다 분쟁기구의 근거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의견이 있었음

5)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바, 소멸시효의 중단(中斷)은 권리자가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전까지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임. 한편, 유사한 제도인 소멸시효 정지(停止)는 시효 완성에 대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소멸 시까지 시효완성시점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시행일(2018. 4. 17)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애초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한 유사 타법 개정 사례⁶⁾에서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사건으로 제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개정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음

■ 나아가 부칙 제2조 문언상 적용대상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신청되었다가 이미 종료된 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이란 문구를 좁게 해석하여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건은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분쟁조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임
- 문리해석 및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은 넓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즉,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분쟁조정 건이라도 취하 또는 각하 외의 사유로 종료되었고 원래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시행일 이후라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⁷⁾임

■ 동 개정으로 기존 및 향후 금융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동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ri**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29일부로 제48조의6 제4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4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소비자분쟁법 역시 2016년 3월 29일부로 제68조의3을 신설하여 소비자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규정하면서 역시 부칙으로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7)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올해 3월 경 조정불성립 종료된 건의 경우, 원래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올해 5월이었다면, 동 개정으로 2021년 3월 경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보험계약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임.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목적물의 리스크 정도와 관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계약체결 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계약자가 목적물의 리스크에 대한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은 다수의 민원과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고지의무제도의 수동화와 손해보험계약자의 소방법 등 안전법규 준수의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편 보험(이하 ‘보험계약법’) 제638조)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험계약은 리스크 재무방법 가운데 하나인 전가방법(Risk Transfer)에 해당하고 그 비용인 보험료는 리스크관리 비용(Cost of Risk Management)에 해당함
- 2015년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389만 원으로 2005년 181만 원에 비해 연평균 8.9% 증가함
 - 국민 1인당 생명보험료는 2005년(128만 원)에 비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231만 원임
 - 또한 손해보험료는 2005년(53만 원)에 비하여 연평균 12.9% 증가한 158만 원임

■ 보험료는 동일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일지라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

- 보험회사는 동질적인 리스크(homogeneous risk)를 대량으로 집적하여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1건당 보험금을 예측하여 산출한 평균 순보험료에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약자에게 부과함

$$\text{순보험료} = \frac{\text{사고발생건수}}{\text{보험계약건수}} \times \frac{\text{지급보험금}}{\text{사고발생건수}} = \text{사고발생확률} \times \text{건당 보험금}$$

- 보험료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달라지고,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규모, 관리상태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제도(보험계약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용하여 보험목적에 대한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 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

-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서 중요하고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보험계약법 제651조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효력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¹⁾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음
- 또한 보험회사가 질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내용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제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업법은 표준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법을 원용하여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위반 시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55조)

■ 우리나라의 고지의무를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보면 법조문의 구성, 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내용, 고지의무사항 부담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과 동일하나 고지의무 내용과 부담방법에 대한 법조문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일본과 독일의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표 1〉 한국, 일본, 독일의 고지의무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법률 체계	• 상법과 보험업법 분리 • 상법의 통칙에 규정	• 보험법과 보험업법 분리 • 보험법의 개별상품별 규정	• 계약법과 보험업법 분리 • 계약법의 통칙에 규정
법률 조문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4조(손해보험), 제37조(생명보험), 제62조와 제66조(상해질병정액보험): 보험회사가 손해발생가능성(위험)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한 중요한 사항(고지내용)을 고지해야 함	제2절 고지의무, 위험증가, 기타 의무 제19조(고지의무) (1) 보험자의 서면질문에 대해 고지 (2)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3) 고의·중과실의 경우만 한 달 이내에 해제 (4) 보험자 귀책사유 시 해제불가하나 계약조정가능 (5) 문서로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통보 시만 보험자 권한인정 (6)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10%이상 증가, 부담보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해지 가능
부담 방법	고지사항이 광범위하고 서면질문의 보험회사 자율적 사용	고지사항을 규정한 서면질의서 의무화	고지사항을 규정한 서면질의서 의무화
계약 해지 소멸 시효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체결 시로부터 3년	제28조(손해보험), 제35조(생명보험), 제84조(상해질병정액보험): 해제불가조항 규정 1개월, 5년	제21조(보험자의 권리행사) 1개월 이내, 5년(질병보험 3년 194조 1항): 고의일 경우 10년
효과	제655조(보험계약의 해제와 보험자의 담보책임)	제31조(손해보험), 제59조(생명보험), 제88조(상해보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제21조 (2)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급부면제

자료: 1) 이필규·최병규·김은경(2009),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pp. 18~20

2) 일본 보험법(2018. 4. 13)(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0AC0000000056&openerCode=1)

■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비대칭성²⁾으로 인한 민원³⁾과 역선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지내용의 확정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한 구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판례⁴⁾로 되어 있어 계약당사자가 공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나 독일, 일본 등은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과 보험자가 문서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제19조 제1항)
 - 일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중요한 사실로 하고 보험자가 요청한 사실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이를 보험종목별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 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서문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자가 요청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한정”하는 고지의무의 수동화⁵⁾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지의무의 수동화는 프랑스(1989년)가 먼저 도입하였고 독일(2007년)과 일본(2008년)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손해보험 계약자에 대해 손해방지와 손실경감 등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손해방지의무(보험계약법 제2장 손해보험 통칙 제680조)외에 리스크관리 준수 의무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방지의무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

2)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p. 192

3) 2016년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원건수는 생명보험이 463건, 손해보험 961건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4. 18),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p. 4

4)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5)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pp. 198~202

- 계약자가 지출한 손해경감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도록 되었음
- 화재보험표준약관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며, 제21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고 이를 중과실 또는 고의로 하지 않은 때에는 경감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계약자의 손해방지에 대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규정은 사고가 생긴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사고 전 일지라도 계약자가 소방법, 건축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리스크관리 상황에 기초하여 보험기간 동안 사고예방과 손해축소 등의 안전관리를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⁶⁾

■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계약자 당사자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 목적물과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면 조사서(Risk Survey Report)를 이용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민원발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리스크 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부합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고, 언더라이팅 정보 축적을 통한 리스크평가 능력이 향상이 될 것임
- 또한 사회전반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단위 리스크당 보험료는 낮아지기 때문에 계약자는 기존 담보의 확대나 새로운 리스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iri](#)

6) 중국 보험법 제51조(피보험자의 안전규정의 준수)는 재산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의 안전규정 준수 의무와 보험자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清河雅孝·周喆(2010), 2009年の中国改正保險法, 『産大法学』, 43卷3・4号, p. 279

- 피보험자는 소방, 안전, 생산조업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목적물의 상황을 점검하여 목적물에 위험요소와 은폐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요소와 은폐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안전 확보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안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



블록체인의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블록체인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분산시켜 저장하는 기술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기술로 지목되었음.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그 응용분야는 금융을 넘어 산업 전분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영국 금융당국(FCA)는 블록체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코인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기술발전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보호와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Blockchain)을 산업 및 금융에 활용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음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공개장부에 기록하고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보관함으로써 정보를 특정주체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고안됨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고도 불림
 - 원장을 네트워크에 공개적으로 분산시켜 보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며,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가능해짐
- 블록체인에는 데이터 관리주체가 없으므로 네트워크 참여자가 데이터를 보관 및 검증해주는 역할(채굴)을 하게 되며, 채굴을 수행한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암호화된 화폐(Cryptocurrency)인 코인을 지급함
 - 예를 들면 1세대 분산원장의 대표적인 보상(코인)은 비트코인(Bitcoin)이며, 2세대 분산원장의 대표적인 보상(코인)은 이더리움(Ethereum)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지목하였음¹⁾

-
- 세계경제포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²⁾

■ 모든 거래 행위가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업에서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에 기반한 P2P 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온두라스는 국가의 토지대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였음

■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및 인증기술을 넘어 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 및 폐쇄형 인증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

- ICO는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고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 텔레그램은 2018년 ICO를 통해 1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 폐쇄형 인증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자격을 얻은 주체만이 구축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미 많은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망에 접속된 모든 주체가 참여 할 있는 기존의 개방형 블록체인과 달리 참여 자격이 있는 주체만이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빠르고 효율적인 원장관리가 가능함
 - 대표적인 폐쇄형 시스템으로는 R3 Corda³⁾, Hyperledger⁴⁾ 등이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블록체인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FCA Sandbox)를 설치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60여 개 회사가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 중임

1) World Economic Forum(2016),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16"

2) World Economic Forum(2015), "Deep Shift -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3) 해외에서는 Barclays, JP Moran, Goldman Sachs, UBS 등 그리고 국내에서는 하나, 신한, 우리, KB, 농협 등이 참여함

4) 해외에서는 Cisco, IBM, Intel, Wells Fargo 등 그리고 국내에서는 KRX, 코스콤, 삼성SDS 등이 참여함

- 이 중 많은 회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테스트 하고 있음

■ 한편 FCA는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이 금융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에 동의하면서도 감독당국으로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⁵⁾

- 첫째, 거래수단에서 자산으로 변형된 코인 가격의 심한 변동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이해 및 보호방안이 필요함
 - 2017년 850유로 수준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말 14,000유로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1/4분기에 50% 이상 폭락하였는데, 영국감독당국은 이러한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미 FC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인을 처음 발행하는 ICO에 대한 투자 주의경보(Warning)를 내린바 있음
-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재 개방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장·단점과 이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미래에 블록체인이 필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폐쇄형 블록체인의 경쟁 및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급·결제 등의 사회 필수 서비스를 일부 폐쇄형 블록체인 접속권한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독점할 경우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막고 기존 회사들의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음
 -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독점으로 인한 승자독식의 문제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함

■ 영국 사례에서처럼 소비자 보호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및 경쟁제한 등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 통화 중, 한국 원화(KRW)의 비중은 4.56%로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이며, 우리나라 거래소의 세계시장 대비 거래량 점유율은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⁶⁾
 - 코인 투자 및 ICO 등에서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행태 분석 및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5) FCA(2018), "Blockchain: considering the risks to consumers and competition",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Conference Panel, Netherlands

6) Coinhills 2018년 5월 29일 기준

-
- 우리나라는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를 예정하고 있음⁷⁾
 -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관한 테스트를 하여,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야 함 [kiri](#)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3. 20),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드론의 사용이 사업용, 취미용, 군사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사업용 드론의 경우 사업등록 시에 제3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사업용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향후 정부는 드론보험이 전용종합보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드론보험이 드론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3자 보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보상한도액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과 계약자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드론 사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드론은 4차 산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산출물로 경제주체의 생활과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
 - 드론은 항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제조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드론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55.7억 달러에서 2019년 122.4억 달러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221.2억 달러(민간용 118.1억 달러, 군수용 103.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¹⁾
-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90%이상 사용되고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1) 관계부처 합동(2017. 1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p. 10

- 2017년 11월 현재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는 1,459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1〉 국내의 드론 대수 및 사용업체 수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1	CAGR
장치신고 대수(대)	193	357	925	2,175	3,735	109.7%
사용사업체 수(개)	131	383	698	1,030	1,459	82.7%
조종자취득자 수(명)	52	667	872	1,326	3,736	191.1%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1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p. 3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²⁾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투자 및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규 마련과 더불어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가 2016년부터 정부부처 관계자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2017년 12월에 공표하였음
- 동 계획은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을 태동기로 진단하여 2026년까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운영환경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추진을 지향함

- 한편 우리나라의 드론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규제는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사업용인 25kg이상인 드론은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사업등록 및 보험가입, 조종자 준수사항, 말소신고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으나 비사업용은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함
- 정부는 향후 드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체무게 중심 분류에서 위험도나 성능 기반의 분류체제로 변화하고, 이에 부합한 안전관리를 차등화할 계획임

2) Jones Therese(2017. 4), "International Commercial Drone regulation and Drone Delivery Services", RAND

〈표 2〉 현행 드론 용도별 보험가입 등 안전규제 내용

	구분	장치신고	사업등록	기체검사	보험등록	비행승인	준수사항	조종자격	장치말소
사업용	25kg 초과	○	○	○	○	○	○	○	○
	12~25kg	○	○	×	○	△	○	○	○
	12kg 이하	○	○	×	○	△	○	×	○
비사업용	25kg 초과	○	×	○	×	○	○	×	○
	12~25kg	○	×	×	×	△	○	×	○
	12kg 이하	○	×	×	×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12),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p. 24

■ 사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항공기사업법 제48조)

- 항공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보험가입의 조건(별표 9)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가입 조건은 “납입자본금 3천만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4,500만 원) 이상, 드론 1대 이상, 조종자 1인 이상인 경우에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임

■ 제3자 보험은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 대비한 대인배상과 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비한 대물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5억 원~3억 원, 대물배상 0.2억 원~1억 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드론종합보험은 2개사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있음
- 최근에는 취미용 등 비사업용 드론에 대한 보험상품도 지자체 등과 협약하여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드론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드론의 사용범위 확대로 드론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고책임부담범위 및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임
 - 보험업계와 비행정보 공유, 사고의 정의와 기준 구체화 및 사고 시 책임부담자 명확화를 2019년까지 마련할 예정임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 파손부위, 사고형태별 빈도 등 집적하여 적정 보험료 산정을 할 계획임
- 향후 드론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정부개선 과제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유형별 보상한도액 수준과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보상한도액 수준(1인당 사망 1.5억 원)과 유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드론 전용보험³⁾은 다양한 리스크발생 유형⁴⁾을 고려하여 현행 자동차보험체계와 같이 책임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사생활침해 등 배상)과 임의보험(기체보험, 도난손해, 다른 드론에 의한 소유자 상해, 법률비용, 기체 구조비용)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체보험과 비용손해담보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인수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의무보험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보험, 기체보험, 구조수색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검토할 수 있음
 - 취미생활로 사용할 경우에만 모바일로 가입하는 비행시간연계보험상품(Pay-As-You-Fly)의 개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⁵⁾

3) 일본의 드론종합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과 동산종합보험(기체손해)으로 인수하며, 인격침해보상, 피해자 대응비용, 수색회수비용, 조종훈련비용담보특약을 첨부하여 운영하고 있음; 일본손해보험협회(2016.4), “小型無人機の保険について”, p. 8

4) 최창희(2017. 9. 4),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필요」, 『KiRi리포트』, 제427호, 보험연구원, pp. 11~13

5) 영국의 드론보험 스타트업체 플록(Flock)은 스마트폰 플록커버(Flock cover)를 이용하여 비행시간연계보험(Pay-As-You-Fly)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담보 보험료는 3파운드(약 4,380원)임; 로봇신문(2018. 5. 11), “비행시간만큼 부과하는 드론보험 상품 등장”, <https://flockcover.com/>(2018. 6. 7)

-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손해보험회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드론에 대한 리스크정보의 공유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가격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조종사의 조종 수준이나 기체의 안전성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계약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져 보험료를 계약자별로 차별화 할 수 있음 [kiri](#)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보험계리사의 역할 확대로 인해 보험계리사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계리사 제도는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이에 감독당국은 평가범위 확대, 과목별 합격 인정 등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예전 제도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보험가격 자유화,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인슈어테크로 인한 데이터분석 능력 등 보험환경 변화로 보험계리사에게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포함한 보험계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보험산업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보험계리사는 미래의 보험금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수취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의 부채기간에 적합하게 운용하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계리사는 소비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보험가격 자유화로 인한 다양한 보험요율 산출, 보다 정교하고 보험환경에 적합한 지급여력 산출방식 도입, IFRS 9 및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향상으로 인해 보험계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할 확대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 과거에는 표준위험률 및 표준이율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 정해진 공식에 의한 지급여력 계산 등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현금흐름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재무건전성 측정 방법이 정교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 과거에는 보험회사 내부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입지가 약했고, 매년 시험 응시자 및 선발하는 보험계리사 수도 적었음

- 보험가격이 통제되던 시기에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예정기초율을 보험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리사들의 입지가 약했음
- 보험계리사 선발 시험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다년간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및 계리 업무 경력이 있는 응시자들이 주로 합격하였으며, 합격자 수도 연 10명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보험계리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 이후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험계리사 응시자와 최종합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시험과목이 보험계리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보험계리사의 직업적 전망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지고 1997년 21명, 1998년과 1999년 40명 등 최종합격자 수를 늘리면서, 학생 응시자와 합격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3년간은 연간 120명의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자 수가 2013년에는 141명에 달하였음
- 1990년대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다년간 업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합격하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이 다수 합격하였으며 수석합격자가 학생인 경우도 있었음
- 이처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였음
- 그러나 시험제도가 보험계리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보험계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계리제도가 표준화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험제도를 선진국 수준과 부합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당시 우리나라의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재무관리, 계리실무 모형(modeling), 통계분석 등 보험계리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리사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음¹⁾

■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리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시험은 보험수리뿐만 아니라 통계, 재무, 계리모형 등 계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리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선발을 위한 시험과목 및 요구조건이 광범위함²⁾
 - 생명·손해보험 공통 과목으로 기초 확률·통계(Probability),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등을 합격해야 하며, 대학에서 개설되는 경제학, 기업재무, 통계학 등의 3과목을 수강하고 B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³⁾
 -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수리(Actuarial Mathematics), 계리모형(Statistics for Risk Modeling),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추가적인 계리실무 온라인 연수과정을 거쳐야 준 계리사(ASA)가 될 수 있으며, 정식 계리사(FSA)가 되기 위해서는 6개 전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연수와 시험을 거쳐야 함⁴⁾⁵⁾
 - 손해보험은 계리통계(Modern Actuarial Statistics), 요율산출, 규정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준 계리사(ACAS)가 될 수 있으며, 정식 계리사(FCAS)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회사 가치평가, 고급 요율산출, 재무 리스크 등에 관한 3개의 시험을 추가로 합격해야 함
- 이처럼 SoA와 CAS의 계리사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라기보다 계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시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자질을 갖추도록 함
 - SoA와 CAS는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합격한 과목의 효력은 영구히 유지되는데, 이는 응시하는 과목이 많아 모든 과목을 동시에 합격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자질을 영구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1) 1차 시험은 ①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 1, ② 보험수학, ③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④ 외국어(영어 및 일어 중 택 1) 4과목이었으며, 2차 시험은 ① 보험이론 및 실무, ② 회계학, ③ 보험수리 3과목이었음. 1차 시험 합격 후 이듬해까지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되었으며, 이듬해까지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했음

2) 생명보험 시험은 Society of Actuaries(SoA), 손해보험 시험은 Casualty Actuarial Society(CAS)가 주관함

3) 이를 Validation by Educational Experience(VEE)라고 하는데, 시험주관 기관이 사전에 교과과정을 확인하고 승인한 학교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이 됨

4) SoA는 2018년 7월부터 ASA가 되기 위한 시험에 Exam PA(Predictive Analytics)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임

5) FSA의 6개 전문 과정은 Corporate Finance & ERM, Quantitative Finance & Investment, Individual Life & Annuities, Retirement Benefits, Group & Health, General Insurance임

■ 이에 감독당국은 선진국 계리사 제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2014년과 2018년에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시험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2차 시험의 범위를 계리 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으로 확대하였음⁶⁾
- 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합격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과목별 합격 효력을 5년 동안 인정함
 - 2014년 개정에서는 1차 시험을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동안 2차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5과목을 모두 합격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목도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올해에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격 효력이 과목별로 5년간 유지되도록 하였음
- 사전에 선발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계리사 제도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있고 보험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보험계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보험상품의 다양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요구강화, 인슈어테크로 인한 데이터분석 능력 필요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도 더 광범위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과목으로 보험회계, 금융수학 및 데이터 분석/예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과목별 합격 효력을 연장하고 보험계리사 자격 취득은 쉽게 하는 대신,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은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시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계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6) 1차 시험은 ① 경제학원론, ② 보험수학, ③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④ 회계원리로 변경하였으며 영어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하였는데, 1차 시험의 합격여부는 기존 방식(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과 동일함

7) 2014년에는 제도 개선 후 최초로 5과목을 모두 합격한 최종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25명, 2016년에는 48명, 2017년에는 62명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음

-
- 시험과목을 확대할 경우 보험계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과목별 합격효력 인정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음
 - 미국·캐나다에서는 재학 중에 2~3과목의 시험을 합격하고, 취업 후 3~5년에 걸쳐 ASA나 ACAS를 취득하고 이후 2~3년에 걸쳐 FSA나 FCAS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리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므로, 보험계리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을 담당하는 보험계리사와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를 동일한 제도에서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기초과목 이외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과목을 분리하여 생명보험 계리사와 손해보험 계리사를 별도로 선발할 필요가 있음 [kiri](#)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정성희 연구위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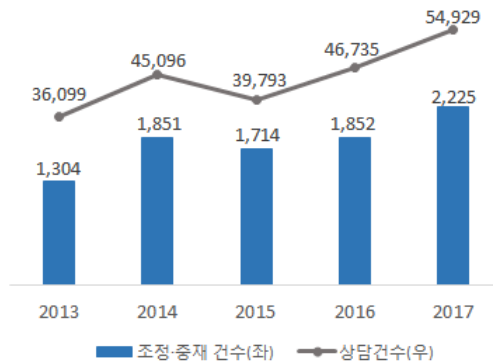
최근 빈번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추세임(〈그림 1, 2〉 참조)¹⁾

-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함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평균 금액 12.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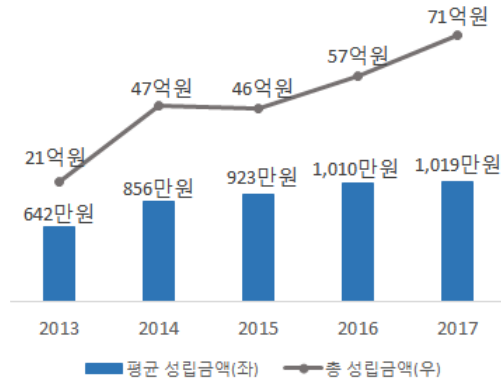
1) 정확한 의료사고 건수 및 분쟁을 파악할 수 있는 공인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및 피해 구제 통계를 참조함

〈그림 1〉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건수 추이



자료: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그림 2〉 의료사고 배상금액 추이



자료: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 일부 의료사고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표 1〉 참조)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세균감염 패혈증 집단 사망(2017년),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2015년),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2014년) 등의 사고가 대표적임
-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²⁾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하 ‘의료배상책임보험’³⁾)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당 수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확보가 미흡함
 - 2017년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임
-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 자력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⁴⁾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음
-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해훈, 송영길 의원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함

2)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 제1항~제3항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된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피보험자인 의사 등이 의료업무 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해 환자 등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임

4)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피해자(환자)가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에게 구상하도록 함

-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표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의안명	제안 일자	주요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의원 등 10인)	2018. 3. 2.	제4조 신설: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의 성명, 학력, 전공분야, 면허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장기간의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의원 등 10인)	2018. 5. 21.	제47조의2 신설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 가입은 각 의료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데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음

-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 활동에 기인한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전문 직업인은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행위로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민법 제750조)하며, 또한 전문직업인과 의료인 간 전문적 업무 위임(위탁)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민법 제390조)함
 -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표 2〉 참조)
- 전문 직업인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업인의 배상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표 2〉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현황

가입 대상	관련 법규	법령 내용
변호사	변호사법(제58조의11, 12)	법무법인(유한)은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 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19조, 제28조)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 원의 보험 또는 공제
세무사	세무사법(제16조의2, 7)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세무사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보험 가입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제191조)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자산의 예탁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
보험중개사	보험업법(제89조)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 이상의 영업보증금 또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됨(〈표 3〉 참조)⁵⁾

-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인데, 소형병원은 10억 원 ~ 50억 원, 중형병원은 50억 원 ~ 100억 원, 대형병원은 200억 원 ~ 5,000억 원 등으로 가입하고 있음
-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가입하는데, 자기부담금 수준도 병원 규모에 비례하여 설정됨⁶⁾

〈표 3〉 주요국 의료배상책임 의무화 현황

구분	과실책임주의 적용 국가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국가
의무보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뉴욕,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준의무보험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자료: 차일권(2006) 참고 재작성

■ 따라서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kiri](#)

5) 차일권(2016), “의료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 연구”, 보험개발원

6) Beazley Hospital Claims Study(2016. 9)



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황인창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IFRS 17 채택을 위한 법적승인 자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제적 영향분석을 수행 중임.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EFRAG이 실시한 사례분석에 의하면, 약 20%의 보험회사만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절반이 넘는 보험회사는 영향평가를 시작하거나 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EFRAG이 수행 중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유럽보험회사들은 기술적 해석에 대한 합의 도출, TRG 논의 일정, 도입 준비에 필요한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현재 예정된 IFRS 17 적용일정을 맞추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유사한 기간 동안 수행된 다른 설문조사(Deloitte와 SAS)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들은 IFRS 17 시행일 준수에 낙관한다고 답변하여 유럽보험회사들의 IFRS 17 도입 준비 상황과 적용의 어려움이 회사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보험회사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국가 간, 산업 간) 제고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IFRS 17 '보험계약'을 제정함

-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국가별,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려웠음
- IASB는 IFRS 17 제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5월 최종기 준서를 공표함
- 최종기준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 17을 적용함

■ 28개 EU 국가들은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일반회계) 작성 시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함

- 우리나라와 달리 상장기업의 감독보고,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연결재무보고와 감독보고)에서의 IFRS 의무적용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함
 - 우리나라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경우 IFRS를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해야 함

〈표 1〉 EU국가들의 IFRS 적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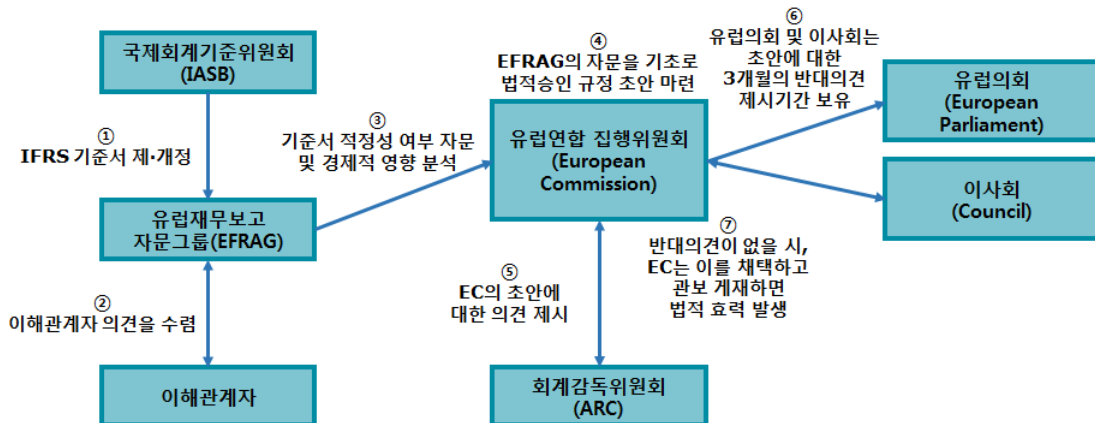
구분		의무적용	선택적용	적용금지
상장기업	연결재무보고 (일반회계)	100	0	0
	감독보고 (감독회계)	43	32	25
비상장기업	연결재무보고 (일반회계)	46	54	0
	감독보고 (감독회계)	29	43	28

자료: Insurance Europe(2018. 4. 23), "Webcast IFRS 17 simplified case study"

■ EU는 IFRS 적용 시 해당 기준서를 채택하여 법적 유효성을 부여하는 과정(Endorsement Process)을 거침¹⁾

-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회계이론 및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며, 이를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을 운영함
- 또한 채택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IFRS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고, 실제 수정한 사례도 있음

〈그림 1〉 EU의 IFRS 채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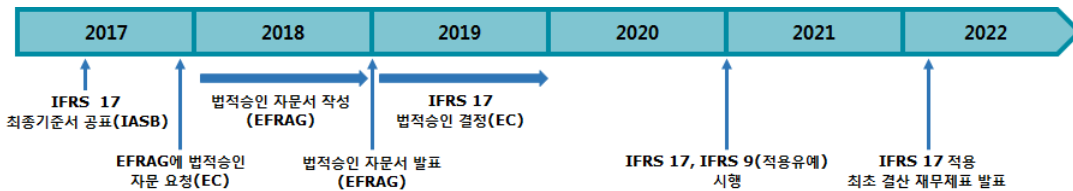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 우리나라도 IFRS 적용 시 EU와 유사한 절차를 거침(자세한 내용은 조재린·황인창(2016. 10. 17), 「IFRS 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KiRi 리포트』 참조)

■ EU의 IFRS 17 채택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EFRAG의 법적승인 자문서 작성(그림 1)의 ③을 위한 경제적 영향분석 단계에 있음

- EFRAG은 금년 9월 초에 경제적 영향분석을 마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 기준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문서를 발표할 예정임

〈그림 2〉 EU의 IFRS 17 적용 일정



자료: Insurance Europe(2018. 4. 23), "Webcast IFRS 17 simplified case study"

■ EFRAG은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금년 상반기 보험회사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근 예비결과(Preliminary Results)를 발표함

- EFRAG은 당초 상세한 사례분석(Detailed case study)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설문응답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간단한 사례분석(Simplified case study)을 위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수행함
 - 상세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기에 자원이 부족하여 사례분석을 간단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함
- 간단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보험사업에 대한 IFRS 17의 기대 영향(주로 정성적 문항, 실행비용에 대한 정량적 문항 포함)
 - IFRS 17의 정량적 영향 추정치
- 현재 상세한 사례분석 및 간단한 사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가 끝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상세한 사례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EU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11개 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가 참여함
 - 간단한 사례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EU 14개국의 49개 보험회사가 참여함

■ 간단한 사례분석의 예비결과 중 보험회사의 준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약 20%의 응답회사는 이미 실행(Implementation) 단계에 진입함
 -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들은 실행을 2017년 11월~2018년 4월에 시작하였으며, 예상 완료시점으로 2019년 말~2021년까지라고 답변함
- 절반이 넘는 응답회사는 영향평가(Impact Analysis)를 시작했거나, 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행을 준비하고 있음
 -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들은 영향평가를 2017년 3월~2018년 5월에 시작하였으며, 예상 완료시점은 2018년 3월~2020년 중이라고 답변함

〈표 2〉 EFRAG의 간단한 사례분석에 대한 예비결과: 보험회사 준비 현황

(단위: 개)

구분	영향평가 진행 중	영향평가 완료 후 실행 준비 중	실행 진행 중	영향평가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합계
벨기에	1	-	1	1	-	3
프랑스	1	1	1	-	-	3
독일	-	-	3	-	-	3
이탈리아	3	1	1	-	-	5
네덜란드	2	2	1	1	-	6
기타 동유럽	2	1	-	-	-	3
기타 서유럽	5	-	1	-	1	7
슬로바니아	5	2	2	-	-	9
영국	2	8	-	-	-	10
합계	21	15	10	2	1	49

주: 기타 동유럽은 체코와 리투아니아를 의미하고, 기타 서유럽은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를 의미함
 자료: EFRAG(2018. 7. 25), "IFRS 17 Insurance Contracts Preliminary results of simplified case study"

■ 간단한 사례분석의 예비결과 중 IFRS 17의 기대효과를 재무정보의 질,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 자본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응답회사들은 IFRS 4와 비교해볼 때, IFRS 17 적용은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답변함
- 응답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IFRS 17 적용이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공급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답변했지만, 약 절반의 응답회사들은 IFRS 17 적용이 그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답변함

-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공급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재보험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이고, 이들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기준서의 복잡성(Complexity) 때문임

- 약 절반의 응답회사들은 IFRS 17 적용이 보험회사의 자본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EFRAG이 수행 중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유럽 보험회사들은 IFRS 17 적용일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예정된 일정을 맞추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개진함²⁾

- 기술적 해석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보험회사와 회계감사인 간 합의(Consensus)를 이루는데 시간이 소요됨
-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그룹(Transition Resource Group, 이하 'TRG')³⁾에서의 논의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명확화와 수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TRG는 2018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임
- 계리사, 회계사, IT 전문가 등 IFRS 17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업권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⁴⁾ 산출 등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아직 구입할 수 없음
- 회계적 영향 결과가 충분한 정확성을 갖춰야지만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교육도 필요함

■ 반면 EFRAG의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금년 초에 실시한 Deloitte⁵⁾와 SAS⁶⁾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들은 IFRS 17 시행일 준수를 낙관한다고 답변함

- Deloitte는 전 세계 12개국(EU 6개국 포함)의 340개 보험회사의 IFRS 17 도입 준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SAS는 영국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2) 이와 더불어 측정, 운영상 복잡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비용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자세한 내용은 CFO Forum(2018. 7. 3), "CFO Forum Presentation to the EFRAG Board: EFRAG testing results" 참조)

3) TRG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임

4) CSM은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는데, IFRS 17의 CSM 도입은 기존 기준서인 IFRS 4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임

5) 자세한 내용은 Deloitte(2018), "2021 countdown underway: Insurers prepare for IFRS 17 implementation"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SAS, (2018), "A Transformation in Progres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IFRS 17" 참조

-
- Deloitte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IFRS 17 시행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약 90%의 응답자가 확신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강함
 - SA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IFRS 17 시행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약 99%의 응답자가 확신한다고 답변함
- 위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들이 다르다는 점은 유럽 보험회사들의 IFRS 17 도입 준비 상황과 적용의 어려움이 회사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회사의 규모, 자산 및 상품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IFRS 17 도입의 어려움이 달라짐 [kiri](#)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재산종합보험의 재물손해담보 부분에 관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 등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함께 명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가능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은 계약자별 맞춤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를 기재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반면,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재물보험은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므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 쟁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최근 고등법원에서 이 쟁점과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부정설로 보이는 설시를 한 판결이 나와 향후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됨

■ 공장, 건물 등의 부동산, 재고 등 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물이 화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재산종합보험¹⁾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소유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며, 동시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취득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²⁾하므로, 통상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먼저 손해를 보상한 후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1) 재산종합보험은 재물손해담보(Property All Risk Cover), 기계담보(Mechanical Breakdown Cover), 휴업손실담보(Business Interruption Cover), 일반배상책임담보(General Liability Cover)의 4부문으로 구성되나, 본고의 논의는 재물손해담보에 관한 것임

2)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보험목적물의 임차인이거나, 보험목적물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인 경우 등 관련자(이하 “임차인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대비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 등이 중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낭비이며 손해라는 인식에서 비롯됨³⁾

■ 그 대안으로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임차인 등을 함께 명기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보험회사의 임차인 등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⁴⁾

-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⁵⁾
- 약관이 정형화된 화재보험(Ready-made Policy)과 달리 재산종합보험은 계약자별 맞춤 상품(Tailor-made Policy)이라는 특성상 피보험자 기재방법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물보험은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소유이익이 없는 임차인 등은 보험증권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⁶⁾

- 대법원은 상가운영위원회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종합보험 재산손해담보 부문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이익을 소유이익으로 보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피보험자성을 부인⁷⁾한 바 있음

3) 안대화(2015. 4),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 추가에 대한 제언」, 『Risk & Insurance』, 통권 제119호, p. 39 참조

4) 상동

5) 단,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자 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적용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등)

6) 안대화, 위 기고문, pp. 42~44 참조

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참조

- 또한 재물보험에서 임차인 등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기재하거나 피보험자 기재 없이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을 위한 재산보험”이라고 판시함⁸⁾
- 아울러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병기하여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이 우려된다는 것 또한 근거로 함
 - 첫째, 임차인이 피보험자의 법률 및 약관규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둘째, 임차인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상품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음
 - 셋째, 구상권 청구기회 상실로 보험사의 환입보험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상승요인이 될 것임
- 본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의는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소유이익으로 제한되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현재까지 이 논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음
- 부정론이 근거로 드는 기존의 판례사안들은 본고의 검토대상과는 사실관계 구성에 차이가 있음
 - 기존 사안은 재물보험임에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인 임차인 등의 법적 책임과 보험목적물 소유자의 소유이익 중 어느 것을 피보험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임
 - 본고의 검토대상과 같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상권 청구 회피 목적으로 임차인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경우 임차인 등의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음
- 또한 기존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안의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판단⁹⁾ 하였을 뿐, 소유이익만이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지는 않았음

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05987 판결 등

9)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이 사건과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학계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관념 자체는 거래의 통념에 합치되도록 탄력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¹⁰⁾

-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도,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자로서의 이익, 임차인으로서의 이익, 저당권자로서의 이익 등 다양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기는 하나, 반드시 소유이익을 가진 자만이 재물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움
- 우리나라 재산종합보험 약관이 기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 등에서는 많은 경우 소유이익 뿐 아니라 법적 책임(legal liability) 또한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봄¹¹⁾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에 임차인 등을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함께 기재하고 이로써 임차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의욕한대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등법원에서 공장 소유자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에 “수급인”이 피보험자로 함께 기재된 사안에서, 공장 부지 내에서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의 피보험자성을 부인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음¹²⁾

- 판결문은 이 사안 역시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전제한 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해당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의욕한 바 없다는 취지로 판단
-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상 피보험자란에 수급인이 기재되었고, 보험회사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복수 피보험자 조항(Multiple Insured Clause)이 존재했음

10) 정동윤·손주찬(2015), 『주석상법: 보험(1)』, 제638조~제682조, pp. 361~363; 양승규(2005), 『보험법』, p. 196 등 참조

11) Petrofina (UK) Ltd. and Others v. Magnaload Ltd. and Others(1983, 영국), Commonwealth Construction Co., Ltd v. Imperial Oil Ltd.(1976, 캐나다) 등은 ‘재물보험인 공사보험에서 (소유자가 아닌) 하청업자들이 공사목적물에 갖는 피보험이익은 과실이 있는 경우 그들이 부담하게 될 책임에서 도출’된다 판시함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2002821 판결 참조

- 그러나 고등법원은 구상권 포기 대가로 보험료가 증액된 사정이 없고, 수급인의 이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는 등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포함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함
- 위 판결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피보험자성을 부인하였고, 법리적으로 재물보험에서 소유이익이 없는 임차인이나 수급인 등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설시 내용 중 “재산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소유이익을 가지는 자로 한정”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본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법리가 판례로서 정립된다면 보험회사들의 계약인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됨 **kiri**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장기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를 기록함. 보험영업이익 흑자의 원인은 발생손해액 감소인데, 2012년 보험사기 억제에 위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가 발생손해액 감소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됨.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확대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최근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발생손해액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93% 상승하였으나 2018년 1/4분기 1.12%, 2/4분기에는 1.15% 하락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3.0%,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0.20%를 기록함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하락, 마일리지 할인 확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자동차보험료 하락에 영향을 미침
- 발생손해액은 2018년 상반기 6조 1,405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5조 7,929억 원에 비해 6% 증가하여 보험영업손익은 116억 원 적자를 기록함¹⁾
 - 2018년 2/4분기 보험영업손익은 손해를 개선으로 367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4분기 적자(483억 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 금융감독원(2018. 8. 10),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평균 8.7%,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6.0% 증가함²⁾

■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영업 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를 기록함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보험이고, 1995년까지는 보험료 규제가 엄격했으나 1995년 EU 통합을 계기로 보험료 규제가 완화됨
 - 자동차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물적 및 인적 손해배상)보험과 차량 화재, 도난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기타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 보험료 규제로 인해 보험료 증가율이 손해액 증가율에 비례해서 결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³⁾
 -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되었고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됨
- 이탈리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하락의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운행 대수 감소,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보험료 할인, 마일리지 할인, 온라인 판매 등 경쟁 심화임⁴⁾
 - 인구 1,000명 당 자동차대수는 2008년 866대에서 2013년 856대로 연평균 1.15% 감소함
 -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013년 5.6%, 2014년 7.5%, 2015년 7.7% 하락(전년 대비)하였고 2016년에는 5.9% 하락함

■ 2012년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14억 유로 내외에서 2016년 4억 6,100만 유로로 감소하였으나 흑자가 지속됨

-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09년 169억 9,400만 유로에서 2016년 135억 2,500만 유로로 감소하였고, 기타 종합보험의 경우 31억 3,200만 유로에서 26억 3,400만 유로로 감소함
- 배상책임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09년 151억 1,060만 유로에서 2016년 104억 2,200만 유로로 감소하였고, 기타종합보험의 경우 21억 3,100만 유로에서 14억 6,300만 유로로 감소함

2)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동차 보험료와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전용식(2018. 7. 2),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KiRi 리포트』 참조

3) Heikes, Andrew(2006), "The Pricing Effects of European Union Insurance: Liberalization on Italian Motor Insurance", Honors Projects. Paper 10,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4) PwC(2017), The Italian Insurance Market

- 사업비는 기타 종합보험의 경우 8억 3,000만 유로에서 8억 400만 유로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32억 8백만 유로에서 29억 2백만 유로로 감소함
- 배상책임보험 보험영업이익은 2009년 15억 8,300만 유로 적자에서 2013년 18억 5,700만 유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흑자규모는 2016년 1억 9,300만 유로로 감소함
- 기타 종합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2009년 1억 4,900만 유로에서 2012년 3억 6,000만 유로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2억 6,800만 유로로 감소함

〈표 1〉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책임 보험	원수보험료	16,994	16,913	17,794	17,576	16,236	15,211	14,218	13,525
	증가율(%)	-3.6	4.4	5.2	-1.2	-7.0	-6.5	-6.5	-5.6
	발생손해액	15,106	14,467	14,791	13,110	11,563	10,818	10,421	10,422
	사업비	3,208	3,116	3,236	3,233	3,167	3,187	3,060	2,902
	보험영업이익	-1,583	-1,221	-735	1,084	1,857	1,410	842	193
	손해보험 비중	46.3	47.5	48.9	49.6	48.3	46.4	44.4	42.3
기타 종합 보험	원수보험료	3,132	2,950	2,891	2,648	2,413	2,387	2,455	2,634
	증가율(%)	-2.4	-1.3	-2.0	-8.4	-8.6	-1.1	2.9	6.5
	발생손해액	2,131	1,857	1,812	1,630	1,654	1,459	1,396	1,463
	사업비	830	781	763	703	660	692	733	804
	보험영업이익	149	296	299	360	154	238	261	268
	손해보험 비중	8.5	8.3	8.0	7.5	7.2	7.3	7.7	8.2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2017), 보험현황

■ 보험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되는 원인은 자동차 보험료 하락과 더불어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생손해액은 경상환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험금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인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비중은 63.5%(경상환자 21.4%, 중상해 환자 42.1%)이고 물적 손해 비중은 36.6%임
- 책임보험과 기타종합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2% 감소하였는데 유가의 영향과 인적 손해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와 평균 보험금 감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사고빈도의 감소가 원인임

- 2013년부터는 인적 손해 사고빈도의 감소와 평균 보험금 증가율 둔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 인적 손해가 초래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사고 1건당 보험금) 감소가 발생손해액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인적 손해 사고빈도는 1.7%에서 0.99%로 감소하였고 특히 경상사고 발생 빈도의 경우 연평균 7.51%, 평균 보험금도 6,037유로에서 5,605유로로 연평균 1.06% 감소함
 - 중상해 사고의 경우 사고빈도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보험금이 15만 5,484유로에서 20만 2,610유로로 증가함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및 중·상해는 후유장애 등급으로 구분됨

〈표 2〉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와 평균 보험금

(단위: 유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 고 빈 도 (%)	사고빈도	7.77	7.36	6.53	5.87	5.65	5.48	5.55	5.65
	물적 손해	6.07	5.70	5.07	4.69	4.57	4.47	4.57	4.66
	인적 손해	1.70	1.67	1.46	1.18	1.07	1.01	0.98	0.99
	경상 환자 발생사고	1.627	1.602	1.401	1.121	1.016	0.963	0.932	0.942
	중상해 환자 발생사고	0.070	0.067	0.062	0.059	0.057	0.052	0.051	0.051
	사고건수 증가율	0.5	-5.2	-11.3	-10.1	-3.8	-2.9	1.2	1.8
평 균 보 험 금	물적 손해	1,725	1,716	1,803	1,899	1,883	1,894	1,908	1,923
	(증가율)	-2.7	-0.5	5.0	5.3	-0.8	0.6	0.7	0.8
	인적 손해	11,694	12,052	13,155	14,804	15,986	16,150	16,389	15,785
	(증가율)	-1.1	3.1	9.2	12.5	8.0	1.0	1.5	-3.7
	경상 환자	6,037	6,022	6,135	5,951	5,756	5,668	5,508	5,605
	중상해 환자	155,487	166,750	179,891	191,379	198,045	210,061	216,797	202,610
	평균 보험금	3,903	4,057	4,345	4,495	4,564	4,532	4,467	4,374
	(증가율)	-0.3	4.0	7.1	3.5	1.5	-0.7	-1.5	-2.1

자료: 이탈리아 보험협회(2017), 보험현황

■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감소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2012년 법제정의 효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탈리아 법률 Law 27/2012는 경상환자들의 도덕적 해이(혹은 보험사기, Speculative Claims)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함

-
- 경상환자가 발생하는 사고빈도(보험금 청구 건수)는 2011년 1.401%에서 2013년 1.016%로 27% 감소하였으나 물적 손해만 발생하는 사고빈도는 5.07%에서 4.57%로 2년간 5.06% 감소에 그쳐 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이익 적자도 확대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중심으로 발생손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온라인 판매 확대, 블랙박스 장착, 마일리지 할인 등 보험료 할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나이롱 환자 등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7년 3,208억 원이며 운전자 바뀌치기, 사고피해 과장, 병원의 과장 청구 등의 규모는 987억 원에 이름⁵⁾ **kiri**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7), “허위 과잉 치료관련 손해보험 사기 크게 증가”



IFRS 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들은 준비작업에 한창이며, 그 일환으로 사망률의 시가추정(current estimate) 방식도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는 장기간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 추세를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자사 데이터와 접목 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들은 사망률의 시가 추정(current estimate)을 포함하여 준비작업에 한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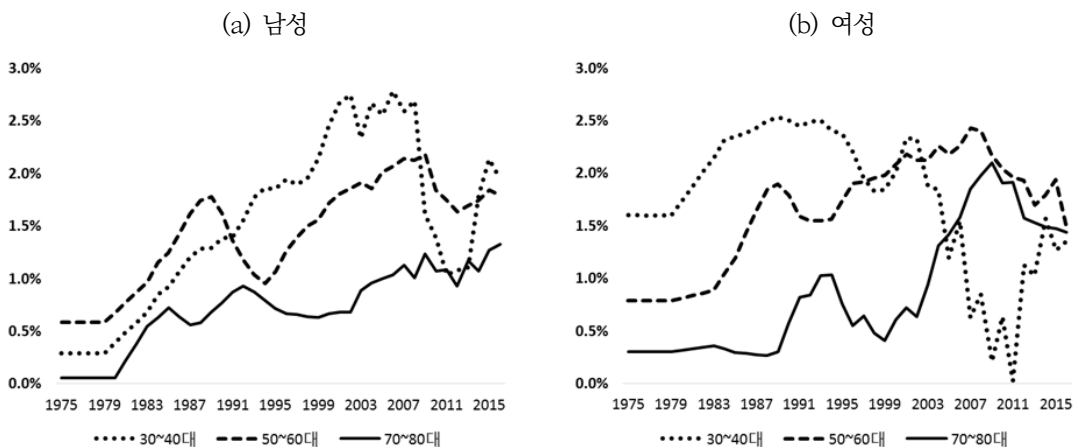
- IFRS17은 위험률 등 비시장변수의 추정에 있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현재 발생 수준과 함께 추세에 대한 정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망률과 같이 국제적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가 발견되는 위험률의 경우 현행 추정 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망률 개선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사망률 추정 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는 장기간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 추세를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보험업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험생명표의 경우에도 20여 년의 데이터만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가 고연령의 데이터까지 자체적으로 집적한 데이터는 이보다 단기에 불과할 것임

- 연령대별 사망률 개선도¹⁾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30~40대 저연령 층의 사망률 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2000년 대 이후 50대 이상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이 두드러짐
- 남성과 여성 모두 70~80대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정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 추세를 부채평가에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 보험 부채가 확대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그림 1〉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 개선도 추이



자료: 통계청

■ 자사 데이터의 집적기간이 단기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¹⁾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사 데이터와 접목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자사 데이터의 한계로 사망률 개선 추세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가 보다 장기인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망률 개선 정도를 추정한 후 자사 데이터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각 보험회사의 경험 데이터는 언더라이팅 정책 등의 차이에 따라 사망률 개선 추세에 있어서도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이 경우 자사 경험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에서 얻어진 사망률 개선 추세를 보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1) 연도별 사망률은 그 해의 기후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도는 5년 평균 개선도로 살펴보았으며, 5세 군단별 개선도를 연령구간별로 단순 평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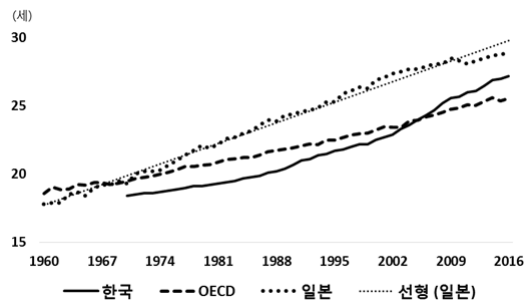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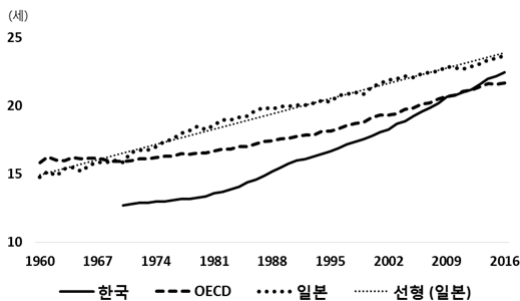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를 장기에 걸쳐 반영하는 것은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된 개선 추세의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에서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장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개선 추세가 장기간 반영될 경우 연금부채 규모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IFRS17에서도 최선추정치(가장 최근의 경험을 반영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음
- 한편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사망률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사망률 개선이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그림 2〉 우리나라와 일본, OECD 국가의 60세 기대여명 추이

(a) 남성

(b) 여성



자료: OECD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위험률 산출 기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IFRS17은 회계정보 제공 시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미래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히 추정되어야 할 것임

-
- 사망률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 추세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암 발생률과 같은 질병 발생률에서도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회사가 위험률 산출 기법을 정교화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손익을 예측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음 [kiri](#)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최근에 발표된 금융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금융관련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이로 인한 비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수단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는 결핍에 의한 인지과부화에 따른 인지 및 계산능력, 자제력 저하로 인해 저소득층이 일반 금융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발표된 금융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금융관련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이로 인한 비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 상담이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음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활을 촉진하고 이자부담을 줄여 생활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임
-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소득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은 평균적인 금융소비자들보다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비용도 더 심각함¹⁾

- 저소득층은 재정적 여유가 없으므로 압박하에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하지 못하

1) Filho and Paiva(2017), "Behavioural Insights in Poverty Reduction Policies", *Research Brief*,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로 인해 작은 일상적 결정들에 정신적 능력(Mental Bandwidth)을 소진하게 됨

- 예를 들어, 극히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통신요금을 내면 어떤 요금을 대신 지불할 수 없게 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인지과부화(Cognitive Overload)는 인간의 인지능력, 계산능력, 자제력을 저하시킴

■ 따라서 저소득층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자산축적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사례들은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개인대출 프로그램이나 저축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금융의사결정을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 프로그램들은 금융소비자가 주어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존 가정을 수정하여, 금융소비자의 편향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자 했음

■ 저소득층은 약탈적 대출의 표적이 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상품 선택 결정은 중요한데, 상환금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하는 방식과 직장을 통한 대출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대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²⁾

- 금융소비자는 절대적인 대출비용보다는 대출승인의 확실성, 유연성, 익숙함과 같은 요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³⁾ 특히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 고금리 대부업의 '10분 내 대출승인', '10분 내 대출승인, 24/7' 등의 광고에 비해 신용조합(Credit Union)이 제공하는 저리대출은 개인이 신용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승인 후 대출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덜 매력적일 수 있음

- 의사결정자가 긴급하고 즉각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 해당 문제에만 집중하는 터널링(Tunnelling)현상은 사용가능한 대안을 평가하기 어렵게 하여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연체된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고금리 개인 신용 대부를 통해 해결하는 행동이 사례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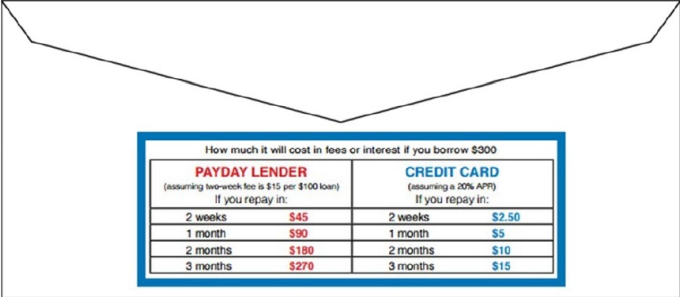
2) Gandy et al.(2016), *Poverty and Decision-making*,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3) FCA(2014), *Consumer Credit and Consumers in Vulnerable Circumstances*

■ Bertrand and Morse(2011)는 단기대출자들에게 대출기간 중 예상되는 총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을 보임

-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100개의 전국 단기대부업(Payday Lending)지점에서 단기대출을 한 1,4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함
- 임의로 구분한 처치집단에는 단기대부(Payday Lender)⁴⁾와 신용카드에 대한 상환금을 비교한 봉투를 제공하였는데, 처치집단이 추가적인 단기대부를 받을 확률은 6% 감소했으며, 비교집단에 비해서는 11% 감소했음을 보임⁵⁾

〈그림 1〉 단기대부와 신용카드 상환금 비교 봉투



How much it will cost in fees or interest if you borrow \$300	
PAYDAY LENDER (assuming two-week fee is \$15 per \$100 loan)	CREDIT CARD (assuming a 20% APR)
If you repay in:	
2 weeks	\$45
1 month	\$90
2 months	\$180
3 months	\$270
2 weeks	\$2.50
1 month	\$5
2 months	\$10
3 months	\$15

자료: Bertrand and Morse(2011)

■ 영국의 핀테크 서비스인 SalaryFinance나 Neyber⁶⁾는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월급에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음⁷⁾

- 근로자의 급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등 핀테크 서비스들은 낮은 채무불이행과 높은 대출실적을 통해 다른 대출 서비스에 비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음⁸⁾

4) Payday Loan은 소액, 단기 무담보대출로서, 대출여부는 채무자가 이전 급여명세서와 고용기록이 있느냐에 달려있음

5) Bertrand and Morse(2011), "Information Disclosure, Cognitive Biases, and Payday Borrowing", *the Journal of Finance*, 66(6)

6) <https://www.neyber.co.uk/>

7) Gandy et al.(2016)

8) 대출 또는 선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Salary Link'라고 부름. Baker and Kumar (2018), "The Power of the Salary Link: Assessing the Benefits of Employer-Sponsored FinTech Liquidity and Credit Solutions for Low-Wage Working Americans and Their Employers", *M-RCBG Associate Working Paper Series*, No. 88, Harvard Kennedy School

■ 아울러 저소득, 불안정 소득자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출방법 선택이 가능한 저축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Eve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사례가 될 수 있음

- Even은 불안정한 소득흐름을 가진 소비자가 소득평준화(Income Smoothing)를 할 수 있도록 기본옵션을 설계함⁹⁾
 - 예를 들어, 평균 급여보다 많은 소득을 얻은 주에는 증가분을 Even에 연동되어 있는 저축계좌에 예치하도록 기본 옵션을 만들어 놓고,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얻은 주에는 저축계좌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Even로부터 무이자신용을 통해 보충됨

■ 한편 필리핀과 인도에서 실시된 현장실험 결과는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제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유혹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필리핀 농촌의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한 시점이나 저축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인출할 권리가 제한되는 저축계좌를 제공하였는데, 1년 후 처치집단의 저축이 비교집단에 비해 81%p 증가했음을 보였음¹⁰⁾
 - 동 현장실험은 필리핀의 Green Bank of Caraga의 1,77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SEED(Save, Earn, Enjoy Deposits)라는 이름의 동 상품을 추천받은 710명 중 28.4%가 동 저축프로그램에 가입함
- 인도 농촌에서 실시된 현장실험에서는 특정목적으로 구분된 자금을 물리적으로 분류된 계좌에 두는 것과 저축목적에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저소득층의 저축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함
 - 동 실험은 2~7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은행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비교집단에게는 한 봉투에 급여를 지불하고, 처치집단에게는 두 개의 봉투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처치집단 중 한 집단에게는 다시 자신들의 자녀의 사진이 붙여있는 봉투에 급여를 지급함¹¹⁾

9) <https://www.even.com/>

Even은 은행이 아닌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Walmart과 파트너십을 통해 140만 명의 Walmart직원들이 Even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10) Ashraf et al.(2006), "Tying Odysseus to the Mast: Evidence from a Commitment Savings Product in the Philippin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11) Soman and Cheema(2011), "Earmarking and Partitioning: Increasing Saving by Low-income Household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

- 두 봉투에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64% 더 많이 저축을 했으며, 자녀의 사진이 붙여있는 봉투를 사용한 집단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함

■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들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의 고려는 정책수단 설계의 작은 수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금융실수를 발생시키는 편향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임 [kiri](#)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요약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2018. 3)되어 기존 양국 무역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한·중 FTA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최혜국대우조항 미비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최혜국대우조항 삽입, 내국민대우조항 이행 보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FTA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은 제도화 미비, 지리적 방대성과 격차 등을 이유로 일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보다는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할 것을 약속함¹⁾
 -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는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유예를 요청한 것임
 - 한·중 FTA 발효 후 2년 이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2017. 12)하고 1차 및 2차 후속협상(2018년 3월, 7월)을 진행하였고, 2020년 3월 이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후속 협상기간 2년)

1) 한·중 자유무역협정문(제22.2조와 부속서 22-가)

■ 중국의 서비스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양 국가가 모두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요하다고 인식함(〈표 1〉 참조)

- 2016년 중국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10년 전 대비 8.7%p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39.8%로 7.1%p 감소함²⁾
- 우리나라의 경우 對중국 서비스무역 수입 비중이 2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입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비중은 수입의 2배 수준임
 - 양국 모두 2017년에는 사드로 인한 경제적 제재의 영향을 받아 서비스무역 비중이 감소함
-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 부분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금융 및 보험영역의 경우 중국은 상품개발능력이 취약한 영역(건강, 연금, 자연재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³⁾
 - 반면 중국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표 1〉 서비스무역에서의 비중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서비스무역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중국 입장)							
수입	5.4	5.3	5.6	5.2	4.8	4.6	3.3
지급	6.6	7.4	8.9	10.2	9.6	9.9	6.8
한국 서비스무역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한국 입장)							
수입	14.6	14.3	17.7	19.9	21.4	21.7	17.8
지급	13.7	12.5	11.9	12.4	13.5	14.3	13.0

자료: 한국은행, 중국 국가통계국

■ 기존 한·중 FTA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⁴⁾ 일부 국가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2) KITA(2018. 3), 「중국 서비스무역 동향과 시사점」

3) 한·중 FTA 후속협상 대비 전문가 간담회(2018. 1. 11)

4) WTO 도하 아젠다(Doha-Development Agenda)의 선진적인 양허수준과 흡사하게 체결되었다고 평가됨(황기식, 최신영, 김세진(2018),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2-2』, p. 226

- 기존 한·중 FTA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앞서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하였다는 점과 중국 FTA 최초로 금융 부문을 신설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최혜국 대우⁵⁾’ 조항이 합의되어 있지 않음
 - 중국·호주 FTA(2015)와 중국·뉴질랜드 FTA(2009)에서는 최혜국대우 조항에 합의한 바 있음
- 한·중 FTA 협정문은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한 현행 중국 국내법상의 시장진입 관련 규제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혜택이 없음
 - 하지만 중국·대만 ECFA후속협상(2013 타결) 경우, 중국 시장진입자격요건에 대한 완화와 합자회사에 대한 대만측 보유지분의 범위를 높여줌⁶⁾
 - 중국·호주 FTA의 경우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한 설립자본요건 충족없이 상업적주재하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진입이 가능

■ 또한 중국 국내법의 진입장벽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입에 한계가 있어 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출자비율 제한으로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중국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49%까지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으며, 설립자본요건과 30년 이상의 영업경력, 그리고 2년 이상의 대표처 주재 등의 조건 등이 있음
- 또한 외국계 자본이 중국내 금융서비스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원천적으로 제지받고 있음
 - 손해보험업종의 경우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계 자본의 보험 중개 및 대리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중국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제한이 있음
- 중국·호주 FTA(2015년 발효)의 사례를 보면 한·중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보험산업의 경우 단기간 영향은 미미하였음(〈표 2〉 참조)
 -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수입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7% 상승하고 보험을 제외한 금융서비스 수입액은 연평균 36.1% 상승함
 - 반면, 최혜국 대우와 자본요건 완화에도 호주의 보험서비스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5)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특별한 대우를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3국과 차별을 금지함

6) 펀드관리회사설립 시 50%이상 지분참여, 양안합자증권회사 신설 시 최대 51%까지 허용, 시범지구내의 증권회사·선물회사·투자자문회사의 지분은 49% 혹은 50%까지 허용(윤성욱·신지연, 2015), (ECFA 협정문 부속서4)

〈표 2〉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무역 수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RG
총 수입액	6,281	6,996	8,141	9,700	11,260	15.7%
보험서비스	39	47	46	40	36	-1.8%
금융서비스	87	194	293	368	317	36.1%
총 수지액	4,475	4,899	5,912	7,252	8,644	17.9%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rade in Service Australia"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과 중국 금융부문 개방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표 3〉 참조)

-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됨
- 최혜국 대우 조항이 추가된다면 중국이 타 국가와 새로운 형태로 완화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도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 중국 국내법상 출자비율 제한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 출자비율은 49%에서 51%까지 상향되고, 3년 내에 출자비율 상한제도가 철폐될 것으로 공표함
 -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설립필수'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중국 내 보험서비스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중개업무 범위 개방과 대리업무가 가능해질 경우 보험서비스 판매가 이전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표 3〉 2018년 중국 금융부문별 개방계획

(단위: %)

구 분	주요 내용
은행 서비스 분야	• 외자 은행/자산관리社 출자비율 제한 폐지, 외자은행 지점 및 추가 독립법인 설립 가능 • 신탁/리스/자동차금융/금융중개/소비자금융 부문에 외국계가본 합작 장려 •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
보험 분야	• 생명보험 출자비율 상향(49%→51%), 3년내 제한 폐지 •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사의 보험대리업무 가능(상업적 주재하) • 외국계 보험중개社의 업무범위를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개방 • 외국계 보험회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설립필수' 규정 폐지
금융투자 분야	• 증권/기금/선물 출자비율 상향(49%→51%), 3년내 제한 폐지 • 합작 증권사의 중국내 주주 포함 규정 폐지 • 중외합작 증권사의 업무범위 제한 폐지 • 후강통 및 선강통 1일거래 한도 상향(130억→520억 위안), 강구통(105억→420억 위안)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1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사드보복 제재와 같은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혜국 대우조항 삽입은 물론 내국민 대우 조항 이행 보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약속이 필요함

- 한·중 FTA 서비스 무역 보호 수준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분쟁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정부의 사드제재와 같은 정치 리스크에 한국 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⁷⁾
- 금융기관의 인허가의 경우, 중국 국내법상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kiri](#)

7) 황기식 외(2018), 전제서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 향후 수년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험자(정부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 및 모범 사례 홍보 확대,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도 수도권 폭염 일수는 25.8일로 자연재해보험에 6,197억 원의 손해(손해율 226.5%)가 발생했던 2012년(11.3일)에 비해 14.5일이나 더 많았음¹⁾
 - 최근 정책성재해보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2012년보다 더 클 수 있음
 - 최근 연 보험료가 30% 내외로 성장하고 있음²⁾
- 올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³⁾
 - 2018년 8월 16일 기준으로 572만 마리의 가축 폐사, 2,90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
 - 2018년 8월 15일 기준으로 고수온과 적조로 수산물 152만 마리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수산물 가격이 인상됨
 - 여름철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8월 농

1) 기상청 보도자료(2018. 8. 17) 참조

2) 2015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2012년 대비 70% 이상 성장함. 2012년 보험료는 2,735.6억 원, 2015년 보험료는 4,655.4억 원이었음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8. 8. 16),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조

산물 평년 대비 도매가격 인상률은 배추 50%, 무 66%, 수박 54% 등임⁴⁾

- 또한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쓰라삐룬과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가 가중되었음⁵⁾

■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⁶⁾,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리스크와 보험계약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가보험료(사업비)를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 손해보험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 리스크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음
 -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 손해율⁷⁾까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손해율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부담함

〈표 1〉 자연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리스크 분담

자연재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리스크 분담
농작물재해보험	정부50%, 지자체 15~40% 지원 ¹⁾	보험회사가 손해율 150~180%까지 부담, 초과분 정부 부담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정부 50%	보험회사가 손해율 150%까지 부담 ⁴⁾ , 초과분 정부 부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순보험료 ²⁾ 의50%, 부가보험료 ³⁾ 의100%	
풍수해보험	정부 55~92%	먼저 보험회사가 준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초과부분을 국고 지원 ⁵⁾

주: 1) NH농협손해보험에는 이같이 나와 있고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서』에는 순보험료의 50%(일부 농작물의 경우 40~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음

2) 순보험료는 보험료 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보험료 부분임

3)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임

4) 수협과 재보험회사가 보상

5) 최근 국가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40,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참조

자료: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서』; 농협손해보험(<https://www.nhfire.co.kr/>); 수협은행(<https://www.suhyup-bank.com/>);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강수진(2018),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분석 및 위험분산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참조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3), “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업피해 예방 총력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3), “농식품부, 호우 및 태풍(쓰라삐룬) 피해 총력지원” 참조

6)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음

7)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

■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담보, 사업주체, 근거법, 소관부처 등은 <표 2>와 같음

<표 2>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내용, 근거법 및 소관 부처

자연재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업자	근거법	소관부처
농작물 재해보험	각종 자연재해 ¹⁾ , 조수해, 화재, 병충해 ²⁾ 로 인한 농작물 손해	NH농협손해보험	농어업재해 보험법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수입 보장보험	자연재해 ¹⁾ ,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보상			
가축재해보험	화재, 풍수해, 폭염, 폭설, 질병 ²⁾ 으로 인한 가축 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손해, 자연재해 및 낙뢰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수산물 손해	Sh수협은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해양수산부
풍수해보험	주택 및 온실에 대한 각종 자연재해 ³⁾ 손해 보상	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행정안전부

주: 1)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

3)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보상 내용은 각 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자료: 농협손해보험(<https://www.nhfire.co.kr/>); 수협은행(<https://www.suhyup-bank.com/>) 및 각 법령 참조

■ 향후 수년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험자(정부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영국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발생한 고온현상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음⁸⁾
-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경우,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정부의 보험료 보조, 자연재해보험의 빠른 시장 확대, 다수의 보험사고 후 보험 가입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보험자(정부, 보험회사)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 및 모범 사례 홍보 확대,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8) 영국 기상청(2016), "Five-year global temperature forecast: 2016-2020", <https://www.metoffice.gov.uk/news/releases/2016/decadal-forecast> 참조

-
- 풍수해보험의 지진담보와 같이 캣모델(Cat-Model)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을 타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누적 경험요율이 활용되는 타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가 누적될 수 있음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 대응 요령과 성공 사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보험수요가 확대되고 대형 자연재해 발생할 시 보험자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현행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한도를 두거나 결손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제도에 명시되어 있음(최창희 2017⁹⁾; 강수진 2018¹⁰⁾ 참조) [kiri](#)

9) 최창희·한성원(2017),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보험연구원

10) 강수진(2018),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분석 및 위험분산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양승현 연구위원

요약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금융기관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준법감시인 위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실질적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1% 이상의 준법지원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함. 혁신 방안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에 근간을 둔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및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위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쟁점 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임

■ 지난 10월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이하 ‘혁신 TF’이라 함)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이라 함)을 발표함

- 내부통제는 회사의 이사회 및 전 임직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회사의 업무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령 등의 준수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보장¹⁾을 말함
- 복잡다기해지는 금융환경 및 금융시장 부실의 실물경제 전이위험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사전적 예방은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됨

1) 박재영(2014),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p. 7 참조함

-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 이루어져왔으나²⁾, 실질적이고 유효한 내부통제 체제 구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 통제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학계 등 6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TF를 발족함

- 혁신 TF는 약 4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i) 금융기관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ii)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iii) 각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제도 혁신으로 구성된 혁신 방안을 마련함

- 보고는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i) 및 (ii) 부분 혁신방안 및 (iii) 부분 중 보험약관 검토 의무화, 보험금 지급절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보험권역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한하여 검토함

■ 첫째,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

구분		세부내용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역할 및 책임명확화	① 이사회·대표 이사의 최종적 책임 명문화	- 내부통제의 최종적 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임을 법에 규정 - 이사회가 내부통제 체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 -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기본정책을 집행할 책임 부담
	② 일반 임원의 관리·감독 책임	소관 업무 관련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조치방안·기준 마련 등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
	③ 중요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중요사항(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의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 초래 시 제재
	④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주요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 인사 평가 시 준법감시인 의견을 반영토록 유도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감시조직 역량 제고	① 준법감시인 지위·전문성 강화	-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 - 내부 직제상 실질적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유도 - 자격요건으로 내부통제 업무 경력(예: 2년) 추가
	② 위법업무 정지 요구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위법업무 정지요구권 법규화 및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정지요구 의무화

2) 기존에는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내부통제에 관해 규율하고 있었으나, 2016년 이래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기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음

구분		세부내용
	③ 지원조직 적정 인력 및 전문가 확보	-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지원인력 확보 - 내부통제 전문인력의 순환근무 예외 인정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IT, 파생거래 등) 인력배치 등 지원인력 전문성 제고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①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② 사후보고제 강화 ③ 지배구조 내부규범 충실작성 의무	- 원칙적으로 모든 임원에 대하여 전문성(금융에 대한 지식과 업무경험), 도덕성, 공정성 및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 도입 - 적격 판단 근거 제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성실한 자체적 자격 심사 유도³⁾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마련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① 대주주·계열회사 거래 ② IT 업무영역 ③ 국외 영업점	-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구체적으로 마련·운영 - 내부통제위원회는 해당 거래 시 법령·내규 위반 소지를 파악해 이사회 보고 - 전산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 중 “중요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업무규정에 반영·전산 체계에 충실히 구현⁴⁾ - 필요 시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함 - 해외 진출 시 준법감시 인력, 보고 체계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

■ 둘째,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단기성과보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구분		세부내용
내부통제 운영현황 공시 및 자체점검 강화	① 내부통제 체계 운영 현황 공시 ② 성과평가 운영 원칙 규정 ③ 임직원 채무 현황 파악제도 도입	-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현황을 공시(영업 비밀 등 제외) -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준수 목록에 대한 확인 점검 제도 도입을 권장 - 단기성과보다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중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 -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는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게 함
교육·연수 강화	① 임직원 교육 의무화 ② 준법감시인력 교육 강화 ③ 자격증 도입	-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윤리교육 의무화·교육 이수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독려 방안 고려 - 금융감독원과 전문연수기관⁵⁾이 협력하여 금융기관 경영진 및 내부통제 담당자 대상의 연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화 -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감독 당국의	① 우수 금융기관 인센티브 등	- 제재 양정 시 감경 규정 적극 적용 및 감경 대상 확대(감독자 및 준법감시인) - 감독당국은 포상 등 추가적 유인책 마련

3) 혁신 방안에서는 감독기관에 의한 임원 적격성 심사 제도에 관해서는 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4) 혁신 방안은 그 예로서 다중 결제 등 전결권자 확인 절차, 경고 문구 확인, 관련 부서 통지 등의 통제방안을 들고 있음

구분		세부내용
지원강화	② 내부통제 경영 실태평가 강화	•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조정
	③ 내부통제사고 정보공유 강화	•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의 상위등급 부여 제한 •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

- 셋째, 보험권역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약관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및 분쟁사례를 참고하며,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

구분		세부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개선	① 보험약관 검토 의무화	• 상품 개발 시 법률전문가의 약관 검토 의무화
	② 보험금지급절차	•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의 내규 적시 반영 및 이를 위한 준법감시 부서 역할 제고
신용공여 관리절차 강화	① 신용평가 및 위험 관리체계 확충	• 새로운 형태의 신용공여 취급 시 시장 전망, 업계 동향 및 차입자의 경쟁력 등을 감안토록 함
	② 종합적·체계적 담보관리방안 마련	• 담보대출 관련 담보의 성격, 담보물 정기적 확인, 현장 실사 확대 등 담보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보험상품 표준내부 통제기준 마련	•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보험상품 관련 내부통제의 담당자·책임자, 점검 방법, 교육·점검 주기 등) 마련 필요
	② 판례·분쟁사례 공유	•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및 분쟁 조정 사례 확인

- 금융감독원은 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 밝힘

- 혁신 방안 중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 상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내 이행계획을 밝히고 시행세칙 개정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보도⁵⁾가 있었음
- 그러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등 대부분 혁신 방안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지배구조법령 또는 권역별 개별 법령 내지 감독규정의 개정이

5)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6) 더벨(2018. 10. 23), “금감원, 내년부터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한다” 기사 참조,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10220100031260001900&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법규 반영 여부 내지 방향은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자율규제적 사항으로서 법규로 강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혁신 방안은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 향후 법령 내지 감독규정 개정 추진 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는 물론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kiri**



주요국의 재해지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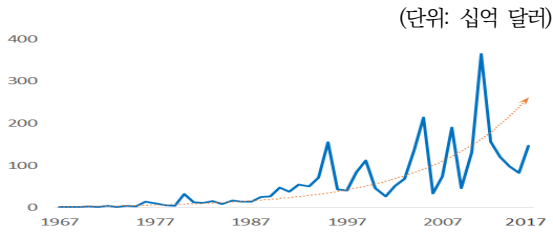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은 정부 주도(미국, 일본 등) 또는 민간 합동(유럽 주요국)의 재해지도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있음. 재해지도 구축 및 공유는 국민의 재해위험 인식 제고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인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재해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과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그림 1, 2〉 참조)

- 지난 50여 년간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2.3%(우리나라 6.5%) 증가하였으며, 기상 이변이 심화되면서 피해액의 변동 폭도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잦은 태풍·홍수 등으로 인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08~201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사망·실종 15명, 재산피해는 3,486억 원에 이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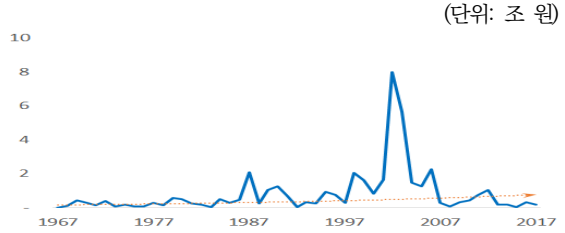
1) 2017년도에는 총 25회의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87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그림 1〉 세계 자연재해 피해액 추이



자료: EM-DAT: The Emergency Events Database-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UCL)-CRED, D. Guha-Sapir-www.emdat.be, Brussels, Belgium

〈그림 2〉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재해연보』

■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 또는 민관 합동으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재해²⁾위험 인식 제고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국가는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재해 발생에 대비한 주민 이주정책, 설계기준 강화 등 국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토 개발, 각종 보조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지적하고 있음³⁾

● 재해지도는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적절하게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험회사는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험 평가에 기반 한 요율산출 및 언더라이팅에 활용이 가능함

■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자연재해위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이라 함)은 1968년 국가홍수보험법 시행을 통해 도입된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이하 ‘NFIP’이라 함)에 의해 홍수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를 작성함

2)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3) 오윤경, 정지범 (2016),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 26

- NFIP에 가입한 주정부 및 지역공공기관 중심으로 정기적인 홍수보험연구(Flood Insurance Study)⁴⁾를 통해 강, 연안, 수문 등에 위치한 홍수위험지역의 데이터 수집하고 위험평가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100년 빈도 홍수발생 시 침수되는 지역인 특별 홍수위험지역을 표시함
- 홍수지도서비스센터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홍수지도를 통해 보험계약자 위험평가, 보험요율결정 등에 사용함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⁵⁾은 지진위험지도(National Seismic Hazard Map)를 작성하는데, 이를 건축 법규의 내진설계 규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거나 보험회사의 요율산출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지역별 지진리스크를 분석하여 색깔별로 구분해 표시한 지도로 6년마다 업데이트함

〈표 1〉 미국 FEMA의 홍수지도 작성 절차

단계	내용
계획	• 지역사회 요구조건 파악 • 데이터 수집 및 지역 홍수위험 검토 • 프로젝트 필요성 판단
조사	• 예비 홍수보험지도 및 홍수보험연구 보고서 작성 • 지역 공공기관 의견 수렴(피드백) • 홍수위험 요인 검토, 위험평가 방법, 홍수위험 경감조치 계획 등의 논의
의견 수렴	• 예비 홍수지도 발표 • 주정부 지역담당자(Consultation Coordination Officer: CCO)미팅 및 대중 공개 • CCO미팅 후 90일 내 이의신청기간 • FEMA 승인 후 반영
적용	• 새로운 홍수지도 최종결정서 송부(발효 6개월 전) • 지역사회,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조례 개정 • 홍수지도서비스센터를 통해 공표, 보험회사 새로운 홍수보험요율 적용

자료: FEMA, <https://www.fema.gov>

■ 일본도 재난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상 정부 주도로 재해대응책을 수립해왔으며, 다양한 재해에 대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표시한 홍수재해지도(洪水避難地図)와 전국지진동예측지도(全国地震動予測地図)를 작성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4) NFIP에 가입한 지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짐

5)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의 자연과학 연구 및 관련 지도작성을 담당하는 기관임 (<https://www.usgs.gov>)

- 홍수재해지도는 홍수범람위험구역도를 근거로 1995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침수 정보, 피난정보 등을 알기 쉽게 도면에 표시함으로써 유역주민에게 침수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수방 및 피난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또한, 지진조사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지진동예측지도⁶⁾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지진보험요율을 산출하고 건물 위치·구조·내진설계에 따른 요율 차등에 활용하고 있음
 - 지역별 30년 이내에 진도 6약(弱)⁷⁾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색깔별로 표시
- 한편, 유럽 주요국은 정부와 보험협회가 협력하여 국가홍수지도를 개발,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난보험 관련 위험평가 및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 독일은 주 정부와 독일보험협회(German Insurance Association: GDV)와 협력하여 지역별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정보를 담은 자연재해정보맵(ZÜRS)을 개발함⁹⁾
 - 재해별 발생위험도를 10, 50, 200년 주기로 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본인 거주지의 재해 리스크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홍수보험 언더라이팅에 활용함¹⁰⁾
 - 오스트리아는 2002년 여름에 폭우, 홍수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겪은 후 오스트리아 정부와 보험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GIS 기반의 국가홍수재해지도인 HORA를 개발하여 2006년 6월부터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고 있음¹¹⁾
 - 인터넷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잠재홍수위험 확인이 가능
 - 프랑스 또한 공공기관, 보험사, 기술사가 협력하여 보험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홍수지도(Classification Of Flood Zones)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 및 회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6) 2018년판 전국지진동예측지도가 6월 26일에 발표됨

7) 일본은 일본기상청(JMA) 진도 기준을 사용하며 총 8단계 중 '진도 6약'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기준 '진도 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람이 서있는 것이 곤란한 수준의 진동임

8) EU 홍수지침(2007/60/EC)에 의하면 EU 회원국은 홍수재해지도(Flood hazard Map), 홍수위험도지도(Flood Risk Map)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9) 2003년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주 정부들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재해피해 예방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주들로 점차 확산됨

10) 홍수보험의 침투율이 ZÜRS 도입 이전 19%(2002년)에서 도입 이후 32%(2013년)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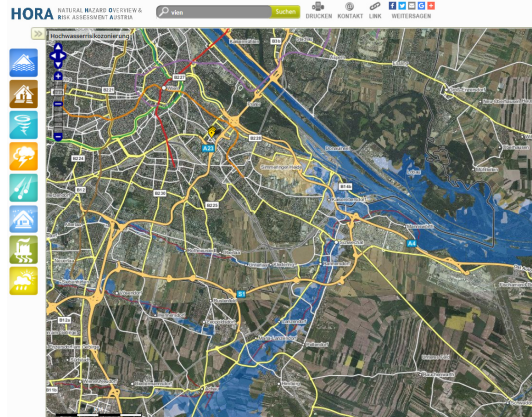
11) <https://www.hora.gv.at>

〈그림 3〉 미국 홍수지도 검색화면



주: 미국 뉴욕시(City of NewYork) 남부 검색 화면
 자료: FEMA Flood Map Service Center(<https://msc.fema.gov>)

〈그림 4〉 오스트리아 홍수지도(HORA) 검색 화면



주: 오스트리아 빈(Wien) 근처 검색 화면
 자료: <https://www.hora.gv.at>

- 우리나라도 최근 홍수·태풍·지진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해지도의 사회적 공개를 확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체별로 재해지도¹²⁾가 작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인에 대한 보급이나 보험 회사 등 민간 기업의 활용 수준은 미흡함 [kiri](#)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재해지도를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 3가지로 분류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8년 9월 14일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대한 영향력 제한, (ii)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 강화, (iii)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투명성 강화 및 (iv)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등임. 쟁점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외부 평가 의무화’, ‘고액 연봉 직원 보수 공시’ 등은 최종 발의된 법안에서 제외되었음. 개정안은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 되었던 개선 방안은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포함), ② CEO 선임 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포함), ③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④ 감사 업무 실효성 제고, ⑤ 감사위원 선임 요건 개선, 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⑦ 임직원 보수 공시 강화 및 내실화(고액 연봉 임직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포함) 및 ⑧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¹⁾
- 입법예고 된 개정사항 중 (i)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²⁾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³⁾로 확대하는 방안, (ii) 사외이사 연임 시

1) 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2018. 3. 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최다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 p. 2)

3)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 p. 2)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iii) 임원이 아닌 직원의 연봉액을 공시하는 방안, (iv)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방안 및 (v)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⁴⁾

- 반면, 참여연대에서는 이사에 대한 통제가 미비한 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 대주주 지위 취득 시와 유지 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⁵⁾

■ 2018년 9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제도 의무화, 고액 연봉자 개별 보수공시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및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6월 22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였음⁶⁾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며,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외부평가의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사항 이외에도, 규제의 실효성은 약한 반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되었음
 - 임원이 아닌 직원 중 고액연봉자의 보수액을 개별 공시하는 방안⁷⁾,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안(3월) 및 정부발의안(9월) 비교

구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입법예고안	정부발의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합리화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개편: - 최대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 - 법인주주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기준 신설 - 의결권 제한명령 부과대상 명확화	32조	○	삭제

4) 연합뉴스(2018. 5. 7), “은행聯,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일부조항 반대”; 머니투데이(2018. 4. 3), “정부 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대폭 늘려야 할 판... 고민 빠진 금융권”; 서울경제(2018. 5. 13), ““급여 갖고 여론재판 하나”... 금융권, 고액 성과급 공시에 반기” 등

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2018. 4.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6)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2018. 6. 22), “제41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7) 참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공시 규정이 적용되어,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개인별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포함되는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게 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구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입법예고안	정부발의안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추가		○	○
	3) 주식처분명령 부과근거 신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CEO선임 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1) CEO 자격기준 내실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¹⁾ 을 법상 의무화	5조	○	○
	2)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이사 후보 추천 시 집합적 정합성 평가	12조	○ ¹⁾	○ ²⁾
	3)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현행) ‘의결권의 0.1% 이상’ → (개정) ‘의결권의 0.1% 이상 또는 직전 분기 말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 ³⁾	33조	○	○
	4)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6조	○	삭제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12조	○	○
임추위 독립성 강화	1)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 대표 이사 참여 금지	17조	○	○
	2) 임추위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
	3) 본인 추천 결의에 해당 위원 참석 금지		△ ⁴⁾	○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1)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보장 선언 규정	20조	○	○
	2)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에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대우		○	○
감사위원 선임요건 개선	1)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 재임기간 제한 - 사외이사 관련 규정 준용 - 동일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19조	○	○
	2)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직무전문성’요건 준용		○	○
	3) 감사위원 임기 2년 보장		○	○
	4)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		○ (보수위 겸임가능)	○ (임추위/보수위 겸임가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24조 27조	○	○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1) 고액연봉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 -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성과보수 2억 원 이상	22조	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	적용대상: ‘임원’ ⁵⁾
	2)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총 심의 대형상장금융회사 ⁶⁾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		‘심의’ 사항	‘설명’ 사항
	3)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수 독립성 의무화		○	○

구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입법예고안	정부발의안
	-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 체계 마련 의무화(현행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체계와 동일)			

주: 1)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2) 금융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정합성 명시

3) 후단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한함

4) 입법예고안에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였으나, 정부발의안에서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였음

5) 다만, 정부발의안 제22조 제5항 제4호는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함으로써,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원이 아닌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음

6)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

자료: 금융위원회 간담회 자료(2018. 3. 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2018. 9.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부발의안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등 규제의 강도는 높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방안들이 최종 안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금융업계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 일부 방안을 철회하였음
 - 효과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규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규제 공백을 보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종안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이 제외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한 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은 기존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소수주주권 행사 확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각종 절차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위와 같은 규제들은 CEO에 대한 사외이사 및 소수주주 등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임
 - 그러나 지배구조법상 감시 외에도, 외부감사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업에 대한 감시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 기구의 비대화 및 감시 절차의

복잡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도입으로 내부통제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CEO 등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내부통제를 매개로 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 CEO 등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관련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 점검, 위반 시 징계조치 등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개정안 제24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5조 및 별표),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회사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내부통제 관련 문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⁸⁾과도 관련되는데, 향후 국회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규제 수준 및 적정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KiRi](#)

8)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2018. 10. 17),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승현(2018. 10. 29),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KiRi 리포트』 참고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배상자력이 없는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반면 미국(39개 주)과 중국은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일본은 공적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제조물 사고 피해자를 구제함. 주요국들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는 생산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판매자 등 다른 주체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와 정부는 생산자가 손해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에서 피해자가 생산자 이외의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생산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사고 발생 시 생산자(제조업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음¹⁾
- 피해자가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제품의 생산자를 알려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³⁾
-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자력이 없더라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⁴⁾')에 가입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 유통업자, 대여자 등 포함

3)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L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면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계약 시 판매자가 생산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의 경우 유통계약 체결 시 생산자가 충분한 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⁵⁾

● 따라서 생산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움

- 예를 들어, 2016년 법원이 가슴기 살균제 생산자인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⁶⁾

●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물 인증 표준 제도는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⁷⁾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및 분쟁조정 중재 서비스만을⁸⁾ 제공함

■ 이에 반해 미국의 39개 주는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⁹⁾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조물 사고에 대해 판매자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

-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11개 주)

-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판매자는 생산자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30개 주)¹⁰⁾

- 생산자가 주법에 따라 처리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9개 주)¹¹⁾

■ 판매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판매자들은 제조물 사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함

5) 최창희·한성원(2018),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참조

6)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온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7) ‘e나라표준인증’ 참조

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참조

9) 이하 2개 이상의 주체로부터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층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라 지칭함

10)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5), “Selected Product Liability Issues: A 50-state Survey”; CRS Report for Congress에 따르면 알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컬럼비아 특별구(DC),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테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11) CRS(2005)에 따르면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등이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 유사한 조항이 입법교류평의회(ALEC: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의 모델법 ALEC(2018), “PRODUCT LIABILITY ACT”, Section 8.(Liability of product sellers.)에 제안되어 있음

- 미국의 판매자들은 생산자가 충분한 손해배상 자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PL보험을 이용해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관리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생산자와 물품 계약 시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높은 수준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¹²⁾

■ 중국도 미국의 30개 주와 유사하게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중국은 「제조물품질법(產品質量法)」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음¹³⁾
 - 결함제조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제품의 결함이 생산자(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손해를 배상한 판매자(생산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손해를 구상(求償)할 수 있음

〈표 1〉 일본의 안전인증이 제공하는 공적 보험의 보상 한도

(단위: 억 원)

구분	대인		재산		수리비용	
	인 당	사고 당	사고 당	연간	사고 당	연간 총보상
SG마크	10	-	-	-	-	-
ST마크	10	20	2	-	-	-
SF마크	-	-	10	-	-	-
HAPI마크	10	30	5	10	50	200

주: 사고 당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당 한도에 상관없이 각 청구 건에 대해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1엔=10원)
 자료: 朝見 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 被害救済制度」, 国民生活, pp. 26~29

■ 일본은 공적 안전 인증제도 및 인증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보험으로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함

- 일본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물 사고에 대한 생산자 손해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임¹⁴⁾

12) 손해보험협회(2018), 「국내 일반보험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보험시장 조사 Phase 2」, p. 76 참조

13) 중국 「제조물품질법(產品質量法)」 제43조 참조

14) 일본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3조 참조

- 일본은 현재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¹⁵⁾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각 담당기관은 <표 1>의 보상한도에서 손해를 평가·보상함¹⁶⁾
 - 안전인증 획득이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 생산자들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¹⁷⁾
- 따라서 일본의 경우 생산자가 손해배상 자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인증과 함께 제공되는 공적 보험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표 2>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제조물 사고 보상 체계 비교

국가	손해배상책임 주체	비교
미국(39개 주)	생산자 또는 판매자	1) 제품의 안전성 강화: 생산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제품 안전을 관리해 안전성이 높아짐 2) 소비자 보호 강화: 다층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존재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짐
중국		
일본	생산자 또는 공적보험	
한국	생산자	주요국에 비해 제품 안전 관리 및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 판매자가 생산자를 밝혀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면제받을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산자 이외에 판매자, 혹은 공적보험을 통해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표 2> 참조)

- 주요국의 경우 생산자와 함께 판매자 또는 공적 인증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손해배상 자력 상실로 인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최소화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있음

■ 국회와 정부는 생산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5) SG마크, ST마크, SF마크, BL마크, HAPI마크 등

16) SG(Safe Good)마크는 유아용품, 노인용품 및 생활 보조 기구, 가구, 주방용품, 스포츠 용품, 자동차 부품, 기타 소형 공산품, ST(Safe Toy)마크는 장난감, SF(Safe Firework)마크는 불꽃놀이 용품, BL(Better Living)마크는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제품, HAPI(Japan Home-health Apparatus Industrial Association)마크는 가정용 건강기기의 안전 인증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임; 朝見 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 被害救済制度」, 国民生活, pp. 26~29 참조

17) ICLG(2016),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n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6", Report, p. 156 참조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호주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생명보험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시행함. 이에 따라 초년도 보험료의 130%까지 지급하던 선취수수료를 2020년까지 60%까지 낮추고, 유지수수료 비중을 갱신보험료의 10%에서 20%로 높임. 또한 2년 이내 계약해지 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Clawback)을 도입하여 판매자에게 적어도 2년 정도의 계약유지책임을 갖도록 함. 우리나라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유지기간 중 서비스(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정책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이하, 'ASIC')는 2009년 Ripoll 보고서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 인센티브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중심의 정책수단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함

- 1997년 Wallis 보고서¹⁾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상품 간의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권고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단일화된 상품공시제도가 도입됨
 - 이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더불어 수수료 및 자문보수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
-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판매자 보상정책(Remuneration)에 따른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중심 정책이 소비자 보호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2009년 Ripoll 보고서²⁾에서 수수료(Commission), 판매실적연동 보너스(Volume Bonus), 비금전적 보수(Soft Dollar Reward) 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판매자와

1) Stan Wallis(1997. 3), *Financial System Inquiry Final Report*

2)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2009. 11), "Inquiry into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Australia"; 동 보고서는 위원회 의장인 Bernie Ripoll의 이름을 따 Ripoll Report로 칭함

소비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하여 부적절한 상품권유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함

■ 금융당국은 2013년 7월, Ripoll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투자형 금융상품 자문 시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금지를 골자로 한 미래금융서비스개혁(Future Of Financial Advice, 이하, 'FOFA')을 단행함³⁾

- FOFA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 이익 최선 의무(Best Interests Duty), ②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 금지, ③ 판매한 금융상품의 숫자나 규모에 비례한 보수청구(Volume Payments) 금지 ④ 비금전적 보수(Soft Dollar Benefit) 금지 ⑤ 자문계약 공시 및 매 2년마다 고객의 명시적 동의 등임
- 단, 생명보험·손해보험·소비자신용보험상품에 대한 자문 보수 등은 '이해상충 보수 금지' 적용에서 제외함⁴⁾

■ FOFA 이후 2014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⁵⁾에 따르면, 판매자의 보상체계에 따라 자문의 질과 상품해지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특히 선취수수료 체계하에서 해약률이 높고 자문 등 유지관리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⁶⁾

- 본 보고서에서는 초년도 보험료의 130%에 이르는 높은 선취수수료(Upfront Commission)로 인한 과도한 승환계약(Churning)의 심각성을 지적함
 - 계약해지율은 선취수수료 체계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급수수료 체계하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임(〈그림 1〉 참조)
- 또한 자문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취수수료 체계하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적법한(고객의 이익 최우선)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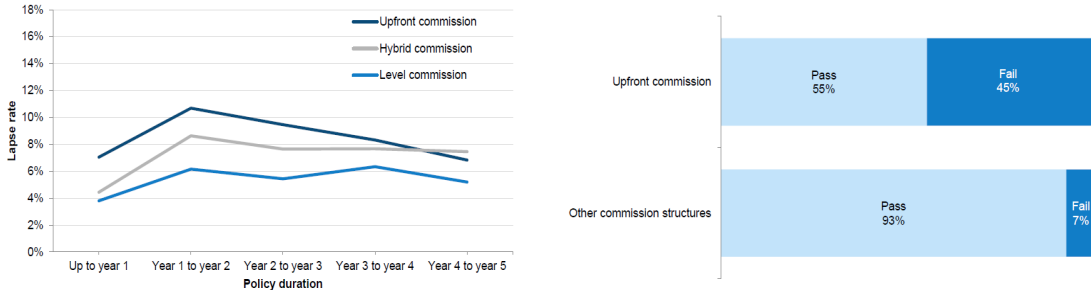
3) <https://asic.gov.au/regulatory-resources/financial-services/future-of-financial-advice-reforms/>

4) 연금계약(Superannuation) 내 단체생명보험계약 등은 FOFA 규정의 적용을 받음;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2018. 3), *Life Insurance Industry*

5) ASIC(2014. 10), "REPORT 413: Review of Retail Life Insurance Advice"

6) 이하에서 수수료(Commission)라 함은 생명보험상품의 판매 및 유지관리기간 중 자문(Advice)의 대가로서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함

〈그림 1〉 판매자 보상체계가 계약유지율 및 자문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수수료체계별 계약해지율〉 〈수수료체계에 따른 자문의 질¹⁾〉



주: 1) 설문조사 결과, 자문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Pass, Fail로 표기함

자료: ASIC(2014. 10), "REPORT 413: Review of Retail Life Insurance Advice"

■ 이에 생명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유지관리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보수규정(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을 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함⁷⁾

- 선취수수료 중심의 보상체계에서 상품판매자가 고객의 이익보다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적절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를 도입함

■ 생명보험보수규정 개정안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선취수수료 수준을 낮추고 유지수수료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임

- 생명보험 판매자가 받는 선취수수료의 최고한도를 2018년 초년도 보험료의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차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유지수수료 한도는 갱신보험료의 20%로 상향 조정함
- 또한 판매된 금융상품의 숫자나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판매실적연동 보너스를 금지함

7) Life Insurance Framework (LIF) reform으로 칭함: Corporations Amendment (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s) Act 2017

〈표 1〉 호주 생명보험 판매수수료(Commission) 변화

수수료 형태	제도 개정 전(2018년 이전)		제도 개정 후
	수수료 규모	유지수수료(On-going)	
선취수수료 (Upfront)	초년도 보험료의 130%	갱신보험료의 1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지급 가능	• 2018년: 초년도 보험료의 80%, 2019년: 70%, 2020년: 60% • 유지수수료: 갱신보험료의 20% •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금지 • 선취수수료 환수기간(Clawback Period) 2년 적용
복합수수료 (Hybrid)	초년도 보험료의 70%	갱신보험료의 2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지급 가능	
분급형 (Level)	초년도 보험료의 30% * 매년 정률방식 (Flat Rate) 적용	갱신보험료의 3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지급 가능	

자료: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2018. 3), *Life Insurance Industry*

■ 또한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Clawback Arrangement)을 도입함

-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취수수료 전액이 환수되며, 2차년도 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취수수료의 60%가 환수됨
- 또한 보장범위 조정 등에 따른 보험료 감소 시에도 초년도에 수취한 수수료의 일정비율(1차년도 100%, 2차년도 60%)에 보험료 감소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함

〈표 2〉 계약해지 및 보험료 감소에 따른 수수료 환수 조항

보험기간	해약	보험료 감소
1차년도	초년도 보험료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의 100% 전액 상환	초년도 보험료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의 100%에 보험료 감소비율을 적용한 후 상환
2차년도	초년도 보험료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의 60% 상환	초년도 보험료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의 60%에 보험료 감소비율을 적용한 후 상환

자료: ASIC(2017), "REPORT 527: Response to submissions on CP 245 Retail life insurance advice reforms"

■ 우리나라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계약유지기간 중 자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정책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내 법령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사의 경영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판매수수료) 이연한도(감독규정 §6-3), 저축성보험 상품신고 기준(감독규정

§7-51), 예정사업비 제한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간접 또는 자율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지급수수료가 과도하다는 평가임

- FY17중 선지급수수료⁸⁾ 지급액은 생명보험 3.8조 원, 손해보험 3.1조 원으로 연간 수당지급액(생보 7.8조 원, 손보 6.3조 원)의 49%임⁹⁾

- 또한 국내 일부 채널의 경우, 시책비 등 고액의 판매수수료가 초기에 지급되나 환수대상 기간¹⁰⁾이 짧아 특정 회차 이후 해지 시 차익거래 발생이 가능한 실정임 [kiri](#)

8) 신계약 체결 익월에 설계사 등 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시책·시상비 포함)임

9)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

10) 통상 GA채널의 환수대상 기간이 시책비의 경우 6개월, 판매수수료는 11개월 수준임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김석영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증권,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6년 9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의 겸업화가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노출됨. 이에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함.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임.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중국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중국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으로 구성된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였음¹⁾

- 중국 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1997년 이전까지 증권시장을 제외한 기타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기능을 함께 수행하였음
 - 1992년 10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증권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설립되었음
- 1998년 11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 2003년 4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인민은행에서 각각 분리되어 설립되었음
- 2003년 4월부터 인민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 및 통화정책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각각 증권, 은행 및 보험 부문의 감독기능을 수행함
 - 인민은행,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동일한 행정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종속관계가 없음

1) 중국 정부는 1997년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제1차 전국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에서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

- 인민은행은 정부기관이며 증감회, 은감회 및 보감회는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²⁾(한국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임

■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은행 및 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및 회사 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 2017년 은행업과 보험업 전체 자산규모는 252조 위안, 17조 위안으로 2001년 17조 위안, 5조 위안과 비교할 때 각각 235조 위안, 12조 위안이 증가함³⁾
- 2016년 은행은 273개로 2004년 128개보다 145개가 증가하였고, 2016년 보험회사는 158개로 2004년 54개보다 104개가 늘어났음⁴⁾
 - 2016년 중국의 은행 가운데 대형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및 농촌상업은행은 각각 5개, 12개, 134개, 1,114개임
 - 2016년 중국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각각 77개, 81개임

■ 2006년 9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의 겸업화가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노출함

- 2006년 9월 보험회사의 비상장 은행 지분 투자가 허용되었고, 2012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의 은행 등 상장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 한도는 크게 상향되었음
- 2012년 하반기부터 일부 중국 보험회사(안방보험, 전해보험 등)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입을 통해 은행 및 부동산 기업을 인수하면서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18년 3월 여러 상장 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한 안방보험은 재무건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영권이 중국보험안정기금에 일시적으로 인수되었음
- 이는 중국 증권시장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증감회는 보감회와 서로 간의 종속관계가 없고, 정보공유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의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행위에 감독조치를 취하지 못함

■ 2012년부터 P2P금융 등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2016년 일부 P2P금융 기업이 다단계 금융사기로 적발되면서, P2P금융 감독 기구인 은감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가 문제시됨

2)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지만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음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7. 7),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2016年报”

4)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7. 2), “2016年人身保险公司原保险保费收入情况表”, “2016年财产保险公司原保险保费收入情况表”

- 2016년 1월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e쭈바오 사건의 피해자는 90만 명, 피해 규모는 756억 위안(한화 약 12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은감회가 P2P금융 등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산업정책과 감독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핀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은감회의 감독 정책업무 및 집행업무를 분리하고, 은감회는 감독집행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 수립 후 20년이 지난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은감회와 보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를 신설함⁵⁾
- 2018년 3월 은감회와 보감회의 합병 등 정부기관 조정 내용을 담은 '국무원기관개혁방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통과됨
 - 개혁방안은 은감회와 보감회가 수행했던 중대 법규 제정 및 건전성 감독의 권한을 인민은행에 이관하기로 명시함
 - 통합 이전까지 각각의 감독기관은 독립적인 동급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18년 8월 발표된 '은감회와 보감회의 인사 합병방안'은 총 39개의 은감회와 보감회 부서(은감회 24개, 보감회 15개)를 27개 부서로 축소할 것을 명시함
-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업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는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으로 커질 것으로 보임⁶⁾
- 중국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협력은 판매 계약 단계에 국한되어 보험회사는 은행을 판매 채널로, 은행은 보험 판매를 수수료 수익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업권별 감독규제체계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판매 제휴 이외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으로 과거의 업권별 감독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은행계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계 은행은 고객 니즈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개

5) 2017년 4월 보감회 전(前)주석 상준보(项俊波)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보감회 주석 자리가 공석이 되고, 보감회 내부의 반발이 적어 통합에 큰 문제가 없었음. 은감회는 36개 성(省)급 파출기구 외에도 306개 시(市)급 파출기구 및 1,730개 현(縣)급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약 2만 5천 명인 반면 보감회는 성(省) 및 시(市)에서 36개 파출기구를 설치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약 4천 명으로 은감회 직원 수보다 적음

6) 凤凰网(2018. 3), "银保合并如何影响银行业"

인자산관리, 보험 등 맞춤형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⁷⁾

-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행위규제를 두 개의 감독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쌍봉형 금융 감독체계, 건전성 감독기관 및 행위규제 감독기관 외에 재정부, 중앙은행 등 감독유관기관들 간의 정책공조 및 협력을 위한 협의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감독기관 및 감독유관기관 간의 협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함
-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 신설된 은보감회가 향후 증감회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중국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중국시장의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 통합으로 인한 중국 은행업과 보험업 결합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여 국내금융시장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편이 검토되어야 함
-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새로운 감독체계에서의 사업가능성 및 성장성을 점검해야 함 [kiri](#)

7) 中国新闻周刊网(2018. 3), “银保合并背后的监管逻辑”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중국은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렴한 보험료의 소액간단보험을 구매하여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받고 있음. 대표적인 소액간단보험으로 반송보험, 항공지연보험, 교통체증보험 등이 있음. 중국 최대 온라인전문회사인 중안보험은 인슈어테크 기업과 활발한 제휴로 젊은층 대상의 소액간단보험 판매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향후 디지털 기술과 보험산업의 융합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시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의 인슈어테크 활용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중국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슈어테크가 부상하고 있음¹⁾

- 중국의 인터넷·유통 플랫폼 사업자(ABTJ²⁾ 등)들은 14억 인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보험산업에 진입하면서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보험료 기준으로 중국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5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에 1,740억 달러로 연평균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 중국 온라인보험시장은 2017년 기준 1,835억 위안으로 2011~2017년 동안 연평균 96% 이상으로 고속 성장함(〈그림 1〉 참조)

1)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Sabine L. B(2018)에서는 최근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으로 인슈어테크의 확대를 주목함(Sabine L. B.(2018), *The Insuretech Book*, p. 95~97)

2)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텐센트(Tencent), 징둥(Ji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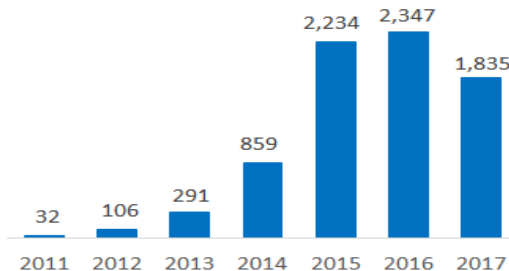
3) Oliver Wyman(2016), "China Insuretech"

■ 중국에서는 인슈어테크의 활용 확대로 보험 상품의 개념이 장기간 동안 전통적인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위험 보장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구매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구매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 수요 발굴과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험료의 보험상품 제공이 가능해지고, 인터넷⁴⁾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존 보험상품과 판매 채널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생활 밀착형 상품(이하 ‘소액간단보험’) 개발 및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 1〉 중국 온라인보험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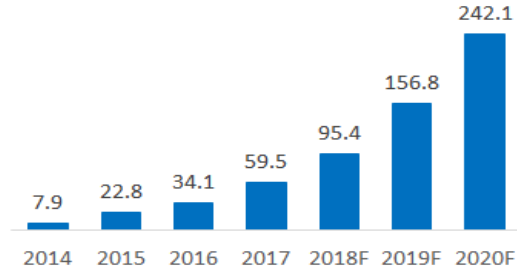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주: 2011~2017년 연평균 성장률 96%
자료: CIRC

〈그림 2〉 중안보험 보험료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위안)



주: 2014~2017년 연평균 성장률 96%
2014~2020년 연평균 성장률 77%
자료: DBS Bank(2018. 6), *China Fintech Sector*, p. 26

■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소액간단보험으로는 반송보험, 항공지연보험, 교통체증보험, 주차위반딱지보험 등이 있음(표 1) 참조⁵⁾

- 반송보험(Shipping Return Insurance)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제품을 쇼핑몰로 반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를 보장하는 상품임

4)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6년 6월 기준 7억 1천만 명으로 이는 미국과 유럽의 이용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12), 「중국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5) 이 외에도 필러주사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개인·기업용), 반려동물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실종보험 등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음

-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결제창에서 반송보험을 원클릭으로 손쉽게 가입 가능하며, 과거 반송이력 및 구매 상품정보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결정됨
-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용자는 2016년 5.3억 명으로 2012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거래규모는 2016년 3천 288억 위안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1% 성장함⁶⁾
- 항공지연보험(Flight Delay Insurance)은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과정 없이 실시간 비행 정보에 근거하여 자동 보상함
 -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안보험의 경우 항공편 취소 시 100위안을, 출발시간 4시간 이상 지연 시 200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함(보험료, 30위안)
 - 중국의 항공편 지연시간은 평균 43분(전 세계 27분)이고 전 세계 항공편 정시 운항률 조사에서도 중국 항공사가 하위 5위권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항공기 지연출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⁷⁾
- 교통체증보험(Traffic Jam Insurance)은 교통 혼잡, 사고 발생 등으로 일정 시간 이상 저속 주행을 하게 될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GPS·텔레매틱스에 의한 소비자 운전 패턴과 교통상황 감지를 통해 자동 보상함
 - OK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속 20km 이하로 5분 이상 주행 시 운전자에게 5위안짜리 주유쿠폰으로 보상하며, 한 번의 주행으로 최대 14위안까지 주유쿠폰을 제공함(보험료, 하루 1위안)
 - 전 세계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조사에서 상위 15위권에 중국의 5대 도시(충칭, 주하이, 광저우, 스자좡, 심천, 베이징)가 포함됨⁸⁾
- 주차위반딱지보험(Parking Ticket Insurance)은 주차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와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임
 - 중국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과태료(평균 200위안)와 함께 벌점(2점)이 부여되는데, 연간 벌점이 12점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주차위반에 대한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낮음

6) KITA Market Report(2017. 11. 22),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 및 시사점」

7) 한국일보(2017. 11. 4), “중국 공항, 평균 43분 지연 출발... 이유가 따로 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11041786507744>

8) TomTom(네덜란드 네비게이션 업체)이 48개국 390개 도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의 교통량을 추적·조사한 결과임

〈표 1〉 중국 보험회사의 소액간단보험 사례

상품명	보험회사	보장 내용
반송보험	중안보험 (众安保险)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물품을 반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를 보장(보험료: 약 1위안)
항공지연보험		항공편 취소 시 100위안을, 출발시간 4시간 이상 지연 시 200위안의 보험금을 지급(보험료: 항공편당 30위안)
교통체증보험	OK자동차보험(OK车险)	시속 20km 이하로 5분 이상 주행 시 운전자에게 5위안의 주유쿠폰 제공(보험료: 하루 1위안)
주차위반박지보험		주차위반박지를 받는 경우 과태료의 50%와 처리비용 지급(보험료: 1주일 1위안)
필러주사보험	화하이 보험 (华海保险)	필러주사의 부작용을 보장받는 보험(상품가격: 50위안, 보장기간 5일)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Wall Street Journal(2017. 1. 11), "Need 'Love Insurance'? China Is Your Place"

■ 중국의 최대 온라인 보험회사인 중안보험⁹⁾은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활발한 제휴를 통한 소액간단보험 판매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중안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2017년 현재 59.5억 위안으로 2013년 설립 이후 연평균 96%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으로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음
 - 2017년 3월 기준 5억 8,200명의 소비자에게 80억 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함
- 중안보험의 성장배경에는 인터넷에 친숙한 1980~90년대 출생의 젊은층¹⁰⁾을 대상으로 고객 수요에 부응한 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실생활 위험보장, 저렴한 보험료, 온라인 가입 등)을 통해 기존 보험회사와는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전개해왔기 때문임
- 또한, 온라인 쇼핑몰, SNS 메신저, 여행사, 항공사 등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제휴¹¹⁾를 통해 제휴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성장의 주요 동인을 확보함
 - 중안보험의 전체 보험료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반송보험),¹²⁾ 중국 최대 온라

9)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의 합작으로 2013년에 설립된 중국의 첫 온라인전문 보험회사임

10)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자회사)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 보험 소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보험 가입자는 2017년 3월말 기준 2.2억 명으로 이 중 80%가 20~30대 젊은층으로 조사됨

11) 중안보험은 2016년 말 기준 알리바바, 샤오미, 씨트립(Ctrip),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등 총 183개의 파트너사와 제휴함(CB Insights(2017. 7), "Unpacking Zhong An's IPO Prospectus")

12) 파트너십 체결 이후 온라인 상품과 반송보험 모두 30% 이상 증가하고, 구매상품에 대한 민원접수 건수도 30% 감소함(최창희·이규성·한성원(2017. 2), 「중국 중안보험 인슈어테크 사례의 시사점」, 『KIRI 리포트』)

인 여행사인 씨트립(항공자연보험), 휴대폰 판매회사인 샤오미(스크린파손보험) 등 파트너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이 80% 이상(2016년 86.5%)을 차지함

■ 디지털 기술과 보험산업의 융합이 한층 가속화되며 보험의 개념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험보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시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도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조만간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을 취급하는 온라인전문회사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음

■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인슈어테크의 활용이 새로운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함

● 중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감독정책을 유지¹³⁾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 기조가 중안보험이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됨

● 국내 금융당국도 소액간단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 보험가입 절차 간화, 소액 간단보험사 자본금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kiri](#)

13)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 문제 발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함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일반적인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권리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지 않으면, 제공받는 정보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따라서 정보 및 권리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노력이 필요함

■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에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수반됨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함
- 하지만 금융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구매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구매시점과 구매로 인한 효용을 얻는 시점이 다르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¹⁾

- 규제외 틀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및 판매자를 단순히 재분류하여 규제사각지대를 방지함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

- 판매자에게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판매자의 행위규제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판매자에 부과하고, 판매제한 명령권 등을 도입함
 - 소비자 측면에서는 비교공시, 자문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여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함
- 법안은 자문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문서비스의 범위, 수수료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자문서비스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현재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허용되고 있는 자문·일임업에서도 실무상 자문과 일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받고 일정금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순수 자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은 낮은 수준임
 - 게다가 자문서비스 제공자가 상품 소개로 인한 수수료를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경우,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추천을 할 수 있음²⁾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권리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역량³⁾을 확보해야 함
-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금융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임
 - 학술연구들에 따르면 금융에 대한 행태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이자율이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⁵⁾
 - 소비자가 충분한 금융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기가 어렵고 판매자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할 유인이 큼⁶⁾
 - 하지만 우리나라민의 금융역량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2) Che, Dessein, and Kartik(2013), "Pandering to Persuade", *American Economic Review*

3) 금융역량이란 소비자의 금융에 관한 지식(Knowledge), 금융을 다루는 행태(Behavior)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세(Attitude)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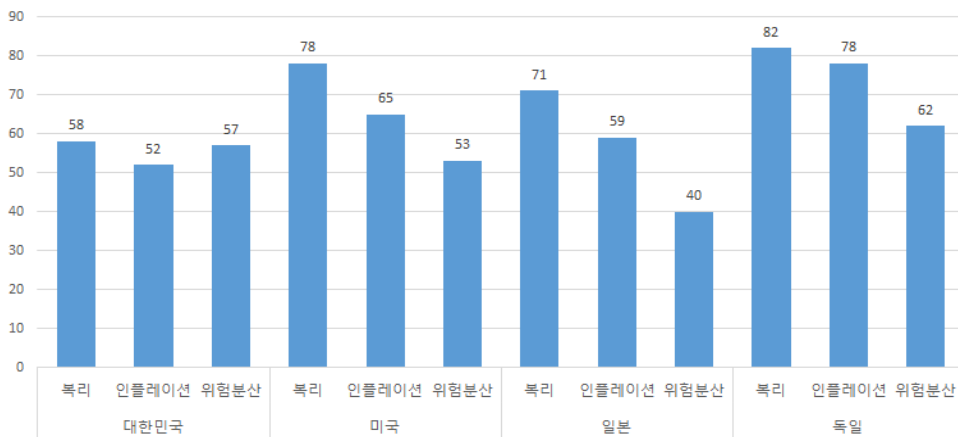
4) John Gathergood(2012),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over-indebtednes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 Annamaria Lusardi and Peter Tufano(2015), "Debt literacy, financial experiences, and overindebtedness", *Household Finance*

6) Chung and Harbaugh(2012), "Persuasive Product Recommendation", Working Paper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금융역량은 14.4점으로 OECD 평균 13.7점에 비해 높으나 선진국인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⁷⁾
- 금융역량의 주요사항인 복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위험분산에 대한 우리국민의 이해도는 각각 58점, 52점, 57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

〈그림 1〉 국가별 금융이해력 수준



자료: 변혜원 외(2015),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재구성함

■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대 시킬 수 있음⁸⁾

-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필요인지 및 구입은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비용 감소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수익을 증가 시킬 수 있음⁹⁾
- 특히 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은 복잡한 금융상품 구입 및 활용 증가로 이어짐¹⁰⁾
 - 인도 농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실행 이후, 수해보험 가입률이 8%에서 16%로 2배 높아짐

7) OECD(2016),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8) Crawford and Sobel(1982), "Strategic Information Transmission", *Econometrica*

9) Chakraborty and Harbaugh(2010), "Persuasion by Cheap Talk", *American Economic Review*

10) Sarthak Gaurav, Shawn Cole, Jeremy Tobacman(2011), "Marketing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 Emerging Markets: Evidence from Rainfall Insurance in India".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공적영역의 금융교육을 다루고 있으나, 사적영역이 금융역량 강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kiri](#)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효과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1일부터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개정할 것을 예고함. 이번 개정은 2016년 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을 거쳐 작성된 개정 방안과 지난 2017년 7월 12일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것임.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②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③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것을 예고함¹⁾

-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및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 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서 장해분류표를 정하고 있음
 - 장해의 판정은 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납입면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상해보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요하게 사용됨
-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은 지난 2005년 장해분류표를 개정한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임
 - 2005년 이전에는 8%를 상회하였던 장해급여금 관련 민원이 최근 2014~2016년 3년간은 2.1%(3년간 평균)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10여 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음²⁾
 - 그 동안 제기되었던 현행 장해분류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급률이 적정하지 않거나,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2. 28),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2) 김규동(2017),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검토」, 『KiRi 리포트』, 제424호, 보험연구원

누락된 장애가 있고, 의학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장애판정기준이 있다는 것임

- 보험업계는 2016년 3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장애분류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7월 12일에는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번에 예고된 장애분류표 개정안은 TF 작업 내용, 의료자문 내용 및 공청회에서 개선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임

■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애기준을 도입하고, ②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애판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③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애 검사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평가함

■ 첫째, 중대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분류표에서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장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현행 장애분류표는 귀의 장애를 청각 기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평형기능 장애를 신설함으로써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장애에서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던 것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신설함

■ 둘째, 장애의 정의, 판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장애판정 방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였음

-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파생 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함
- 각막이식술 시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함
- 반흔 발생 시 머리, 얼굴, 목을 구분하여 각각 가장 큰 반흔을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도록

록 되어 있으나, 반흔이 각 부위(머리, 얼굴, 목)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다발성 반흔이 발생하는 경우에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미흡하던 것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이 외에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척추운동 장애의 경우, 다리가 짧아진 경우, 심장 기능을 잃은 경우, 정신행동장애의 경우 등 현재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를 판단하거나, 지급률이 장애 정도에 비해 미흡하던 것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였음

■ 셋째, 의학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장애판정 방법을 의학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씹어 먹는 기능 장애를 평가할 때에 현재는 삼킬 수 있는 음식의 종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개구운동,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등과 관련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함
- 말하는 기능 장애를 평가할 때에 현재는 4종 어음(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구멍소리) 중 몇 가지 어음을 발음하지 못하는지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평가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평가검사 및 자음정확도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도입하도록 개정함
- 정신행동 장애를 판정할 때에 현재는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함³⁾

■ 이번 장애분류표 개정으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장애판정기준이 보다 객관화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민원의 감소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금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민원 처리를 위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GAF는 정신장애 평가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수 체계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함. 장애분류표에서는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는 GAF 점수가 30 이하일 때,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는 GAF 점수가 70 이하일 때로 설명하고 있음

- 장애판정기준을 객관화한 경우 장애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장애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위험률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수준이 전체 장애위험률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감안하여 장애위험률은 개정하지 않고 개정 장애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향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있음

- 개정 장애분류표에서 새롭게 추가된 귀의 장애의 평형 장애는 지급률을 10%만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장애등급에서는 귀의 평형장애를 심도에 따라 3~5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급률을 15~20%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지급률 10%는 국가장애등급의 5~6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약한 장애정도를 말하는데, 국가장애등급에서 3~5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지급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빈번한 장애분류표 개정은 보험회사에게 다양한 장애분류표 관리라는 행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계약자 입장에서도 보험계약 시점에 따라 다른 장애분류표가 적용되어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계약 시점에 따라 동일한 장애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를 경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장애분류표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IASB는 당초 IFRS 17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2017년 5월) 후 약 3.5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였지만,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함. 국내 보험회사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IFRS 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17 개정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는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¹⁾

- IFRS 17 시행 시기는 당초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또한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함

■ IASB는 시행일 등을 포함한 IFRS 17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유용성, 기준서 시행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함

- 기준서 개정이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저하시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 됨

1) IFRS Foundation(2018. 11), “IASB to propose one-year deferral of insurance contracts Standard”

- 그리고 기준서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시행일의 과도한 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됨
- IASB는 당초 IFRS 17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2017년 5월)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결정하였음
 - IASB는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IFRS 적용국이 새로운 기준을 법률 제도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준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지침(Guidance)을 바탕으로 함
 - 일반적으로 기준서 공표와 시행일은 적어도 12개월~18개월 차이가 남
 - IFRS 17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기준서 적용과 관련한 운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시행일은 늦출수록 기존 회계기준인 IFRS 4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회계관행이 지속됨
 - 위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와 시행일 간 차이를 약 3년 6개월로 결정함
 - 시행일 1년전에 작성하는 비교재무제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준비기간은 약 2년 6개월임
 - 다만 IASB는 기준서 시행일 결정과 관련하여 기준서 시행이 보험회사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 새로운 기준서 적용 시 부채가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 IFRS 17 시행일이 늦을수록 보험회사가 규제 자본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IFRS 기준서는 보험회사 규제 자본과 목적이 상이함
- 기준서 시행일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였으나,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²⁾
 - IFRS 17 시행 준비기간 중 일부 보험회사들은 인적자원 부족, 정보이용자 이해 부족, EU의 기준서 채택 지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당초 예정된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시행일을 1, 2, 또는 3년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계리, IT 시스템 전문가 등 IFRS 17을 준비하기 위한 내, 외부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2) IFRS Staff Paper(2018. 11), "Implications of exploring amendments to IFRS 17 for effective dates"

-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IFRS 17 시행에 따른 변화를 알리고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보험회사 통제를 벗어난 교육, 감독, 세제 등 그 외 요소들이 완성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 EU에서의 IFRS 17 기준서 채택 과정이 예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IFRS 적용국의 보험회사들이 IFRS 17 시행을 각자 다른 시점에 할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일부 보험회사들은 당초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여 시행일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일 연기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함
 - 특히 시행일을 길게 연기시키면 이미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방해하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준서 공표 이후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IFRS 17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함
 - IASB 스텝(Staff)은 최초 IFRS 17 시행일을 결정할 때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 준비기간을 부여하였고, IFRS 17 시행을 성실히 준비한 보험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서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IFRS 17 시행 준비기간 중 보험회사들은 IFRS 17 적용상 발생하는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검토를 요청함
 - 기준서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IFRS 17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지만,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기준서 개정 여부 판단기준)에서 시행일 연기를 1년으로 제한함
 - 향후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관련 절차에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상반기까지 IFRS 17 적용 이슈에 대해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개정사항이 결정되면 공개초안을 발표할 것이며 외부 의견수렴 등 정식 절차를 거쳐 IFRS 17 개정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IFRS 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함

- 국내 보험회사들도 IFRS 17 시행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IFRS 17 적용 범위, 재보험, 보험계약마진 상각단위, 수정소급법 등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한편 IFRS 17 시행 시 누적된 저금리 효과로 인해 자본이 급감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으로 자본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우려됨

〈그림 1〉 국채 10년 금리 추이



-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17 개정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IFRS 17 시행 연기만으로는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 [kiri](#)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험

임준 연구위원

요약

Smidt and Botzen(2017)은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험의 인식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자신의 조직이 사이버공격의 대상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우선적인 공격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not-in-my-organization’ 경향이 존재하였음. 그리고 사이버공격의 발생빈도와 관련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 반면,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음.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소수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저자들은 낮은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피해규모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음.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이버위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와 잘못된 위험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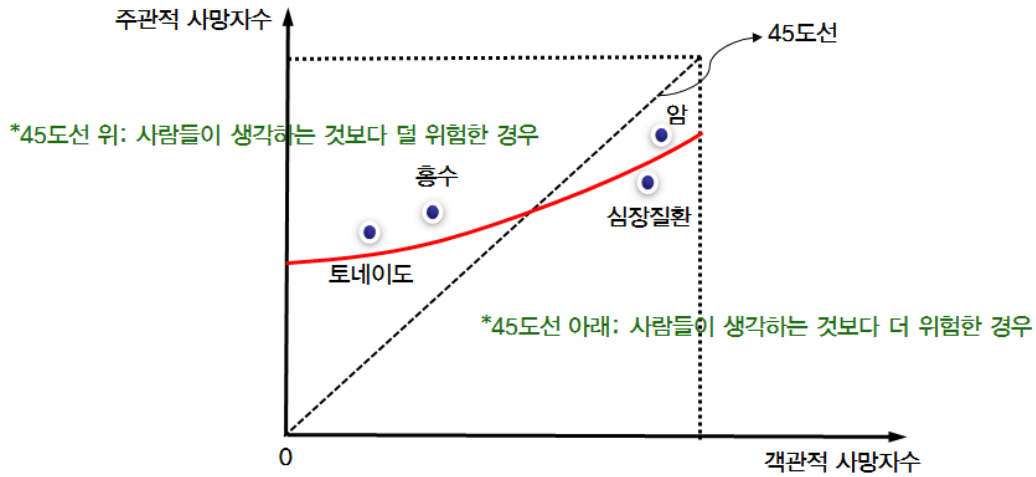
■ 위험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위험(actual risk)과 개인이 인식하는 위험(perceived risk) 간에 차이가 존재함

- 아래 <그림 1>의 실선은 약 40여 개 위험의¹⁾ 객관적 사망자 수와 주관적 사망자 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발생빈도가 낮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반면, 발생빈도가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함²⁾
 - 예를 들어, 토네이도와 홍수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자 수보다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암이나 심장질환 등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자 수보다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더 적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1) 그림에서는 편익상 홍수, 토네이도, 암, 심장질환 등의 4개 위험만 표시하였음. 이외에도 40여 개의 위험에 포함된 다른 예로는 자동차사고, 살인 등이 있음

2) Viscusi, W, et al.(200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

〈그림 1〉 객관적 사망자 수와 주관적 사망자 수



주: 객관적 사망자 수와 주관적 사망자 수는 1년 단위임
 자료: Fischhoff, B. et al.(1981), *Acceptable Ris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scusi, W, et al.(200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에서 재인용

- 사이버위험의 경우에도 실제 위험과 주관적 위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했지만 실증자료를 통해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음
- Smidt and Botzen(2017)은³⁾ 네덜란드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험의 인식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2016년에 수행하였음
 - 모두 1,891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보냈으며, 그 가운데 172명이 응답하였음
- 주요 연구결과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응답자 가운데 약 84%가 자신의 조직이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신의 조직이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6%였음
 - 대부분 자신의 조직이 사이버공격의 대상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우선적인 공격 대상은 아

3) Smidt, G, and W.J. Wouter Botzen(2017), "Perceptions of Corporate Cyber Risks and Insurance Decision-Making", Working Paper # 2017-18, Risk Management and Decision Processes Center,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하였음⁴⁾

■ 두째, 사이버공격의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음

- 몇 년에 한 번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5%가 5년에 한 번에서부터 25년에 한 번 사이의 구간에 포함되었음
- Smidt and Botzen(2017)은 객관적 발생 빈도의 추정치로 샘플의 평균치인 약 18년에 한 번을 사용하여, 많은 응답자가 사이버공격의 발생 빈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샘플의 평균치를 객관적 발생 빈도의 추정치로 가정한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주장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짐

■ 셋째,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음

- 응답자의 약 67.2%가 피해규모가 100만 유로 이하일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저자들이 피해규모의 객관적 추정치를 얻기 위해 참조한 Ponemon(2016)의⁵⁾ 연구에 의하면, 평균 피해액 규모가 약 400만 유로 정도 되었음
-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약 18%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저자들은 낮은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피해규모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음

■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이버위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와 잘못된 위험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kiri](#)

4) 이러한 경향을 'not-in-my-organization' effect라고 함

5) Ponemon Institute(2016), "2016 Cost of Data Breach Study", Ponemon Institute Research Report; 정보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산정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

임준 연구위원

요약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로는 사이버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거대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풀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사이버보험의 공급 측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간 협력과 보험회사와 관련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한데, 싱가포르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및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 학계, 통신보안업체 등이 참여하는 CyRi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세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풀(Cyber Insurance Pool)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음.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이 성숙되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까지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현재 사이버보험 시장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요인에 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¹⁾

- 수요 측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 사이버보험 상품의 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급 측면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족, 사이버위험의 진화, 재앙적 피해규모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사이버보험상품 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특히, 보험산업 내에서의 협력과 보험산업과 다른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1) Sam Friedman(2017), "Clearing Obstacles Hindering Cyber Insurance Growth", 2017 American Risk & Insurance Association Presentation Paper

■ Romanosky(2016)²⁾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사이버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비용의 분포를 분석하였음

- 사고 건당 피해비용의 평균값은 약 784만 달러였던 반면, 중간값은 약 25만 달러로 평균값과 중간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해액 최대값은 약 7억 5천만 달러였음

〈표 1〉 사이버사고 피해비용 분포

(단위: 건, 만 달러)

구분	건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간값	최솟값	최댓값
정보유출	602	587	3,570	17	0	57,200
보안사고	36	917	2,702	33	0	10,000
프라이버시 침해	234	1,014	5,541	134	0	75,000
피싱(Phishing)	49	1,999	10,593	15	1	71,000
전체	921	784	4,728	25	0	75,000

주: 피해비용에 주식가치 하락, 평판손실, 외부효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Sasha Romanosky(2016), "Examining the Costs and Causes of Cyber Incidents", *Journal of Cybersecurity*, 2(2), pp. 121~135

■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 피해비용 분포의 형태는 사이버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일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우선, 평균값에 의해서 요율이 책정될 경우 대다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이버보험의 공급을 꺼리게 됨

■ 사이버위험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율 세분화를 위한 사이버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거대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풀 구축 등이 필요한데,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사이버위험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개별 보험회사

2) Sasha Romanosky(2016), "Examining the Costs and Causes of Cyber Incidents", *Journal of Cybersecurity*, 2(2), pp. 121~135

단독으로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음³⁾

- 보험 풀의 경우에는 원수 보험회사 간 보험 풀, 민간 보험회사만 참여하는 재보험 풀, 정부 지원 재보험 풀 등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적절한 보험 풀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함

■ 사이버보험의 공급 측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간 협력과 보험회사와 관련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한데, 싱가포르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및 사이버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Cyber Risk Management(이하 'CyRi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CyRim 프로젝트에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 Aon, Lloyd's, MSIG, SCOR, TransRe, Verizon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사이버위험을 어떻게 정량화(Quantification)해서 보험료 할인(Premium Discount)에 반영할 것인가가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임⁴⁾

■ 또한, 싱가포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풀(Cyber Insurance Pool)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음⁵⁾

- 사이버보험 풀의 규모는 약 10억 달러이고, 현재 약 20여 개 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이 성숙되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까지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kiri](#)

3) 2018 KIRI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토론내용

4) Caitriona Heintz(2018), "NTU Singapore Cyber Risk Management Project: Key Observations to Enhance Cyber Resilience", Nanyang Business School, Insurance Risk and Finance Research Centre

5) Asia Insurance Review(2018. 10. 30), "Singapore to Set Up World's First Cyber Risk Insurance Pool"



CHAPTER

03

고령화

1.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2.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와 시사점

| 김세중
| 김세중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생명보험 상품의 주 가입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가입연령 상승 원인은 고령인구 비중 확대, 저연령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세와 1~2인 가구 비중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가입연령 상승은 생명보험회사에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마케팅, 리스크 관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및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상품의 주 가입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건강보험 주 가입연령은 2006년 30~40대에서 50~60대로 상승하였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2006년 30~40대에서 2016년에는 40~50대가 주 가입연령으로 부상함
 - 건강보험 평균 가입연령²⁾은 2006년 38.2세에서 2016년 50.8세로 상승하였고, 연금보험 평균가입 연령은 2006년 38.4세에서 2016년 42.3세로 상승함
- 가장의 사망위험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에서도 가입연령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변액보험 가입연령도 상승하는 등 생명보험 가입연령 상승은 모든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음
 - 종신보험 평균 가입연령은 2006년 35.2세에서 2016년 37.5세로 상승하였고, 연금보험 평균가입 연령은 2006년 35.4세에서 2016년 37.0세로 상승함

1)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각 년호

2) 평균 가입연령은 각 5세 연령군단별 중앙연령에 가입자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 평균 가입연령 상승과 더불어 상품별, 연령별 가입자 수 비중이 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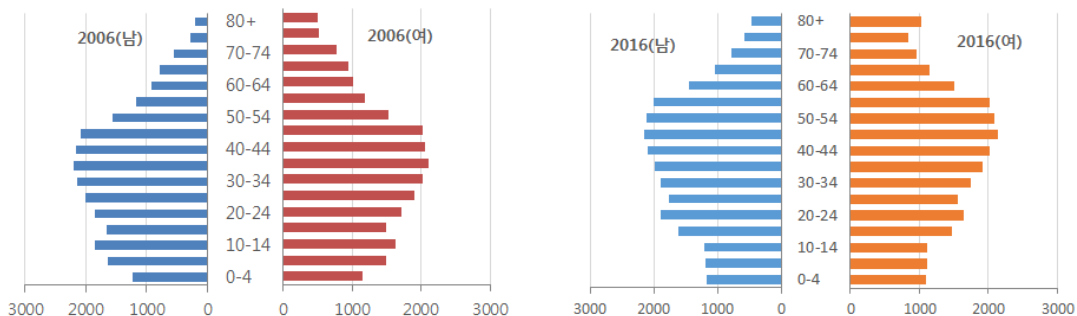
- 건강보험의 경우 30~40대 가입자 수 비중 축소와 50~60대 비중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에서는 주 가입연령이 과거 30대 위주에서 30~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으로 변화함

■ 생명보험 가입연령 상승의 원인은 고령인구 비중 확대, 저연령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세와 1~2인 가구 비중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2006년 주 연령층은 30~40대였으나 2016년 주 연령층은 40~50대로 이동함 (<그림 1> 참조)

<그림 1> 2006년과 2016년 인구 피라미드 비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06년에서 2016년 47.1% 증가하였으나 이는 40대와 50대 소득 증가율(각각 48.6%, 54.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편 30대의 1~2인 가구 비중은 지난 10년간 15.9%p 상승하여 전체 1~2인 가구 비중 상승폭 11.4%p를 상회함

■ 생명보험회사는 가입연령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노후 건강 및 소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연령층의 보험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고연령층의 노후건강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을 출시하고 가입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함
- 보험가입 과정을 간소화한 간편보험(SI보험)도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담보하는 치아보험도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면채널보다 비대면채널에 익숙한 저연령 보험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을 판매 중이며, 필요한 보장만을 고를 수 있도록 맞춤형 미니보험상품을 개발함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가입연령 상승은 생명보험회사에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같은 구조적인 제도변화에 직면해 있음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하에서 자본 변동성 부담이 적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 상품이 위험 선호, 상품 복잡성 등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연령 고령화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가입자 연령의 고령화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위험 요구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위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마케팅, 리스크 관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포화에 대비하여 20~30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보장 영역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고령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판매규율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iri](#)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FY2008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종목별로는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연금보험, 종신보험 순으로 해지율이 낮음. 변액보험 각 종목을 일반계정 보험 종목과 비교해 볼 경우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설 해지율은 일반계정과 유사한 수준이나, 변액연금 해지율은 비적격 연금보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생명보험 회사들의 성장성 둔화로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종목별로 적극적인 해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¹⁾ 추이를 살펴보면 FY2008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종목별로는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FY2008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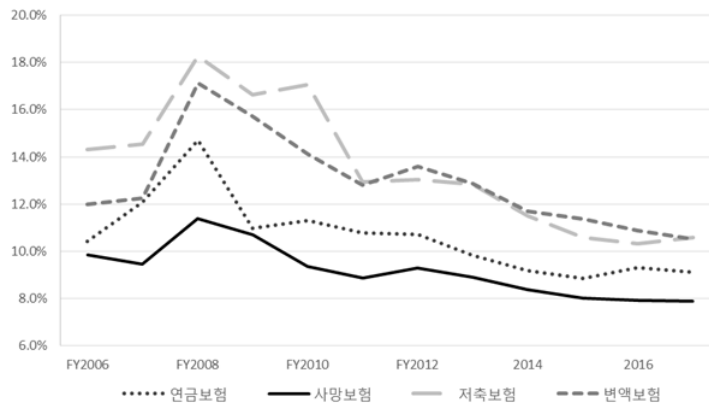
■ 종목별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연금보험, 종신보험 순으로 해지율이 낮는데, 이는 위험보장 정도와 만기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 위험보험료가 많은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에 비해 해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의 위험보장 수준은 유사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10년에서 15년인 데 반해 연금보험은 15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가 많아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연금보험 해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1) 해지율은 (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으로 계산되며, 해약률과 같은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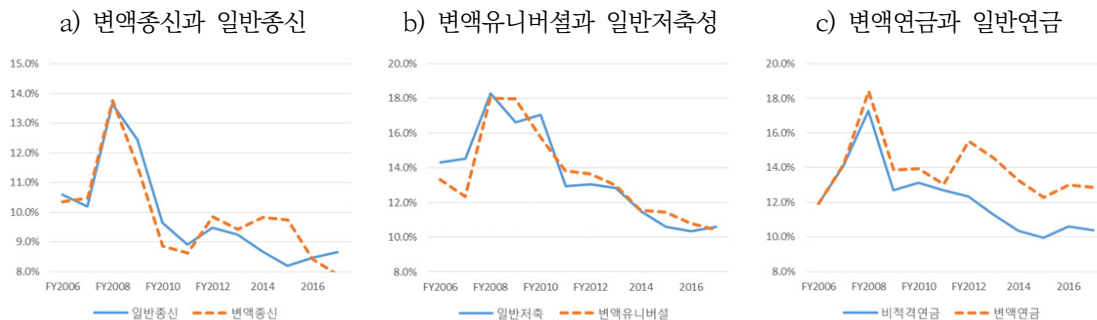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FY2006~2017년)



주: 회계기간이 3분기인 FY2013 해지율은 연간해지율로 보정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일반계정의 종신, 저축, 일반연금 종목과 비교해보면,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설 해지율은 일반계정과 유사한 수준이나, 변액연금 해지율은 세제비적격 일반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변액보험과 일반계정보험 종목별 해지율 비교



주: 회계기간이 3분기인 FY2013 해지율은 연간해지율로 보정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유사한 수준과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6년 기간 동안 변액보험의 해지율이 일반계정 보험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변액연금의 경우 비적격 일반연금과 해지율 추이는 유사하나 수준은 추세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며, FY2012 이후 해지율 차이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들어 변액보험 종목별 해지율이 일반계정 보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가지수의 장기 횡보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높아지고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종합주가지수는 2010년 2000선을 회복한 이후 2016년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2000선 수준을 유지함
- 주가지수의 장기 횡보로 인해 누적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수익률 기대가 낮아졌으며,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기존 변액보험의 해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수수료 수준을 낮추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성장성 둔화로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종목별로 적극적인 해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부진으로 4.9%의 감소세를 보이고 초회보험료는 21.2% 감소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성장성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나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높은 변액보험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종합주가지수는 약 30% 가량 상승하였고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52.7% 증가하였으나, 계속보험료가 2.5% 감소하면서 수입보험료는 1.1% 증가하는 데 그침
- 보험계약의 해지는 경제적인 여건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보험상품과 그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해약을 관리가 필요함 [kiri](#)



CHAPTER

04

보험경영

- | | |
|--------------------------------|---------|
| 1.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 전용식 |
| 2.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 전용식 |
| 3.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 전용식 정인영 |
| 4. 인슈어테크와 보험금청구 간소화 | 김규동 |
| 5.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 김세중 |
| 6. 미니보험 상품의 개요 및 전망 | 김석영 |
| 7.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 김세중 |
| 8.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변화 | 조영현 이해은 |
| 9.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 전용식 권오경 |
| 10.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 김석영 이소양 |
| 11. 보험회사 현금성 자산비중의 하락세와 시사점 | 임준환 한성원 |
| 12. 투자수단으로서 비금융기업 영구채 현황 및 특징 | 황인창 홍민지 |
| 13. 터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 임준환 문혜정 |
| 14.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 이기형 |
| 15.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 윤성훈 한성원 |
| 16.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 김석영 |
| 17.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은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함. 자동차 보험료 하락의 원인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회사들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 보험금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금 원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상승 압력을 확대시키고 자동차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도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함

-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외래진료비는 1.87%, 한방진료비는 4.9%, 입원진료비 2.1%, 병원검사료 1.9%, 자동차 수리비는 1.1% 상승함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한 원인은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회사의 경쟁 심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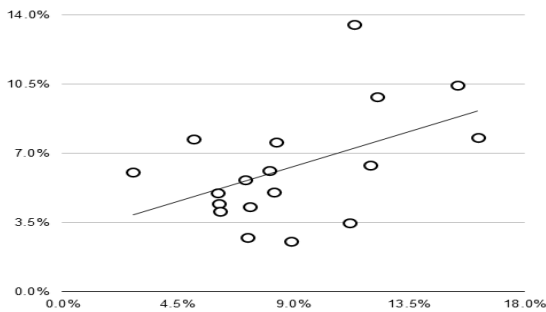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일용임금은 4.3% 상승함

-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년도 일용임금 증가율 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임 (〈그림 1〉 참조)¹⁾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사망 지급기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건설노임단가 보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1.7%, 일용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2% 상승함(〈표 1〉 참조)
-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5.2%로 확대되고 일용임금 상승률도 확대될 것임

〈그림 1〉 최저임금 인상률과 월평균 일용임금 증가율



〈표 1〉 최저임금과 일용임금 인상률

구분	최저임금 인상률	일용임금 인상률
2015	7.1%	2.7%
2016	8.1%	5.6%
2017	7.3%	6.1%
2018	16.4%	4.3%
2016~2018 CAGR	11.7%	5.2%

주: 2019년 일용임금 인상률은 전망치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일용임금 상승은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상해에 대해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금 중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피해자의 소득인데,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됨
 -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의 80% 이상이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급됨
 - 상실수익과 휴업손해로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FY2010 109.2만 원에서 2016년 178.0만 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동기간 일용임금 연평균 증가율은 5.2% 증가함(〈표 2〉 참조)
 - 2013년부터 일용임금 증가율이 둔화되며 1인당 평균 보험금 증가세도 둔화되었고, 2014년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이 14.4%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0.9%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그림 2〉 참조)

통 인부의 노임과 제조업부문 단순노무종사자의 노임을 합산, 평균하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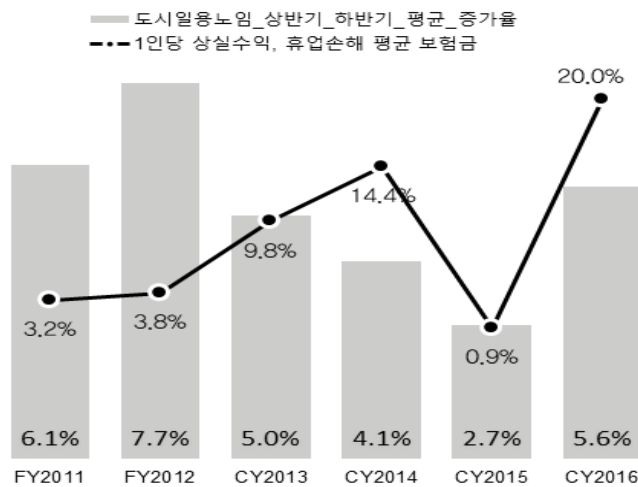
〈표 2〉 임금수준과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 1인당 평균보험금

(단위: 만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2013	2014	2015	2016
사망	상실수익	5,858.3	5,919.6	6,105.9	6,330.5	6,391.1	6,862.4	7,930.9
후유장해	상실수익	1,724.7	1,754.8	1,794.7	1,812.1	1,766.6	1,743.3	1,823.8
부상	휴업손해	43.8	44.3	43.9	46.3	52.0	54.9	57.3
일용임금 기준 보험금 비중		79.2%	80.5%	82.1%	82.4%	84.0%	85.1%	85.5%
1인당 상실수익, 휴업손해 평균보험금		109.2	112.7	117.0	128.5	147.0	148.3	178.0
		-	(3.2%)	(3.8%)	(9.8%)	(14.4%)	(0.9%)	(20%)

주: 2010년과 2011년 월평균 일용임금과 최저임금은 CY 기준으로 보험금 통계기준인 FY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2〉 일용 노임 증가율과 1인당 상실수익, 휴업손해 평균 보험금 증가율



자료: 보험개발원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2016년 대인배상 보험금 3조 7,929억 원 가운데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 비중은 21.9%로 2010년 26.4%에 비해 하락하고 있음(〈표 2〉 참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 상승률이 확대될 경우 1인당 상실수익·휴업손해 보험금 증가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위자료	5,050	4,759	4,831	4,320	3,882	4,023	4,075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8,770	8,315	7,973	7,120	7,442	7,862	8,077
대인배상 비중	26.4%	26.0%	24.5%	24.1%	23.1%	22.1%	21.9%
치료비	10,582	10,034	10,073	8,839	10,637	11,952	13,209
향후치료비	8,064	8,158	8,825	8,493	9,461	10,776	11,158
대인배상 합계	33,228	32,040	32,593	29,579	32,267	35,612	37,929

자료: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 역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18년 7.38%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2010년(6.55%) 인상 이후 8년만임²⁾
- 지속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보험금 원가 상승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³⁾
 - 보상제도 개선과 경영효율화로 손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료는 신속히 인하되는 반면,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에도 보험료 조정이 지연될 경우 보험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역제는 손해율을 하락시키나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음 [kiri](#)

2) 중앙일보(2017. 11. 6), “최저임금 인상 여파 장기요양보험료 8년 만에 13%인상”

3)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에 대해서는 전용식 외(2013. 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2013-1 참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1998년 이후 19년 만에 907억 원의 흑자(2017년 1/4분기)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1년 만인 2018년 1/4분기 483억 원 적자로 전환됨. 적자전환의 원인은 자동차 보험료 경쟁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임.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증가세가 금리상승으로 확대될 경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과거와 같이 확대될 수 있음.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변동과 경영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1/4분기 90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18년 1/4분기 483억 원 적자로 전환됨¹⁾

-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던 1997년, 1998년 이후 19년 만의 흑자이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됨
 - 1997~1998년 평균 2,831억 원의 흑자에서 1999년 4,292억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10년 1조 5,696억 원으로 확대되었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2016년 대물보상제도 개선 등으로 2017년 2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영업이익 적자는 계절적 요인과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인상 등에 의한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사업비율은 18.7%로 2010년의 30.3%에 비해 크게 하락함
- 자동차 보험료 경쟁 심화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규모도 전년동기에 비해 0.4% 감소함

1) 금융감독원(2018. 5. 31), 「2018년 1분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 2018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의 주요 원인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인 것으로 보임

- 2018년 1/4분기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2% 하락했으나 발생손해액은 4.4% 증가함²⁾
 - 2017년 1/4분기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 1.93%, 발생손해액 증가율 7.3%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은 3.05%p 하락하였고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2.90%p 상승함
- 2011년 이후 평균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이 0.2%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 1/4분기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 -1.12%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999년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당시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인하됨
 -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999년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대비 6.18% 하락하였고 발생손해액은 11.9%증가하였음
 - 1997년과 1998년 평균 영업이익 흑자는 2,831억 원인데, 자동차 보험료는 4.09% 상승하였고 발생손해액은 9.8% 감소함

〈표 1〉 자동차 보험료, 발생손해액, 영업이익 현황

(단위: %, %p, 억 원)

구분	1997~1998	1999	2000~2010	2011~2017	2017 1/4	2018 1/4
자동차보험료 증가율(A)	4.09	-6.18	3.00	0.20	1.93	-1.12
발생손해액 증가율(B)	-9.80	11.9	8.70	6.00	7.30	4.40
A - B	13.90	-28.7	-5.70	-5.80	-5.37	-5.52
영업이익	2,831	-4,292	-6,187	-6,136	907	-483

주: 기간별 평균치
자료: 한국은행, 보험통계연보

■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이후 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장기 손해보험과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장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8%로 2015년 4.9%에 비해 2.1%p 하락하였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5.2%에서 2017년 2.6%로 둔화됨

2) 이하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와 이 지수의 증가율임

- 2018년 1/4분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8,809억 원으로 2017년 1/4분기 1조 2,025억 원에 비해 26.7% 감소함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계약자들의 보험료 민감도가 크다는 점이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임³⁾

■ 한편 발생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영업이익 적자폭은 확대될 수 있음

-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은 금리상승세가 확대된 2017년 10월 이후 상승하고 있는데, 2017년 1/4분기 0.83%에서 2018년 1/4분기 1.52%로 상승세가 확대됨
 -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7년 1/4분기 1.48%에서 2018년 1/4분기 1.87%로 39bp 상승함
- 대인배상에 영향을 주는 병원검사료, 입원료 등의 물가상승세는 둔화, 혹은 하락한 반면 한방진료비와 외래진료비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금 원가 상승세는 확대될 수 있음(〈표 2〉 참조)
 - 금리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상승 전망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표 2〉 자동차 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관련 품목별 물가상승률, 금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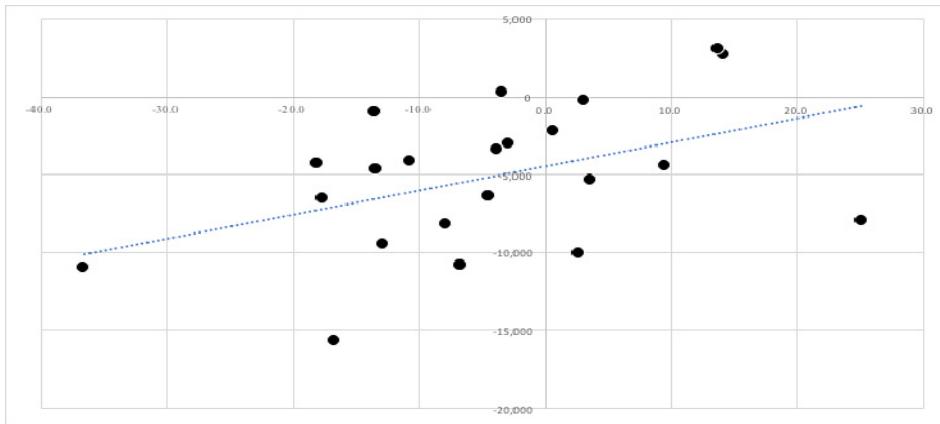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1/4	2018 1/4
자동차보험료	-0.68	0.00	0.00	2.43	0.07	1.93	-1.12
병원검사료	1.03	1.88	2.00	2.76	3.03	3.33	-2.86
입원진료비	1.78	1.35	1.09	1.50	1.55	1.90	0.30
한방진료비	2.70	2.73	2.50	2.20	3.00	3.00	2.90
외래진료비	1.03	1.88	2.01	2.30	2.60	2.60	2.50
자동차수리비	-0.03	0.47	0.26	0.58	0.73	0.83	1.52
국고채 1년	2.66	2.44	1.70	1.43	1.54	1.48	1.87

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3) 전용식(2014. 8),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 전환 가능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76호

- 보험료 증가율이 발생손해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둘 간의 차이가 좁혀질수록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그 격차가 커지면 영업적자는 증가할 수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자동차보험 영업이익과 자동차보험료(좌)



■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변동과 경영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 인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보험료 경쟁 심화는 과거 손해율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위험(손해액)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음
 - 전용식 외(2013)는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 기대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크기가 작아졌고, 이러한 보험료 산정이 영업이익 적자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⁴⁾ [kiri](#)

4) 전용식·채원영(2013. 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 참조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2015년 이후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은 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 보험사업 매각 원인으로는 ① 보험사업 부문의 수익성 저하, ② 금융그룹의 자본 확충 필요성, 그리고 ③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위험 등임. 금융그룹의 수익성 저하 및 자본 확충 필요성 확대와 더불어 주요 금융그룹 보험자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평판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험자회사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호주의 사례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은행그룹의 평판위험을 확대시켜 회사 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이며 보험금 지급과 불완전판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15년 이후 Westpac을 제외한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은 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¹⁾

- NAB 금융그룹은 2016년 10월 보험자회사인 MLC Limited의 지분 80%(24억 호주달러)를 일본생명(日本生命)에 매각함²⁾
 - 한편 NAB는 일본생명과 향후 20년간 방카슈랑스 채널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함³⁾
- CBA 그룹은 생명보험 자회사 CommInsure를 AIA에 38억 호주달러에 매각하기로 2017년 9월 합의함⁴⁾
 - AIA의 호주 보험시장 점유율은 개인보험 17%, 단체보험 35%로 각 부문 3위와 1위를 기록함

1) 2016년 말 자산규모 기준으로 호주의 4대 은행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CBA),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ANZ), Westpac Banking Corporation, National Australia Bank(NAB) 등이며 본고에서 '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임; KPMG(2016), "Major Australian Banks - Full Year 2016 Results Analysis"

2) 日本生命(2016. 10. 3), "Nippon Life completes acquisition of 80% of the shares of the MLC life insurance business"

3) 일본생명은 자국 생명보험산업이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호주 보험시장 규모는 일본의 15%에 불과하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일본생명은 수년 동안 적절한 인수대상을 물색해옴; Nikkei Asian Review(2015. 10. 14), "Nippon Life Insurance to buy National Australia Bank's life insurance unit"

4) Bloomberg(2017. 9. 20), "Commonwealth Bank Sells Life Unit to AIA for A\$3.8 Billion"

- ANZ 그룹은 올해 10월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IOOF Holdings에 9억 7,500만 호주달러에 매각한 데 이어,⁵⁾ 자회사인 OnePath 생명보험을 스위스의 Zurich Group에 28억 5천만 호주달러에 매각하기로 12월 11일에 발표함
- 한편 ANZ 그룹은 모기지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손해보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뉴질랜드에서의 생명보험사업은 지속하기로 함⁶⁾
- Zurich는 OnePath 인수로 개인보험 시장점유율이 7%에서 19%로, 단체보험 시장점유율은 6%로 상승함(〈표 1〉과 〈그림 1〉 참조)

〈표 1〉 호주 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업부문 매각 사례(거래규모 기준)

발표일	매각자	매각회사	인수자	거래규모 (호주달러)	인수자 시장점유율	
					개인보험	단체보험
2017. 9. 20	CBA	CommInsure	AIA Group	38억 달러	17%	35%
2017. 12. 11	ANZ	OnePath	Zurich Insurance	28억 달러	19%	6%
2015. 10. 27	NAB	MLC	Nippon Life Insurance	24억 달러	14% ¹⁾	9% ¹⁾

주: 1) NAB의 보험시장 점유율임

자료: Reuters(2017. 12. 12), "Australia's Great Life Insurance Sell-Off"; Deloitte(2016), "M&A in Australia's Insurance Sector - Positioned for Growth"

■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으로는 ①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저하, ② 금융그룹의 자본 확충 필요성, 그리고 ③ 불완전판매와 평판위험 등임

■ 첫째,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정체로 보험부문의 은행그룹에 대한 이익기여도가 감소추세임(〈그림 1〉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 참조)

- 보험사업을 매각한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는 하락하고 있거나, 10% 미만으로 높지 않음⁷⁾
- CBA와 NAB의 보험사업부문 이익기여도(그룹이익 대비 보험부문이익)는 2012년 6.05%와 5.29%에서 2016년 4.09%와 0.39%로 하락함

5) Reuter(2017. 10. 17), "Australia's ANZ sells pension business to IOOF for \$766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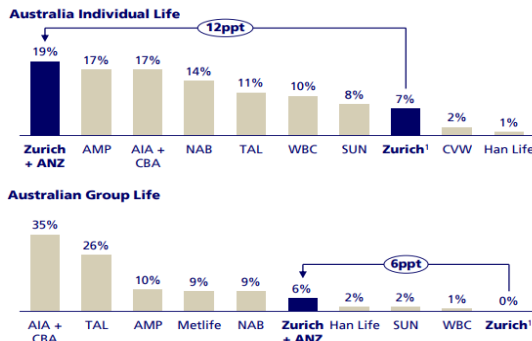
6) Financial Standard(2017. 12. 12), "ANZ sells life insurance business for \$2.85 billion"

7) 과거 호주의 4대 금융그룹은 경쟁 심화 및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인해 순이자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수수료수익과 보험수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해왔음; 서병호(2011),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림 1〉 호주 보험 산업의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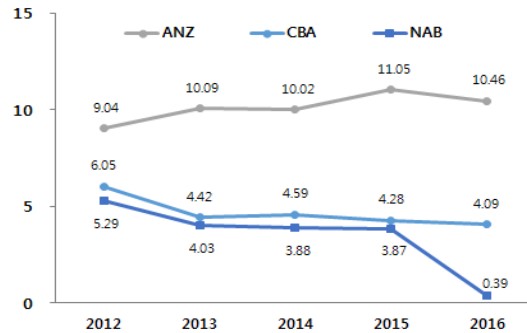
생명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2017년 6월 기준)

(단위: 전)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

(단위: %)



주: ANZ와 NAB의 경우 전체 순이익 대비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의 순이익을 합산 비율임

자료: ZURICH(2017. 12. 11), "Zurich to acquire the Life insurance business of ANZ"; 각사 Annual Report

■ 둘째,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은 올해 7월 호주 4대 은행들의 자본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⁸⁾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짐

- APRA는 2020년부터, ANZ, CBA, NAB, Westpac 등 호주 4대 은행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비율을 10.5%로 강화하기로 발표함⁹⁾
 - 이는 2016년 말 4대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의 평균값인 9.5%보다 1.0%p 높은 수준임
-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6년 20.7%에서 2010년 16.2%, 2016년 13.8%로 하락추세를 지속함(〈표 2〉 참조)
- 이익창출능력의 약화로 인한 자본 확충의 어려움도 보험자회사 매각의 원인으로 보임

〈표 2〉 호주 금융그룹의 수익성(ROE)

(단위: %)

구분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ANZ	20.7	19.6	13.5	12.5	16.4	15.7	14.7	15.1	15.3	14.0	10.3
CBA	21.3	22.1	19.9	16.3	18.9	20.0	18.1	18.6	18.8	18.2	16.5
NAB	17.7	17.1	11.9	10.9	13.5	15.2	13.5	14.3	9.0	14.8	14.3
WBC	23.0	24.0	21.9	13.4	15.8	15.6	15.9	15.8	16.4	15.8	14.0
평균	20.7	20.7	16.8	13.3	16.2	16.6	15.6	16.0	14.9	15.7	13.8

자료: KPMG(2016. 11), "Major Australian Banks: Full Year 2016 Results Analysis"

8) APRA(2017), "Strengthening banking system resilience - establishing unquestionably strong capital ratios"

9) 중·소형은행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비율은 기존 7.0%에서 7.5%로 소폭 상향

■ 셋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16년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금융그룹의 평판이 훼손됨¹⁰⁾

- ASIC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정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와 계약자보호 강화를 권장하였으며, 호주건전성감독위원회(APRA)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임
 - ASIC의 조사결과 CBA 그룹의 자회사인 CommInsure社は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과거의 의학적 정의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었음
 - 특히, CBA의 자금세탁방지규정(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위반건수가 54,000 건에 이르는 등 회사의 평판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또한 1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불완전판매가 적발됨
- Westpac 그룹은 ASIC로부터 권고를 받지 않았으나 2017년 10월 자사 은행지점에서 생명보험상품을 4.5%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함
- NAB는 영국에서 불완전판매로 4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음¹¹⁾
- ANZ는 2016년 8월 불완전판매로 인해 집단소송을 제기당하였고 ASI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함¹²⁾

■ 보험금 지급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금융그룹의 평판위험을 확대시켜 보험자회사 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임

- 은행그룹의 수익 1단위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회사의 평판위험 확대는 은행그룹에게 비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 충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평판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이익실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¹³⁾
 - 금융그룹의 경우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다는 고객에게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보험자회사의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관련 평판위험이 은행자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그룹의 다양한 리스크와 결합될 경우 금융그룹의 평판위험은 크게 훼손될 수 있음 [kiri](#)

10) ASIC(2016. 10), "REPORT 498: Life insurance claims: An industry review"

11) Herald Sun(2015. 4. 15), "National Australia Bank's problem UK business fined \$40 million after mis-selling insurance products"

12) Financial Standard(2016. 8. 4), "ANZ faces mis-selling allegations in courts"

13) Financial Review(2017. 9. 28), "Why the banks are quitting life insurance?"



인슈어테크와 보험금청구 간소화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보험회사들의 보험금청구 간소화 노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도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연장선에 있음. 일부 보험회사들이 개발·운영중인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기술의 발달로 진일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최근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청구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교보생명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임
 - 교보생명은 작년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도입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블록체인망을 이용한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등 3개 병원과 교보생명 직원계약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임
 - 올해 6월부터는 대상 병원을 약 10개로 확대하고, 대상 계약자를 모든 계약자로 확대할 예정임
-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보험금청구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음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레몬헬스케어 및 연세 세브란스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모바일 앱 “My 세브란스”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신장비 등 공급 업체인 지엔넷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제휴하여 보험금청구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임

- 계약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험 회사를 선택하면, 진료 내역과 수납 정보가 보험회사로 전송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등 8개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¹⁾

■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도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0년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와 간소화 방안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²⁾ 이후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보험금 청구접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³⁾
 - 비대면 보험금청구 가능 금액도 2012년에는 30만 원 이상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2017년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⁴⁾
- 2013년에는 3만 원 이내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⁵⁾ 2015년부터는 그 범위를 10만 원 이내로 확대하였음⁶⁾
 - 이전에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도 1만 원 내외의 발급비용이 발생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의 제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노력은 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보험연구원의 2015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와 관련된 불만 경험(71.5%)이 보험상품 이해와 관련된 불만 경험(60.4%)이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액 관련 불만 경험(55.7%) 등 보다 높게 나타났음⁷⁾

1) 매일경제(2018. 1. 22), “복잡했던 실손보험 청구 ‘터치’ 몇번이면 끝”(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7425)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5. 17),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3)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2012. 1. 17),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31), “보험금 청구,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1. 13),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5)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2013. 5. 23),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지속 추진”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1. 13),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대폭 간소화”

7) 박선영·권오경(2015),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험연구원

■ 금융위원회는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병원·소비자·보험회사간 아날로그 방식의 보험금 청구·지급절차를 온라인·모바일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임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고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청구 절차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큰 진전은 없었음⁸⁾
 - 2010년 이후 보험금청구 간소화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거나,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었음
 - 의료기관 진료부터 보험금청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되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수납 후에 현장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임
 - 계약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관련 서류와 보험금청구서를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임
 - 관련 서류를 실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보험금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
-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의료기록이 계약자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거쳐서 보험회사에 전송되도록 하였으며, KB손해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의료기록을 직접 전송하되 계약자가 앱에서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할 예정임

■ 보험금청구 간소화는 인슈어테크를 견인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진일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kiri**

8) 파이낸셜뉴스(2016. 7. 19), “실손보험금 청구 온라인화 ‘지지부진’”(http://www.fnnews.com/news/201607191713102100); 파이낸셜뉴스(2018. 1. 18),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이번엔 의료계 협조 얻어낼까”(http://www.fnnews.com/news/201801181745487456)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미국 IT기업 아마존은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 버크셔해서웨이와 함께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고,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의 대형 IT회사 텐센트와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온라인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등 최근 대형 IT기업의 보험관련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의 출현으로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보험회사들도 아직까지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나 협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월 31일 미국 IT기업 아마존(Amazon)은 JP모건체이스, 버크셔해서웨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이들 세 기업은 미국의 높은 헬스케어 비용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공급한 후, 차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임
-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들은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IT기술에 기반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건강보험회사들은 IT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진출 시도를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임
- 미국 대형 건강보험회사인 씨그나(Cigna)는 아마존의 발표 이후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관련 벤처 인수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¹⁾

1) Forbes(2018. 2. 5), "Health Insurers Tout Technology Investments As Amazon-Buffett Firm Looms"

■ ■ 아마존은 최근 인도 온라인 보험회사 악코(Acko)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보험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²⁾

-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의 악코 손해보험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악코 손해보험은 2018년 1월부터 아마존에 온라인 보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함
 - 악코 손해보험은 2017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인도의 보험회사이며,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임
- 아마존은 이미 2016년 영국에 아마존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아마존은 아직까지 자사 구매 상품에 대한 보증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악코 손해보험 인수를 통해 인도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점차 판매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중국의 대형 IT회사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도 온라인 보험회사 지분을 인수하였고 일본의 IT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또한 온라인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등 최근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13년 중국 IT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 평안 보험회사 등의 지분참여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회사 종안은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한 반품비용 보험, 온라인 구매 항공권의 이륙 지연 손해보험 등과 함께 건강보험도 판매함³⁾
-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 또한 2017년 12월 임대 및 임차인을 위한 온라인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레모네이드(Lemonade)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레모네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함⁴⁾

■ ■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의 온라인 보험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이 충분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기반을 갖춘 인슈어테크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보험산업의 경쟁은 심화될 것임

2) Business Insider(2018. 1. 5), "Amazon pushes further into insurance with its latest investment"

3) Financial Times(2017. 9. 25), "ZhongAn launches insurtech concept to world"

4) Techcrunch(2017. 12. 19), "SoftBank leads a \$120 million round for insurance startup Lemonade"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향후 인슈어테크 산업에서 기존의 보험회사가 주도권을 잡는 경우, 뚜렷한 주체없이 분화되는 경우, 대형 IT기업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음⁵⁾
 - 대형 IT기업의 경우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데, 인슈어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경우 기존 보험회사가 경쟁 열위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보험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의 출현으로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어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엑센추어(Accenture)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은행에 비해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과의 협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16년 인슈어테크 투자 중 보험회사의 투자는 17%에 불과하고 83%가 타 산업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분석됨⁶⁾
 - 엑센추어는 역사가 오래된 보험회사들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 벤처기업과 협업을 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아직까지 보험회사들은 창의적인 인슈어테크 기업의 등장과 대형 IT기업과의 협업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거대한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 판매채널을 갖춘 대형 IT기업이 경쟁자로 부상할 경우를 대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도 아직까지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나 협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4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확대되면서 보험회사는 벤처기업인 인슈어테크 투자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대형 I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kiri**

5) IAIS(2017. 2. 21), "FinTech Developments in the Insurance Industry"

6) Accenture(2017), "The rise of Insurtech"



미니보험 상품의 개요 및 전망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최근 보험시장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위험보장 범위는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보험료가 소액이므로 대면채널보다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가 적합하며 미니보험이 활성화되려면 가입 절차 간소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미니보험은 기존 보험회사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기반한 신규 참여 보험회사 등이 전문보험회사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최근 보험시장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위험보장 범위는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 미니보험은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상품으로 간단보험¹⁾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함
- 모든 암 종류를 보장하지 않고 유방암만 보장하는 보험, 스키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등이 월 보험료 1만 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음
- 대다수 미니보험은 그 보험기간이 일회성이거나 1~2년으로 짧아서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 필요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미니보험은 한철 입는 저가의류 브랜드처럼 필요한 보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상품전략을 반영함

■ 미니보험은 신규 보험상품 개발의 어려움, 소비자 니즈의 변화와 규제환경의 변화로 등장함

- 현재 보험업계는 거의 대부분의 위험을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이미 보장하고 있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계약에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한 상품에서 여러 위험들을 보장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31)

- 소비자는 소득 정체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위험만 보장하는 상품을 선호함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상품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보험업계는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임

■ 미니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므로 대면채널보다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가 적합함

- 미니보험은 저가상품인 만큼 판매수수료가 적어 전형적인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가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품임
 - 실제로 저렴한 보험상품을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한 사례들이 있으나 성과가 미미함
 -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이므로 저가의 미니보험을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미니보험은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보장에 국한하여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면채널 의존도를 줄임
 -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소비자 스스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등 대중적인 상품이 아닌 한 상품판매에 설계사 등 대면채널의 조력이 요구됨

■ 그러나 미니보험이 활성화되려면 가입 절차 간소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온라인으로 필요한 것만을 보장하는 간편한 보험상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신속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 온라인 가입절차가 복잡하면 소비자들이 가입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 상품 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온라인 은행대출도 몇 분 안에 해결되는 상황에서 불과 몇 천 원에 불과한 상품 구매를 위해 복잡한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
- 복잡한 가입절차는 단종대리점이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의 하나였음

■ 미니보험은 기존 보험회사와 신규참여 보험회사 등이 전문보험회사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미니보험은 고객정보를 얻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특정 위험에 대한 전문회사 이미지 구축이 가능함
- 따라서 미니보험은 IT 기술 등과 결합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위험만을 보장하는 전문보험회사의 출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kiri](#)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치아보험은 충치, 보철, 잇몸질환, 발치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임. 그동안 치아보험은 공적 보험의 제한적인 보장, 소비자의 높은 니즈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상승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보험회사 간 판매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치아보험은 공적 보험의 제한적인 위험보장 영역을 보험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면서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위험보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후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이러한 노력이 장려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충치, 보철, 잇몸질환, 발치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각 질환에 대해 정액보장하고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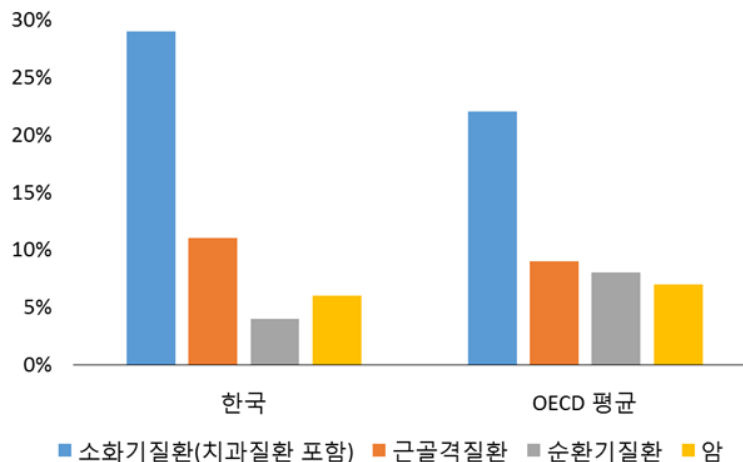
- 치아보험은 충치에 대한 충전 및 크라운,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잇몸질환,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영구발치 등을 보장하며, 회사에 따라 만기 축하금, 부정교합 치료 등을 지원함
- 각 보장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 후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구조임
- 치아보험 상품구조는 유사하며, 치아검진을 조건으로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는 “진단형” 상품과 의무 고지사항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무진단형” 상품이 있음

■ 치과치료는 발생 빈도가 높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아보험 수요는 높은 편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치과병원 및 의원의 보험자 부담률은 각각 60.72%, 66.93%로 총 보험자 부담률인 74.8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¹⁾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래진료비용 중 치과치료 비용²⁾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치과치료 부담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OECD는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치과치료 비용이 총 진료비용의 5%, 외래진료비용의 21%를 차지하면서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질환별 외래진료 비중



자료: OECD(2016), "Focus on Health Spending"

■ 정부는 소비자의 치과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 임플란트 보장 등 치과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임

- 정부의 치과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틀니나 임플란트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짐
-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치료의 본인부담 비율도 30%에서 10%로 낮아지며, 2018년부터는 12세 이하가 충치 치료 시 치아의 색과 같은 레진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임
- 그러나 비용이 고가인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연령에 제한이 있고 평생 2개까지만 보험적용이 되며,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 보장범위 확대는 제한적인 수준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7 진료비통계지표"

2) OECD는 치과진료를 소화기질환(Digestive Disease)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화기질환 중 대부분이 치과진료라고 설명함

■ 한편 소비자의 높은 니즈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우려로 보험회사들은 치아보험을 출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2008년 최초로 출시한 후 다양한 위험관리 전략으로 시장에 안착함

- 치아보험 개발 초기 보험회사들은 치아가 부실한 소비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우려로 치아보험 판매에 부담을 가졌음
- 최초의 치아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의 면책기간 내에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보장을 하지 않고,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철과 크라운 치료가 주계약 내에서 상쇄되도록 설계하는 등의 위험관리 전략을 활용함
- 또한 임플란트 보장 한도를 연간 3개로 제한한 후 손해율 추이를 관찰하여 임플란트 치료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보장확대를 통해 손해율을 관리함

■ 초기 치아보험이 낮은 손해율로 시장에 안착한 이후 여러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 확대 및 신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치아보험 시장에 신규 진입함

- 초기에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와 일부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치아보험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형보험회사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장확대 및 보험료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 IFRS 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자본 변동성 부담이 큰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보장성 보험 시장의 성장 정체를 벗어날 신시장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하는 보험회사에게 치아보험은 기존의 사업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임

■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손해율 상승 및 이로 인한 갱신보험료 증가, 민원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파노라마 촬영, 스케일링, 치조골, 구강암 등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며 상품이 다양해졌고, 보장금액을 낮추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미니 치아보험 상품도 개발됨
- 또한 치아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임플란트 1개당 보장금액이 2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초기 설정하고 있는 감액기간도 축소되는 추세이며, 갱신기간 및 보장기간도 장기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치아보험 시장의 지나친 경쟁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내용 축소, 갱신보험료 상승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민원이 확대될 수 있음

■ 치아보험은 보험회사의 신성장 동력 발굴전략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치아보험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큰 치과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보장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정착함
- 경쟁심화로 치아보험 시장은 빠르게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쟁 보험회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과당 경쟁으로 향후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갱신보험료 급증, 보험금 지급 심사강화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자 민원 확대 등 보험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암보험의 경우 경쟁적으로 진단급부를 확대하면서 손해율이 급증,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한 경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위험보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후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하고 보험회사의 이러한 노력이 장려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공적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는 한편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위험보장 수요 발굴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장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변화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은 2016년 말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7년 하반기에 확대폭이 감소하였음. 회사별로 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총 33개사 중 4개사만이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증가하여 10개사가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함. 보험회사는 중·장기적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축소 전략은 대부분의 회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여력에 비해 큰 폭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는 전략적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할 유인을 가짐

- 국고채(10년 만기) 금리는 2016년 3/4분기 1.44%에서 2018년 1/4분기 2.70%로 상승¹⁾
- 중·장기적 금리상승이 전망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함으로써 자산의 평가손(혹은 자본감소)을 줄일 수 있음
- 단, 자산듀레이션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²⁾
 - 자산듀레이션을 줄일 경우 대다수의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가 커지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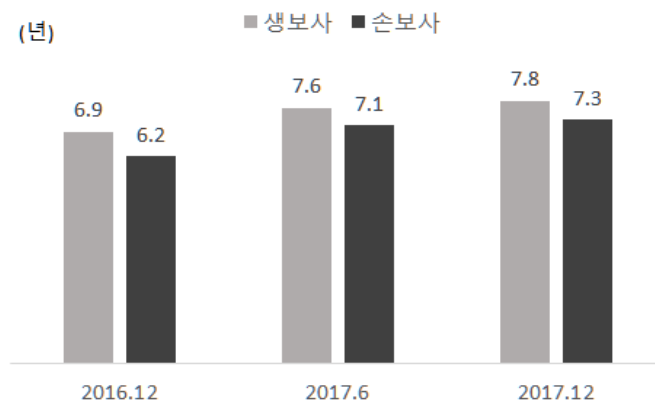
1) 한국은행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축소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조영현(2017. 9. 4),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KiRi 리포트』, 이슈분석

■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은 2016년 말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7년 하반기에 확대 규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상반기에 자산듀레이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각각 평균 0.7년, 0.9년 증가함
- 반면 2017년 하반기에는 자산듀레이션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평균 0.2년 증가하는 데 그침

〈그림 1〉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주: 단순 평균값으로 생명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는 국내일반 손해 보험회사 10개사로 산출함
 자료: 각사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 회사별로 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총 33개사 중 4개사(생명보험 2, 손해보험 2)만이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증가하여 10개사(생명보험 7, 손해보험 3)가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함

- 2017년 하반기에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회사의 경우 확대한 회사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이 짧은 특징이 있음
-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생명보험회사는 제한적인 수준(평균 0.1년)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함
- 이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손해보험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평균 0.3년) 자산듀레이션을 줄였음

〈표 1〉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단위: 개, 년)

구분		개수	2016. 12	2017. 6	2017. 12
생명보험회사	확대한 회사	16	7.5	8.2	8.6
	축소한 회사	7	5.5	6.2	6.1
손해보험회사	확대한 회사	7	6.5	7.6	7.9
	축소한 회사	3	5.5	6.0	5.7

주: 2017년 하반기 자산듀레이션 변화를 기준으로 확대한 회사와 축소한 회사를 구분함
 자료: 각사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 2017년 하반기에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생명보험회사들은 확대한 회사들에 비해 RBC 비율이 낮고, (보정) 부채듀레이션이 짧으며 듀레이션 갭이 작음

- 즉,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상승에 의한 RBC 비율 하락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금리리스크가 적은 회사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부채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이 작아 부채시가평가 적용 시에도 금리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여 소폭의 자산듀레이션 축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 단,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부채듀레이션 및 듀레이션 갭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이 관찰됨

〈표 2〉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특징

(단위: %, 년)

구분	RBC 비율	보정 부채듀레이션	듀레이션 갭
확대한 회사(㉠)	290.3	10.4	-1.1
축소한 회사(㉡)	203.8	6.4	0.3
차이(㉠-㉡)	86.4*	3.9*	1.4*

주: 1) 2017년 하반기 자산듀레이션 변화를 기준으로 확대한 회사와 축소한 회사를 구분함
 2) 제시된 숫자는 2017년 6월 기준
 3) *는 유의수준 5%하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보정 부채듀레이션은 적용 잔존만기를 30년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값³⁾
 5)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보정)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저 / 금리부자산 익스포저⁴⁾
 자료: 각사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 3)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의 35~36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조영현·이혜은(2018),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 배분」,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4) 듀레이션 갭은 부호를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호를 무시하고 '갭(gap)' 자체의 의미를 살려 표현함. 본고도 통상적인 표현을 사용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회사들은 확대한 회사들에 비해 (보정)부채듀레이션이 낮지만, RBC 비율과 듀레이션 갭이 유의하게 낮지는 않음

- 자산듀레이션을 줄인 손해보험회사들은 부채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아 자산듀레이션을 짧게 유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들의 듀레이션 갭이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한 손해보험회사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질 금리리스크가 확대한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낮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들은 듀레이션 갭이 음(-)으로 실질적인 금리리스크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듀레이션 축소 규모가 자산듀레이션 축소 생명보험회사의 3배(0.3년)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이들이 여력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3〉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특징

(단위: %, 년)

구분	RBC 비율	보정 부채듀레이션	듀레이션 갭
확대한 회사(㉠)	202.4	8.5	-0.9
축소한 회사(㉡)	180.3	6.1	-0.4
차이(㉠-㉡)	22.2	2.3*	-0.5

주: 1) 2017년 하반기 자산듀레이션 변화를 기준으로 확대한 회사와 축소한 회사를 구분함

2) 제시된 숫자는 2017년 6월 기준

3) *는 유의수준 5%하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 보정 부채듀레이션은 적용 잔존만기를 30년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값

5)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보정)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저 /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자료: 각사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축소 전략은 대부분의 회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여력에 비해 큰 폭으로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대형사들의 대부분은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듀레이션을 축소한 보험회사들의 대부분도 실질적인 금리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회사들로 축소 연수도 0.2년 미만으로 소폭에 그침
-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금리리스크가 특별히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에 의한 RBC 비율 하락폭을 줄이고자 자산듀레이션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우려됨
 -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들의 자본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들은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시행을 가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인 자산듀레이션 축소 전략을 실행해야 함 [kiri](#)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전용식 연구위원, 권오경 연구원

요약

최근 국내 증권회사의 배당사고는 487억 원의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관측되지 않는 평판 및 신뢰도 하락 등 해당 증권회사의 무형자산을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됨.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무형자산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IT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스크인 무형자산 리스크에 대해 기업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최근 발생한 국내 증권회사의 배당사고는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훼손으로 인한 무형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주식 매수 과정에서의 거래 손실, 차입주식에 대한 대차비용 부담, 주식을 동반 매도한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비용 등 직접적 손실액은 4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해당 증권회사의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¹⁾
- 그러나 그룹 기반의 신인도와 브랜드 인지도 등 평판자본 및 투자자 신뢰도 저하에 따른 고객기반 약화,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한 영업위축 등 무형자산 가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됨
 - 한국기업평가는 평판자본 및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 제재 등 무형적 손실의 부정적 영향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을 무형자산 리스크라고 하는데, IT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²⁾

1) 한국기업평가(2018. 4. 13), “삼성증권(주)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2) A.M. best(2018. 4), “The edge of insurability”, *Best's Review*

- 무형자산 리스크에는 기업의 평판훼손,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의 손실,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혁신 실패, 네트워크 오류, 사업모형의 실패, 테러, 전염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리스크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 사이버 리스크는 온라인 활동, 인터넷 거래, 전자시스템, 기술적 네트워크, 자료 유출 등이 초래하는 손실로 정의될 수 있음³⁾
-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자산특허권, 브랜드 충성도, 영업기밀과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5년 87%로 상승함⁴⁾

〈표 1〉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1975	1985	1995	2005	2015
무형자산	17	32	68	80	87
유형자산	83	68	32	20	13

자료: Ocean Tomo LLC(2015. 3. 3),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from Ocean Tomo*; Swiss Re(2017), *Sigma*, No. 5에서 재인용

- IT기술의 발달로 보유한 유형자산보다 IT기술에 기초한 무형의 사업모형에서 창출되는 기업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형자산 가치는 기업 내부적 요인과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유출, 지적재산권 도난 등에 의해서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 1992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은 엑슨 모빌(석유정제), 월마트(유통), GE(전자), 일본전신(Nippon Telegraph), 필립모리스(담배) 등이었으나 2017년 6월 기준으로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임
 - 숙박대행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는 임차할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택시서비스 업체는 렌트카,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나 IT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무형자산 리스크 가운데 평판위험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요도 순위는 상승하고 있음

-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 결과⁵⁾ 평판위험의 중요도는 2007년 4위에서 2017년 1위로 높아졌고 사이버 리스크의 중요도 순위는 2015년 9위에서 2017년 5위로 상승함

3) Tine Olsen(2013. 6. 18), "Insurance Cyber Risk", *Willis*

4) Ocean Tomo LLC(2015. 3. 3),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from Ocean Tomo*; Swiss Re(2017), *Sigma*, No. 5에서 재인용

5) *Top risks in Aon's 2017 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A.M. best's 재인용

〈표 2〉 재무적 영향 기준의 기업경영 관련 상위 10개 리스크 순위

리스크	2007	2009	2011	2015	2017
평판위험(Damage to Reputation)	4	6	1	1	1
경기침체/부진	1	1	-	2	2
경쟁심화	-	-	-	4	3
규제변화	2	2	6	3	4
사이버 리스크	-	-	-	9	5
고객니즈 대응 실패	6	-	-	6	6
임직원 고용/유지 실패	7	10	7	5	7
기업휴지	5	3	2	7	8
정치적 불확실성	-	-	-	-	9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9	3	8	10

자료: Aon Risk Solutions, *Global Risk Management Survey*, 각 호

■ 위험관리가 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평판위험 등 무형자산 리스크는 보험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

- 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식별(identifying)하고 측정(quantifying)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형자산 리스크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가 어려움
- 사이버 리스크와 유사하게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고 리스크가 비연속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 리스크의 측정과 가치평가가 어려움
 - 무형자산 리스크는 경영 전반에 퍼져 있고 지리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고 발생 시 도미노처럼 신속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구축 등 전통적인 인수방법 모색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무형자산 리스크 보장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고객(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리스크 관리 상품을 개발해야 함
- AXA는 무형자산 리스크를 담당하기 위한 AXA Global Parametrics를 출범하고 고객 손실과 무형자산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평판리스크 모형 구축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임
 - 충분한 데이터 수집으로 모형이 구축되면 자회사에게 무형자산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 전략은 리스크 요소의 선별 후 위험을 보장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기업의 무형자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고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무형자산 리스크의 유형인 사이버 리스크의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 사고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부가서비스(add-ons)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평판위험 등을 관리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새로운 리스크 유형인 무형자산 리스크 인수 방법을 기업과 협력을 통해 모색해야 함

- 직원의 실수로 인한 국내 증권회사의 배당사고 사례, 플랫폼 제공 회사인 미국 페이스북의 사례, 평판훼손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 사례 등은 무형자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페이스북 북의 경우 기업고객의 플랫폼 정보유출이 페이스북 북의 가입자 이탈 및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함
- 기업의 평판위험 등 무형자산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기업과 협력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보험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ri](#)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김석영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재에서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해외재보험 출재로 약 9,25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함. 해외재보험 출재는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해외재보험 출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은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음.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¹⁾들은 해외재보험 수재²⁾를 통해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출재³⁾를 통해 약 9,253억 원의 위험전가비용을 부담함⁴⁾

-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국내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에 비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국내 보험산업의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출재가 불가피함
 - 해외재보험 출재로 인한 위험전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수재를 통해 이익을 확보함

- 1) 재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회사로 분류되지만 재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도 수재하기 때문에 수재보험료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출재가 포함됨
- 2) 수재보험료는 목적물의 소재지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출재보험료는 보험료를 수재하는 곳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함
- 3) 해외수재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해외출재와 함께 해외수재를 동시에 함
- 4) 국내재보험 거래에서는 수재를 통하여 약 1조 2,3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 반면 출재를 통하여 약 1조 1,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8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함

〈표 1〉 2017년 손해보험산업 재보험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국내재보험		해외재보험		합계
	수재	출재	수재	출재	
손익	12,389	-11,500	4,197	-9,253	-4,167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재보험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 재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 해외수재보험료는 2014년 1조 6,288억 원에서 2017년 2조 1,524억 원으로 32.1%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2014년 3,969억 원에서 2017년 4,197억 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침
 - 2017년 해외수재보험료는 삼성화재와 코리안 리가 각각 2,771억 원, 1조 5,230억 원의 보험료를 수재하여 전체 해외수재보험료의 84%를 차지함
 - 코리안 리는 해외수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생명보험 해외수재를 늘리고 있음
- 해외재보험 출재 손실은 동기간 5,193억 원에서 9,253억 원으로 78.2% 증가함

〈표 2〉 해외 재보험 거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재보험료	출재보험료	수재손익	출재손익	재보손익
2014	16,288	34,633	3,969	-5,193	-1,224
2015	17,933	37,165	3,582	-5,982	-2,400
2016	19,319	37,676	4,313	-8,214	-3,901
2017	21,524	41,880	4,197	-9,253	-5,056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 최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지 개선을 위해 요율규제 개정, 보유한도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 요율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재보험과 연계된 협의요율 사용 비중의 축소가 전망됨
 - 자사요율 및 판단요율 사용으로 협의요율로 인한 불필요한 재보험을 줄일 수 있게 됨
-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손해보험 보유한도를 늘려 출재를 줄이고 있음
 - 그러나 보유한도 확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되어짐

-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⁵⁾
 - 코리안 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상하지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드문제 등으로 중국보험감독당국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국내재보험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시장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요율 산출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해외에서 활발한 금융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금융재보험 시장 활성화가 요구됨 **kiri**

5)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있음



보험회사 현금성 자산비중의 하락세와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보험회사는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국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대형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중이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와 유사함. 이러한 특징의 주된 요인들로 해지율이 낮은 보장성 상품비중 증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 문제 경감을 위한 장기자산편입비중 확대 등이 있음.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의 현금보유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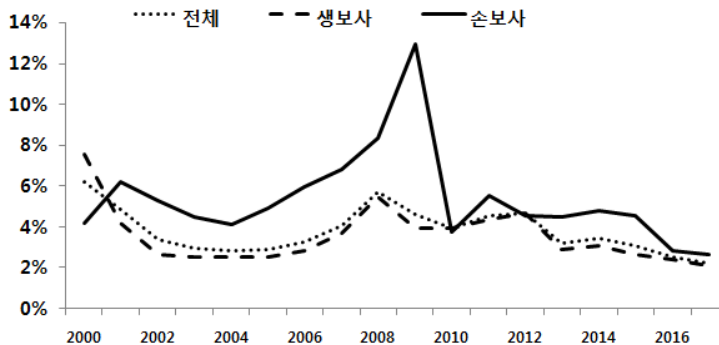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지급능력(solvency)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국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중 추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및 예치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함
 - 유동성 자산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 예·적금, 해외 제예금, 금전신탁 등으로 구성되며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하임
 -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짧고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창출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기함을 의미함
- 이 외에도 보험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금성 자산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7~2009년)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중은 급등함
 -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이 2006년 3.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5.7%로 상승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6%에서 약 13%로 급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06년 2.9%를 보이던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이 5.5%로 소폭 상승
 - 손해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 비율이 2000년 말 5% 수준에서 현재 소폭 하락하여 4%에 달함

〈그림 1〉 보험회사별 현금 및 예치금 비율(운용자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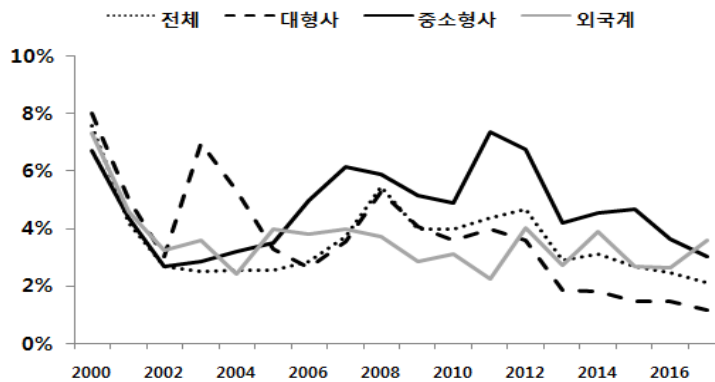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 둘째, 자산규모별로 살펴볼 때, 대형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이 중·소형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2〉,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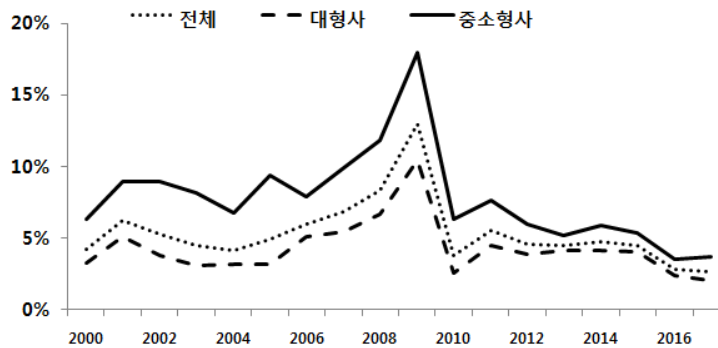
- 대형생명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은 2017년 중·소형사의 4%보다 낮은 2% 수준임
- 마찬가지로 대형손해보험회사도 중·소형사보다 낮은 4%대의 현금성 자산비율을 기록

〈그림 2〉 생명보험회사별 현금 및 예치금 비중(운용자산 대비)



출처: 금융감독원

〈그림 3〉 손해보험회사별 현금 및 예치금 비중(운용자산 대비)



출처: 금융감독원

■ 국내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 보유행태는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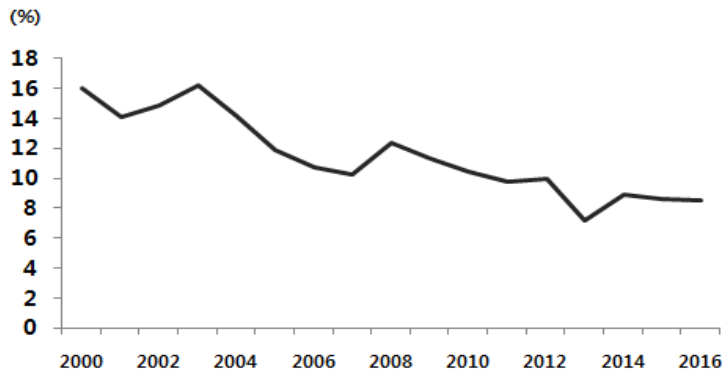
-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은 안정적으로 4%내외 수준을 유지
 - 2016년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이 5.2%를 기록해 생명보험회사의 2.6%보다 2배 수준임
- 현금성 자산비율은 대형사일수록 낮고 중·소형사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운용자산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은 2.6%인데 반해 10억 달러이하인 보험회사의 경우 10%를 초과함

1) U.S Insurance Industry Cash and Invested Asset at Year-End 2016 참조(http://www.naic.org/capital_markets_archive)

■ 국내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요인들로 해지율의 하락과 보장성상품 비중 상승 등을 들 수 있음(〈그림 4〉 참조)

-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어 해약건수도 감소하면서 현금보유비율이 감소
 -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조속히 지급해야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하지만, 해지율의 하락으로 현금성 자산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음

〈그림 4〉 생명보험회사 해지율



출처: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 또한 대형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중이 중·소형사에 비해 낮은 이유는 해지율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형사의 주요 판매채널이 해지율이 낮은 전속설계사채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높은 방카슈랑스 또는 GA(독립대리점)에 의존
 - 이와 더불어 대형사들은 해지율이 낮은 보장성 상품판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 일반계정 대비 보장성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사의 경우 49%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33%를 차지함(금융감독원 2017년 9월 말 자료)
- 또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채 및 자산 듀레이션갭을 줄이고자 장기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도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 최근 들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채 및 자산 듀레이션 갭이 확대되어 이를 축소 시키고자 장기 우량채권 투자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비율이 하락함
 -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이를 매칭하기 위해 장기 자산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높은 현금성 자산비율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임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 여파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유출 확대 등 대외환경 급변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의 현금보유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금리의 추가적 상승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해지율 상승으로 유동성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적정 유동성 보유전략이 필요
 - 대량 해약에 따른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유자산의 매각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kiri](#)



투자수단으로서 비금융기업 영구채 현황 및 특징

황인창 연구위원, 홍민지 연구원

요약

영구채(Perpetual Bond)란 만기(상환일)가 없고 영구히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로 채권과 주식의 특성이 모두 존재하는 신종자본증권의 한 종류임. 국내 비금융기업의 영구채 발행규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2조 원(44개사, 52건)임. 비금융기업 영구채의 평균 발행금리는 4.31%로 국고채 5년물 수익률에 비해 2.14%p 높지만 조기상환 여부와 조기상환 후 발행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비금융기업 영구채는 투자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영구채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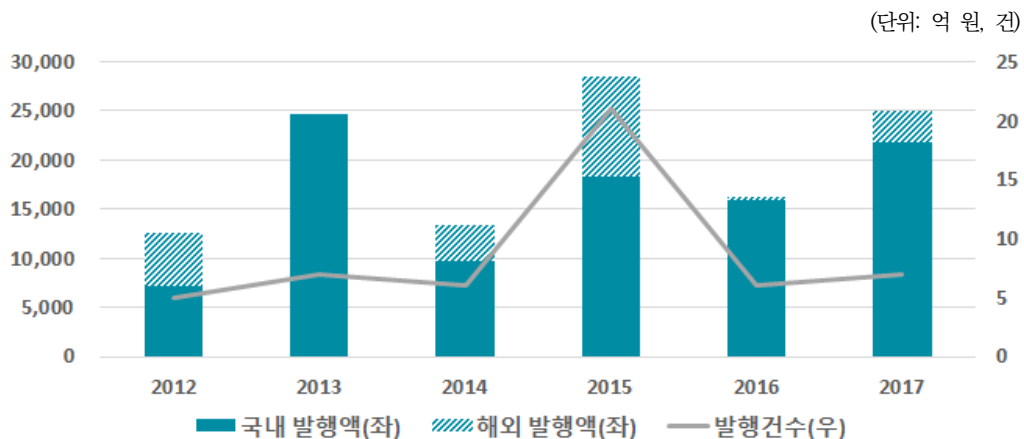
■ 영구채(Perpetual Bond)란 만기(상환일)가 없고 영구히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를 의미하는데,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신종자본증권(또는 하이브리드증권, Hybrid Securities)의 한 종류임

- 실무적으로 최초 발행 시 만기(예, 30년)가 정해져 있으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발행자가 만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임
 - 통상 발행자가 특정시점(예, 발행 후 5년) 이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상향 조정(step-up)하는 조건이 부여된 경우가 일반적임
- 상환의무 및 만기 측면에서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됨
 - 원금 상환의무와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가깝지만, 발행자의 의사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주식의 성격을 가짐

■ 국내 비금융기업의 영구채 발행은 2012년에 시작되었고, 2017년까지 44개사가 12조 원(52건)을 발행함(그림 1) 참조

- 국내 발행규모는 9.7조 원(43건)으로 모두 사모로 발행됨
- 해외 발행규모는 2.3조 원¹⁾(9건)으로 주로 공모(6건, 2.1조 원)와 미 달러화(8건, 2.2조 원)로 발행됨
- 2013년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까지 저금리로 인한 고금리 채권 투자수요 확대로 발행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행 건수가 감소함

〈그림 1〉 비금융기업의 영구채 발행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2018),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 투자수단으로서 영구채는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고금리·투자 다각화 등에서 투자유인이 있지만, 유동성위험·만기불확실위험·파산위험 등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 회사채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발행사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발행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영구채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조기상환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유동성 위험을 갖고, 투자자에게 상환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금리상승 시 발행사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격하락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영구채는 후순위 조건이므로 주주와 유사하게 발행사 파산 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1) 2017년 12월 말 매매기준율로 환산

■ 데이터 분석 결과, 2012~2017년까지 발행된 비금융기업 영구채의 평균 발행금리는 4.31%로 국고채 5년물 수익률에 비해 2.14%p 높음(〈표 1〉 참조)

- 비금융기업 영구채의 발행금리는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발행시기와 발행구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표 1〉 비금융기업의 영구채 발행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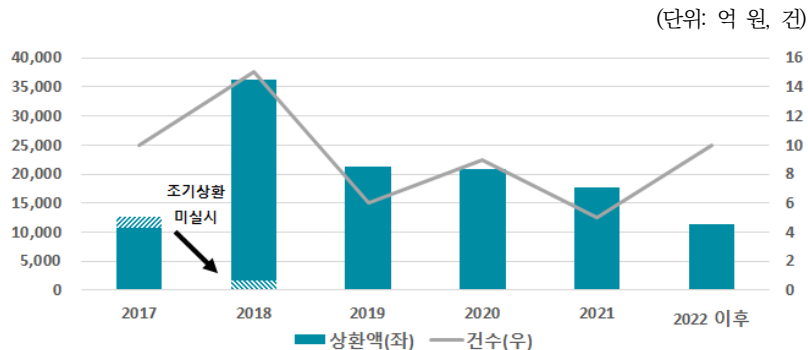
구분	AAA	AA+~AA-	A+~A-	BBB+ 이하	무등급	전체
건수	5	7	8	6	17	43
발행금리(%)	3.75	4.21	5.16	3.45	4.39	4.31
국고채 5년과 차이(%p)	0.84	1.80	2.88	1.33	2.50	2.14

주: 국내 발행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각 발행사 사업보고서, 연합인포맥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 2017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중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권이 있고, 2018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발행사 중 일부는 조기상환 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2017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규모는 1.3조 원(10건)이었는데, 이 중 실제 조기상환이 이루어진 영구채는 1.1조 원(5건)임(〈그림 2〉 참조)
- 2018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3.6조 원, 15건)의 경우, 조기상환 시 발행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334%p 상승하고, 부채비율이 800%p 이상 상승하는 회사도 일부(3개사) 존재함(〈표 2〉 참조)
 - 부채비율 하위 1분위 영구채 발행기업의 조기상환 후 부채비율 증가폭은 38%p이지만 부채비율 상위 1분위 기업의 경우 1152%p 상승함

〈그림 2〉 연도별 영구채 조기상환 예정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2018),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표 2〉 2018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발행사의 조기상환 전후 부채비율(추정)

구분	평균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부채비율(A, %)	352	935	250	158	65
조기상환 후 부채비율(B, %)	686	2087	355	198	103
부채비율 변동분(B-A, %p)	334	1152	105	40	38

주: 1)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

2) 자본이 음(-)인 발행사(1개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채비율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분석

3) 부채비율=부채총액/자본총액

4) 조기상환 후 부채비율=(부채총액+회사채 차환발행액)/(자본총액-영구채 상환액)

자료: 각 발행사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 비금융기업 영구채는 투자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영구채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이 필요함

- 최근 지속된 저금리 환경은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 10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각각 3.3%p, 4.2%p 하락함
- 비금융기업 영구채의 평균 발행금리(4.3%)는 2017년 보험회사의 평균 운용자산이익률(3.4%)보다 0.9%p 높아 보험회사 대체투자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영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상품이 복잡하고 투자위험, 특히 파산위험이 높기 때문에 영구채 투자를 위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RBC 제도상 신용위험계수는 2.4%(AAA)~12%(무등급)로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의 위험계수와 동일함 [kiri](#)



터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터키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 및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터키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과 국내 고용감소 등 대내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 해약의 증가 및 신계약 증가세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해약의 증가 및 신계약 증가세 둔화가 심화될 경우 대형보험회사는 가용자본에, 중소형보험회사들은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세계 및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對) 터키 제재 부과 후, 터키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지난 8월 1일 미국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후 리라화의 가치 폭락, 터키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인 Brunson 목사 석방 문제가 미국과 터키의 정치적 갈등을 촉발하였고, 이는 관세보복으로까지 이어지며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욱 증폭시킴
 - 지난 1년간 평균 3.98리라/달러를 유지하던 터키 환율이 8월 2일에 5리라/달러를 돌파하였고, 8월 10일에는 전일 대비 15.97% 상승하여 6리라/달러를 돌파함(〈그림 1〉참조)
 - 10년 국채금리는 8월 13일 기준 21.53%를 기록하며 전월평균 대비 4.4%p 상승함(〈그림 2〉참조)
- 터키의 외환거래 제한, 카타르의 투자 소식 등으로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한 듯 보이지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터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과의 갈등 또한 지속되면서 금융불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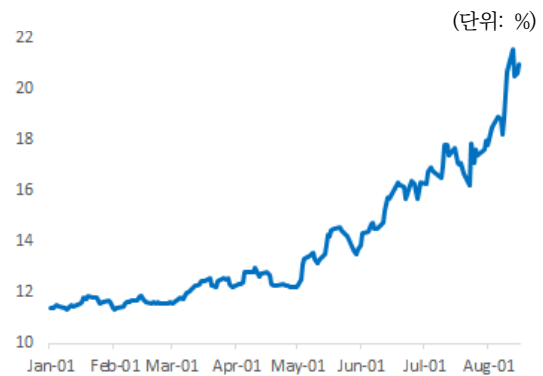
- 터키는 미국의 제재 전부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수준 확대 등 주요 신흥국 중 잠재 취약국 2순위로 꼽히며 대내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¹⁾

〈그림 1〉 터키 환율 추이(2018년)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2〉 터키 10년 국채금리 추이(2018년)



자료: 연합인포맥스

■ 터키의 금융 불안은 외환위기 및 외채위기의 특징을 갖고 있음

- 환율이 한때는 달러당 4리라 이었으나 최근 들어 7리라로 급등하여, 약 60%의 평가절하를 보여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함
 - 터키 10년 국채 금리가 올해 초 12% 전후에서, 최근 8월 1일 기준으로 22%로 폭등하여 금융권의 부실대출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GDP 대비 외화채무비율이 높은 수준인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강세 및 금리상승은 외채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터키의 대외차입 규모는 2018년 1/4분기 기준 총 2,233억 달러이며, 그 중 스페인(809억 달러), 프랑스(351억 달러), 이탈리아(185억 달러), 미국(181억 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터키 정부도 이러한 불안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방어를 위한 정책금리 인상 및 스왑포지션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시간을 벌기위한 조치일 뿐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음

1) 국제금융센터(2018. 8. 9), “신흥국 차별화 지속 가능성 점검”

■ 터키의 금융위기 확대는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의 대외여건 악화 및 유로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터키의 금융위기가 확대될 경우 신흥국의 환율불안이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공 등의 취약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터키 금융 불안이 심화될 경우 터키에 대한 위험노출(exposure)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 및 달러강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의 상호작용으로 복합위험이 상당기간동안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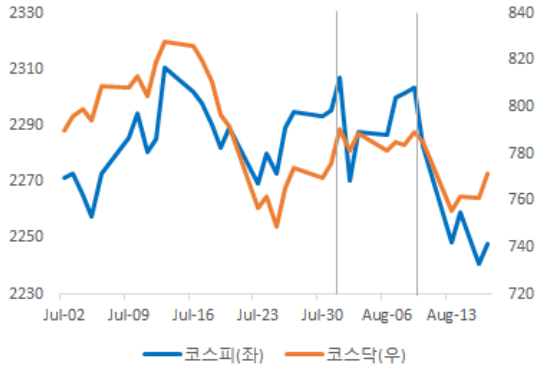
- 조만간 미국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완화된 여지가 있으나,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따라서 터키의 금융 불안,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등 대외 충격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계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주식 및 환율 및 채권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음

- 코스피 및 코스닥 주가지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임(〈그림 3, 4〉 참조)
- 터키 금융 불안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은 높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원화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해지는 모습임(〈그림 5〉 참조)
- 국채시장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회피성향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10년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2017년 9월 말 대비 금리 평탄화(flattening)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그림 6〉 참조)

〈그림 3〉 국내 주가지수 추이(최근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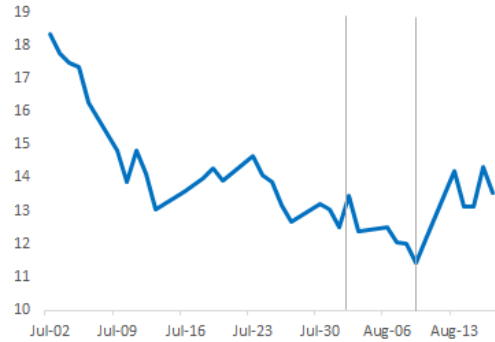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4〉 VKOSPI 추이(최근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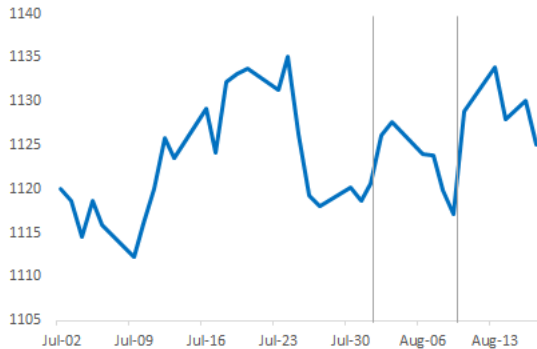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최근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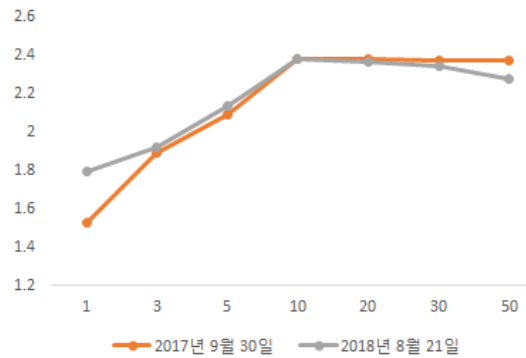
(단위: 원/달러)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6〉 금리기간구조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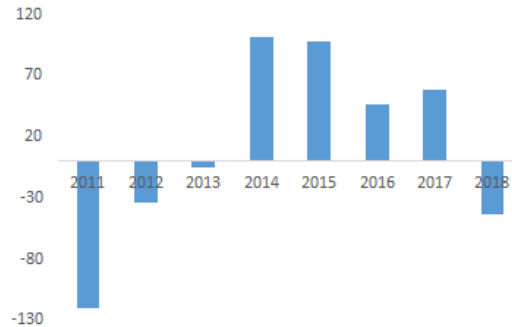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 국내 경기 부진, 고용 악화 등 대내적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최근 발생한 터키 금융위기 등의 외부충격으로 인해 심화될 경우 보험회사의 유동성과 가용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3,000명 감소하여 2013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감소폭은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그림 7〉 참조)

〈그림 7〉 7월 취업자 수 변동 추이(전월 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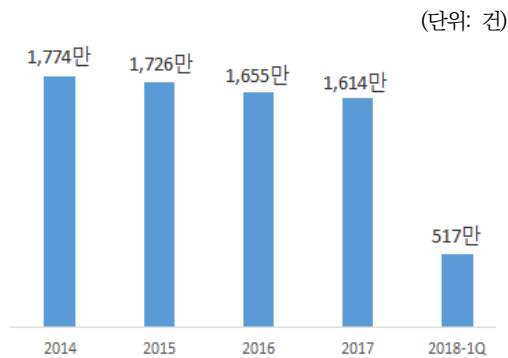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외부충격과 대내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기 복합 불황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계약 감소 및 해약환급금 지급 증가로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장기 복합 불황충격으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은 보험 해약의 증가 및 신계약 증가세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2017년 말 현재 생명보험(보장성 및 저축성의 합계)의 신계약건수 감소, 해지환급금 증가, 그리고 해지율 증가추이의 상호작용은 복합금융위험이 작용하기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이는 향후 보험영업이익 창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Signal)로 볼 수 있음
 - 2017년 말 기준 신계약건수는 1,6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5%로 감소하였음(〈그림 8〉 참조)
 - 2018년 상반기 기준 해지환급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지급보험금은 3조 3천억 원 증가²⁾하였으며, 해지율³⁾은 2016년 이후부터 상승하는 추세임(〈그림 9〉 참조)

2) 금융감독원(2018. 8. 21), 「2018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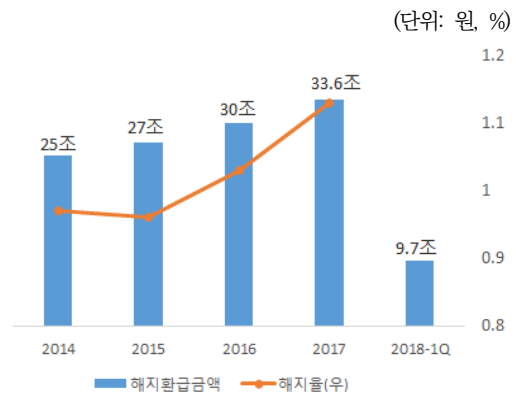
3) 해지율=(해지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연초보유계약가입금액+신계약가입금액)으로 산출됨

〈그림 8〉 생명보험 신계약건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9〉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및 해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의 터키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 미국 정책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유출에 따른 신흥국 위기 등 외부충격과 고용충격 등 대내적 충격이 상승 작용하는 복합적 충격을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부충격과 대내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기복합 불황 충격 시나리오에서는 대형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현행 베이스 시나리오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로 저성장 및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충격 여파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듯함
- 세계 및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스 및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kiri](#)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2016년부터 재보험 등 재무건전성 보험감독에 대한 협상을 하여 온 미국과 EU는 2017년 9월 커버드 협정(Covered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2018년 10월 현재 양국은 협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해외 수재사의 100%담보요건(미국), 현지설립요건(EU)을 폐지하고 그룹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상호 인정해야 함. 미국은 협정에 따른 재보험담보요건 철폐를 모델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재보험에 대한 역외거래가 가능하도록 상호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계는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방향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수재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보험규제감독 협상(EU-US Dialogue Project)를 추진하여 온 미국과 EU는 2017년 1월에 합의하고 9월에 커버드협정(Covered Agreement¹⁾)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한 법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3가지임
- 첫째, 재보험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및 EU재보험 회사에 대한 담보 및 현지존재요건(Collateral And Local Presence Requirement)을 상호 폐지함
 - 미국은 5년 이내에 재보험담보요건(Reinsurers Maintaining Trust Fund)을 폐지하고, EU는 24개월 이내에 재보험사의 현지존재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1) 본 협정의 제목은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Prudential Measures Regarding Insurance and Reinsurance”임. [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s/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s/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

- 둘째, 보험그룹의 재무건전성은 미국과 EU의 지급여력기준²⁾에 의하여 감독받는 것으로 하였음
- 셋째, 미국과 EU의 보험감독기관은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감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미국과 EU는 이번에 체결된 커버드협정에 대한 실행을 확약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음³⁾

- 미국은 EU가 그룹감독과 재보험회사의 현지존재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보험담보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이 재보험담보요건을 폐지하지 않으면 EU도 관련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향후 5년 이후 동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커버드협정 내용 중 재보험담보요건 폐지 이행을 위하여 재보험모델법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이전에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소재하는 주(州) 이외로 출재를 하는 경우 다른 주에 소재하는 재보험회사 또는 신탁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재보험회사(수재금액에 상응하는 100% 담보 제공)에게 출재하는 경우에만 재보험(Accredited Reinsurer)으로 인정하였음
-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이라 함)는 유럽과 일본 등 국가의 규제완화 요구 등에 따라 2011년 재보험모델법(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을 개정하였음
 - 이로 인해 NAIC가 공표한 인정관할국가(Qualified Jurisdiction)⁴⁾에서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개별심사를 통과한 보험회사(Certified Reinsurer)는 신용도에 따라 100% 보다 적은 담보 제공⁵⁾이 가능하게 되었음

2) 김해식·임준환(2017. 4. 3),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KiRi 리포트』, 제416호, 보험연구원 참조

3) 中村 亮一(2018. 10. 8), “EUと米国の間の再保険規制を巡る動きについて - カバード・アグリーメント署名後のNAICにおける検討状況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 2

4) 2017년 현재 인정관할국가는 버뮤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영국으로 2017년 1월부터 5년간 유효함: NAIC(2017), “NAIC List of Qualified Jurisdictions As of January 1”

5) 미국 이외의 해외 재보험회사는 일정 자본요건이나 보고요건을 만족하면 재보험담보의 감액(신용등급에 따라 0%, 10%, 20%, 50%, 75%, 100%)이 인정됨.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보험회사의 관할구역이 인정관할국가(Qualified Jurisdiction: QJ)에 해당해야 하며, 해외 재보험회사가 해당 주 보험청에 신청하고 신용리스크 심사를 거쳐 재보험담보금액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인증 받아야 함(Certified Reinsurer), https://www2.sidley.com/files/upload/2012_JRLR_NAIC_REFORM.pdf

- 2018년 10월 현재 NAIC는 커버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NAIC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공공의 의견을 받아 보완하였으며, 9월 25일 개정초안을 공개하여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커버드협정의 재보험담보철폐와 관련하여 상호관할구역(Reciprocal Jurisdiction, 이하 'RJ'이라 함)과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출재계약 중 중 담보요건이 불필요한 것은 재보험회사가 RJ에 소재하고 일정요건(최저 자본금, 지급능력요건, 보고요건, 재보험금의 신속한 지불이행 등)을 만족한 경우로 한정함

■ 미국은 국내 보험회사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⁸⁾에 의거 비대면방식에 의한 재보험의 역외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수재를 위해 역외거래 또는 지점을 통해 수재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재보험모델법상의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동 규제는 미국외의 수재보험회사에게 차별적인 규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뉴욕주, 플로리다주는 다른 주 또는 해외 보험회사가 우량한 신용등급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 감액제도를 2010년, 2008년에 각각 도입하였음
- 이에 비해 미국의 보험회사는 국내 보험계약을 수재하는 경우에 역외거래를 통해 가능하며 재보험담보제공이 불필요함
 - 국내 감독당국은 2005년에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 자율적인 재보험관리로 전환되었으며 미국과 같이 수재사의 100% 담보는 불필요함

6)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law.pdf?3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regulation.pdf?71

7) ① 미국과 조약 또는 국제협정 (포괄계약 등을 상징)을 맺은 비미국관할구역 및 ② 일정의 추가요건(미국의 재보험회사에게 담보요건, 지점설치요건을 없고, 미국의 본사가 있는 보험그룹은 해당 지역의 그룹감독에 적용받지 않을 것)에 충족해야 해야 함. NAIC, Model#785 Draft 6-21-2018: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pp. 785-8~785-11

8) 이기형(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주간포커스』, 제159호, 보험연구원

■ 우리나라의 재보험시장 규모는 2017년 현재 22조 3,859억 원으로 연평균 12.5% 성장하고 있음

- 이중 출재보험료는 12조 1,068억 원, 수재보험료는 10조 2,791억 원으로 매년 12%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우량한 해외물건에 대한 수재확대는 포화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경영전략으로 기능할 것임

〈표 1〉 우리나라 재보험료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CAGR
수재보험료	63,471	85,207	91,541	95,104	102,791	12.8
출재보험료	76,066	102,352	108,740	111,972	121,068	12.3
총재보험료	139,537	187,559	200,281	207,076	223,859	12.5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21), “2017년 재보험시장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우량물건 수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재보험모델법의 개정내용과 진행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커버드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상호관할국가(Reciprocal Jurisdiction)”에 대한 범위와 적용조건이 한미자유무역협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내보험회사의 수재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보험업계는 미국의 수재 확대를 통한 해외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보험모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안의 영향과 이에 대한 의견을 NAIC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kiri](#)

9)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米国再保険監督規制に関する動向”(http://www.sonpo.or.jp/efforts/international/regulations/usa/qj.html)에 따르면, 일본 보험업계는 2012년부터 재보험의 100% 담보요건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공표된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에 세부의견을 NAIC에 제출하여 대응하고 있음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우리나라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회사 규모가 비슷하면 상품 포트폴리오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됨.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생명보험회사별로 경쟁력을 갖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적정 보유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생명보험회사별로 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험연구원(2018)¹⁾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역U자형 관계를 보임(〈그림 1〉 참조)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16% 수준에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체코,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를 검토한 윤성훈 외(2018)²⁾는 생산가능인구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간의 정(+)의 관계를 발견함(〈그림 1〉 참조)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하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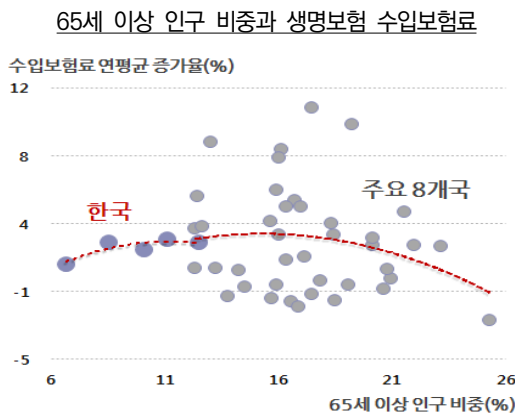
1) 보험연구원(2018),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19년 및 중장기 -」, 보험연구원 10주년 기념 발표 자료

2) 윤성훈 외(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경영세미나 발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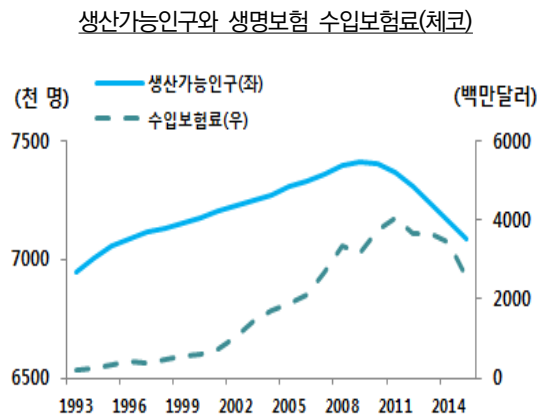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017년부터 줄어 들고 있으며, 보험연구원(2018)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18~22년 기간 중 수입보험료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연구원(2018)



자료: 윤성훈 외(2018)

- 이처럼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명보험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생존을 위해 M&A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계약 확보 필요성이 강조됨³⁾
 - 1996년 진입규제 철폐 이후, 1995년 31개에서 2010년 48개까지 늘어났던 일본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5년 41개로 축소됨

- 우리나라 9개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 판매채널의 영향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됨(〈표 1〉 참조)

- 첫째, 대형사(A, B, C)의 경우 일반계정 비중이 70% 이하인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75%를 상회하는 등 특별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변액보험이 방카채널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3) Suzuki, K.(2011), "Present and future of Japanese life insurance industry", Hoken-Sha

- 둘째, 대형사 간, 중형사(D, E) 간, 소형사(F, G, H, I) 간 상품 비중이 유사함
 - 설계사 채널이 탄탄한 대형사의 경우, 종신 등 사망과 변액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생사혼합 비중이 낮음
 - 중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사망과 생사혼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카채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사는 생사혼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셋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며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음

〈표 1〉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국내 주요 생명보험회사별 상품 비중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일반계정〉	62.7	69.4	65.5	87.4	76.7	86.9	95.3	81.8	78.6
개인보험	61.1	68.7	64.5	87.1	76.7	86.9	94.6	81.8	78.0
- 생존	17.8	16.1	18.3	18.7	14.1	5.4	25.4	8.4	12.9
- 사망	34.9	39.0	39.3	48.0	43.9	30.0	35.2	37.8	18.9
- 생사혼합	8.3	13.6	7.2	20.4	18.8	51.6	34.0	35.6	46.2
2. 단체보험	1.6	0.7	1.0	0.3	0.0	0.0	0.8	0.1	0.6
〈특별계정〉	37.3	30.6	34.5	12.6	23.2	13.1	4.7	18.2	21.4
퇴직연금	17.1	11.0	10.4	7.4	0.0	9.2	0.8	14.0	0.0
2. 변액보험	20.2	19.6	24.1	5.2	23.2	3.8	3.9	4.2	21.4
종신	28.1	30.2	30.8	24.8	37.3	13.8	20.3	21.2	12.4

자료: 각 회사별 업무보고서

■ 그런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회사 규모별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유사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며, 주력 상품에 특화된 모습임(〈표 2〉 참조)

- 우리나라 대형사의 경우 종신 비중이 30%(수입보험료 기준) 내외이나 日本(니폰), 第一(다이이치), 明治安田(메이지야스다), 住友(스미토모), 三井(미츠이) 등 일본 대형사는 종신보험 비중이 60%(신계약 건수 기준) 이상으로 압도적임⁴⁾
- 중형사인 朝日(아사히)는 적립이율변동형 종신과 정기, 그리고 의료보험 비중이 높으며, 大同(다이도)은 정기보험과 의료보험에 특화되어 있음
- 太陽(타이요)과 富國(후코쿠)은 의료보험과 함께 개호보험의 비중이 높음

4)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기준이고, 일본은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참고는 가능할 것임

- 외국계의 경우 Sony와 Prudential은 회사별로 종신, 의료, 정기, 기타(변액) 등의 비중이 비슷하고, Metlife와 Aflac은 의료의 비중이 높음
- 2011년 기준으로 대형사는 개호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중형사와 외국계는 정기부종신과 적립이율형종신을 취급하지 않으나, 2000년대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동력인 의료보험은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임
-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장이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별로 판매채널을 고려하여 소수 상품에 특화·전문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생각됨
 - 예를 들면, 第一(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종신 등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을 설계사 조직을 통해 판매하고, 방카채널 등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단순한 상품 가운데 보장성 상품은 자회사인 Neo First Life가, 저축성 상품은 자회사인 Dai-ich Frontier Life가 취급하도록 회사 자체를 분리함
 - T&D Holdings의 자회사인 大同(다이도)생명과 太陽(타이요)생명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임직원과 일반가계를 주요 타겟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데 주된 판매채널은 각각 대리점과 설계사임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별 개인보험 상품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1년)

(단위: %)

구분		종신	정기부 종신	적립이율 변동형 종신	정기	양로	정기부 양로	의료	개호	기타
대 형 사	日本	23.3	33.6	10.4	3.1	9.2	0.9	11.7	-	7.8
	第一	35.7	24.3	-	3.9	8.6	-	19.7	-	7.8
	明治安田	58.2	-	13.8	16.7	1.3	1.0	5.3	-	3.6
	住友	20.4	37.7	16.4	0.9	1.8	0.1	16.9	-	5.8
	三井	22.6	1.7	55.5	1.8	3.0	-	11.1	-	4.3
중 소 형 사	朝日	5.0	-	22.5	20.1	0.4	-	45.9	4.0	2.1
	大同	4.7	-	-	75.3	5.1	-	15.0	-	-
	太陽	0.6	-	-	4.0	13.4	-	25.2	14.4	42.5
	富國	2.4	-	-	0.6	1.6	0.3	57.8	22.2	15.0
외 국 계	Sony	22.6	-	-	13.2	6.5	-	27.6	6.0	24.2
	Prudential	29.5	-	-	20.4	0.4	-	16.4	0.6	33.3
	Metlife	24.0	-	-	6.5	0.9	-	67.4	-	0.7
	Aflac	10.7	-	-	1.9	0.1	-	77.6	-	9.6

자료: 金珪(2013), “規制緩和が生命保険業に与えた影響に関する一考察”, 生命保険論集 第185号

-
- ■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문화 또는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kiri](#)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하여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데 최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다만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은 제한적임.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에서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 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¹⁾

-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계획 추진 결과, 2018년 현재 6년 전에 비해 치매 간병 부담이 줄고,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7%에서 14%로 감소함²⁾

■ 정부는 이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증인 3등급의 판정기준 하한 점수를 하향 조정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9. 18) 참조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9. 19) 참조

- 제도시행 초기 3등급 판정기준 하한점수가 55점이었으나 2012년 53점, 2013년 51점으로 조정함
- 2014년 기존의 3등급 체계를 5등급으로 전환하여 치매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함
 - 기존 3등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3등급을 3,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일명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신설함
- 2018년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환자의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함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치매등급 CDR 척도³⁾(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1점에 해당됨
 -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경증치매 환자인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수가 2018년 1월 374명에서 9월 9,328명으로 크게 증가함

-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증치매환자들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증치매환자 발생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9%로 추산됨

〈표 1〉 장기요양등급 판정현황

(단위: 명)

구분	장기요양등급			치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8년 1월	42,937	79,553	195,880	225,921	42,742	374
2018년 9월	45,003	84,535	208,199	254,611	50,643	9,328
1월 대비 증가율	4.8%	6.3%	6.3%	12.7%	18.5%	2,394.1%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3) CDR 척도는 전통적으로 3점 척도를 사용하나 최근 5점 척도의 한국판 CDR이 제작됨. 인하대·성균관대·용인효자병원 등 최성혜 외 치매연구회,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CDR) 척도의 타당도」, 『대한신경과학회지』, 19(6) 참조함

■ 한편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1992년부터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본격적인 판매는 2003년에 시작됨
 - 그러나 판매가 부진하여 2008년에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보험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음
-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로 CDR척도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 중증치매로 판정될 경우 일시금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간병연금이 지급됨

■ 최근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보험회사는 치매환자들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도치매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함⁴⁾
 - 경도치매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상태인 데,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표 2〉 치매 단계별 기준

구분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판단기준	CDR 1점	CDR 2점	CDR 3점 이상

■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정확한 경증치매 발생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증치매환자는 정확한 숫자 파악 자체도 어려움
- 보장급부가 실질적인 도움에는 부족하지만, 향후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금액이 소액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면 보장급부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4)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경증치매라는 표현대신 경도치매라는 표현을 사용함

- ■ 고령화로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치매보험 상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인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과거 암 발생률 급증으로 보험회사는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 상품 보장급부의 현실화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무보증(Non Guaranteed) 상품 개발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kiRi**

5) 김석영(2018. 7. 2),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KiRi 리포트』를 참조함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2017년 현재 국내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료는 6조 8,149억 원, 매출액 대비 0.1707%이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지출 비율 1.0%의 1/5에 불과함. 이는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지난 11월 KT 통신구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화재 등의 직접손해 리스크 외에도 영업 중단 등의 간접손해 리스크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기준,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의 발생요인을 인식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해야 함

■ 기업은 건물과 공장설비,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의 재해손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은 ① 노출된 리스크의 분류·확인, ② 사고발생 빈도와 손실규모 평가, ③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리스크 통제, ④ 기업이 보유하거나 보험 가입 등으로 구성됨
-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소시켜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¹⁾
- 그러나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경우, 재해손실로 인한 영업손실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음
 - 건물 등의 직접손해와 휴업과 같은 간접손해 리스크를 전부보험(Full Insurance) 형태

1)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특별손실(사고손해액)+특별이익(보험금)

로 충분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이익(지급보험금)보다 특별손실(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이 더 커져 영업손실이 확대됨

- 따라서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 공헌을 위해서는 휴업 등 간접손해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국내 기업²⁾이 화재 등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해보험료³⁾는 6조 8,149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6.86% 증가함

- 2017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은 1조 4,284억 원의 손해보험료를 지출하였고, 중소기업은 5조 3,865억 원을 지출함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손해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어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 업종의 대기업이 지출하는 손해보험료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이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 리스크가 축소되었거나, 일부보험 가입 또는 담보위험 제외 등의 보험가입 조건 변경과 같은 불충분한 리스크 전가,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경쟁 등에 기인함

〈표 1〉 기업의 업종별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전(全)산업	14,284	1.20	53,865	8.53	68,149	6.86
농업	6	19.14	197	13.20	203	13.37
어업	4	-16.66	38	11.49	42	7.42
광업	5	-4.13	130	20.68	134	19.51
제조업	5,806	1.91	14,444	6.64	20,249	5.22
비제조업	8,479	0.72	39,421	9.25	47,900	7.58
전기가스	221	-1.06	118	17.67	339	4.41
건설업	1,305	18.60	7,210	8.21	8,515	9.63
도소매업	2,338	11.08	11,418	9.21	13,756	9.52
운수창고업	361	-2.52	3,236	4.27	3,596	3.53

2)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 금융업을 제외하고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 전체를 의미함

3) 손해보험료는 기업이 판매와 관리 부문에 사용되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그 밖의 손해보험료를 의미함; 한국은행, 『2018 기업경영분석』, p. 29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숙박음식업	276	4.44	819	11.57	1,095	9.63
정보통신업	1,367	-27.53	2,321	9.31	3,688	-9.92
부동산업	398	15.24	1,844	13.85	2,243	14.10
전문과학기술업	155	13.83	3,306	10.96	3,461	11.08
시설관리업	1,859	12.05	6,242	9.80	8,101	10.30
교육서비스업	58	29.08	384	15.27	441	16.82
예술스포츠업	72	-7.21	362	6.11	435	3.4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 또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로 정의되는 리스크 전가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대기업은 매출액의 0.0612%,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3252%를 손해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음
 - 대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은 최근 3년간 3.26% 감소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1.38%), 어업(-18.93%), 비제조업(-4.45%), 제조업(-1.93%)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에 리스크 전가 비율이 상승하는 업종은 광업(25.13%), 건설업(12.11%), 시설관리업(9.89%)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리스크 전가 비율이 5배 이상 높고, 건설업(-2.42%), 도소매(-0.65%), 숙박·음식업(-0.25%), 전문과학기술업(-1.27%)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 등으로 리스크관리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2〉 기업의 업종별 리스크 전가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전(全)산업	0.0612	-3.26	0.3252	1.35	0.1707	1.18
농업	0.0494	4.18	0.2887	7.75	0.2513	6.58
어업	0.0286	-18.93	0.3135	8.06	0.1587	4.32
광업	0.0447	25.13	0.5427	15.19	0.3940	28.02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전체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2017	2015~2017 증가율
제조업	0.0467	-1.93	0.2499	1.75	0.1111	0.98
비제조업	0.0777	-4.45	0.3655	0.82	0.2208	0.69
전기가스	0.0155	0.47	0.4397	0.51	0.0234	5.74
건설업	0.0703	12.11	0.3044	-2.42	0.2016	0.98
도소매업	0.0933	7.43	0.7564	-0.65	0.6429	1.21
운수창고업	0.0656	3.44	0.2326	2.01	0.1623	2.17
숙박음식업	0.0329	-1.83	0.5118	-0.25	0.2082	2.38
정보통신업	0.1440	-2.80	0.6415	5.85	0.3429	2.83
부동산업	0.1194	-31.38	0.4586	2.71	0.2234	-14.91
전문과학기술업	0.0447	-1.08	0.2175	-1.27	0.1290	-1.57
시설관리업	0.1033	9.89	0.7389	2.73	0.5790	3.97
교육서비스업	0.6849	-4.98	1.3202	2.59	1.0885	-0.31
예술스포츠업	0.1848	15.94	0.6671	6.67	0.4978	7.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

■ 국내 기업의 리스크 전가 비율은 미국 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의 직·간접 손해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수행할 있는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미국 기업들의 리스크 비용(Total Cost of Risk)은 매출액 대비 1% 내외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은 0.1707%에 불과함
 - 미국의 경우 보험시장 연성화 등으로 최근 들어 리스크 비용이 감소⁴⁾하고 있지만, 기업이 노출된 리스크(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간접손해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사고로 인한 파급효과인 배상책임손해, 간접손해 등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5일 KT 통신구 화재는 단순히 케이블의 화재손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KT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와 더불어 KT 통신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많은 기업의 우발적인 영업손실(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Loss)이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4) 2013년 1.09%에서 2016년 1.007%, 2017년 0.975%로 약간 감소하고 있음; <http://www.rmmagazine.com/2018/08/01/total-cost-of-risk-declines-again-2/>(2018. 11. 30)

- 기업의 리스크관리 인식과 필요성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 전사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기준을 국가 규격화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⁶⁾
 - 아울러 정부 또는 사업자 단체는 기업이 화재, 폭발,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⁷⁾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 계획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kiri**

5) 국가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 규격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34조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은 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준(ISO 31000)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이기형(2017), 「기업 리스크관리 활성화를 위한 ERM 규격화 및 보편연계 방안」, 『리스크 관리연구』, 제 28권, 3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pp. 43~79)

7) 일본은 2003년 4월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제정하여 기업의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道端のぞみ외 4인(2010), リスク情報開示の実態分析:日経225銘柄企業をサンプルとして, 桃山学院大学 学生論集, No. 25). 또한 기업들이 영업중단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각부 방재담당(<http://www.bousai.go.jp/kyoiku/kigyoku/pdf/guideline03.pdf>), 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policy/netsecurity/downloadfiles/6_bcpguide.pdf), 중소기업청이 제공하고 각종 업종협회(정보서비스산업협회; https://www.jisa.or.jp/it_info/engineering/tabid/1123/Default.aspx)도 이를 준용하여 해당업종의 특성에 부합하게 제공하고 있음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모음집 2018

발행일 | 2019년 1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